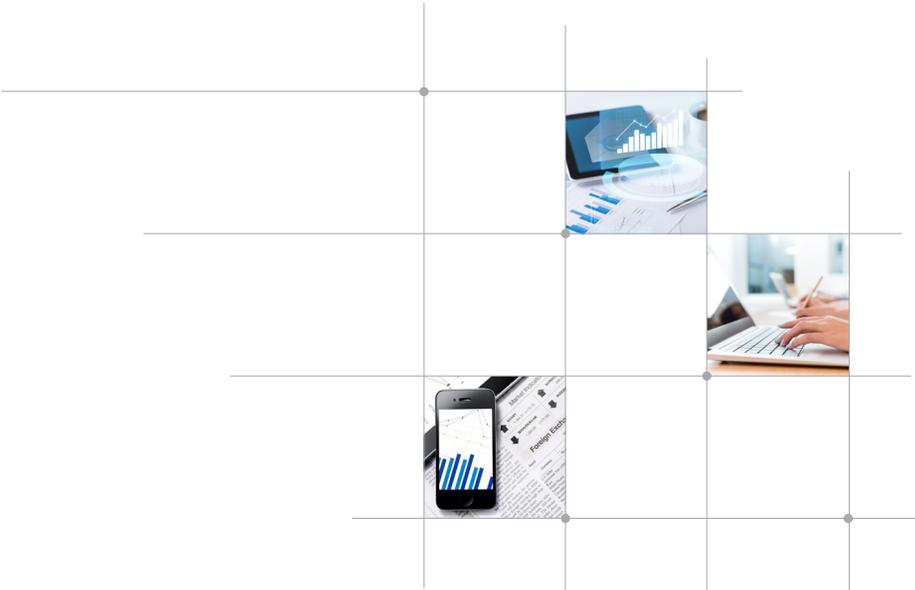


# 비공식 취업소득의 추정과 조세·재정 정책함의

2022. 12.

김문정·최인혁



# 비공식 취업소득의 추정과 조세·재정 정책함의

2022. 12.

김문정 · 최인혁



## 서 언

과세당국이 각종 경제활동으로 파생된 소득을 파악하는 일은 조세, 사회 보험 및 각종 재정정책 측면에서 적지 않은 함의를 지닌다. 최근의 소득과 약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제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여전히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려운 소득이 존재할 수 있다. 만약 과세당국이 여태까지 포착하지 못한 소득을 새롭게 파악한다면, 정부 관점의 수입과 지출, 개인·가구 관점의 지원금 혜택 및 조세와 사회보험 부담금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저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배달·퀵서비스, 돌봄·가사·과외,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3개 분야 비정형 취업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 취업소득의 발생 확률과 소득금액을 개인 및 가구의 변수로 추정하고, 이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투영하여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였다.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비정형 소득이 주로 발생하는 집단의 공식소득 크기에 따라 정책함의가 달라지며 사회보험료, 조세수입, 근로장려세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영향이 이질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형 취업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조세제도, 사회보험, 정부지원제도 등 여러 제도 간의 연계성과 상호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함의를 갖는다. 특히, 소득과약의 업무는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그 파급효과가 단지 조세 수입과 조세 제도 외에도 재정지출 및 사회보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문정 연구위원과 최인혁 부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작업하였다. 저자들은 기본연구과제 심의회 및 자문회의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외부 자문위원과 원내 연구위원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존재하는 모든 오류의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며, 본 보고서의 의견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음을 밝힌다.

2022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재 진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재조명되었다. 특히,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제도가 2021년 7월 이후 도입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여 해당 제도의 운영을 지원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인센티브 등의 정책으로 소득탈루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세원투명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신영미·강민지, 2014).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취업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소득파악이 쉽지 않은 부분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 경제의 발달은 개인 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반면, 이러한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저장하지 않거나, 플랫폼에서 해당 정보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가 콘텐츠 제작의 수익을 가상화폐 형태나 해외계좌에 예치하는 경우 국가 간 조세협약이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과세당국이 해당 국가 세무당국의 협조를 받아 개인의 조세회피 행위를 적발할 가능성이 낮다.

한편 이러한 소득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의 조세 및 재정 정책 측면에서 적지 않은 함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자들의 일부는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금거래에 기반한 비공식적인 소득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소득이 과세당국에 보고된다면, 정부는 실제 소득에 기초하여 보다 적법한 복지수혜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공식적인 소득수준이 높으면 추가 소득은 누진세로 인하여 소득세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는데, 이는 공식적인 영역에서 그만큼의 소득수준을 누리는 경제 주체들과 동일하게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조세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저자들은 다음의 질문을 던진다. 만약, 과세당국이 여태까지 포착하지 못한 소득을 새롭게 파악한다면, 정부 관점의 수입과 지출, 개인·가구 관점의 지원금 혜택 및 조세와 사회보험 부담금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하여 저자들은 ① 배달 및 퀵서비스, ② 돌봄·레슨 등의 서비스, ③ 온라인 콘텐츠 제작 서비스 등의 세 가지 비정형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일반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소득활동 수행 여부, 국세청 소득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인·가구의 특징과 비정형 취업소득 간의 관계를 추정하였고, 그 추정 결과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투영하여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였다.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약, 새롭게 발굴한 비정형소득이 공식적인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면 소득세 수입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수입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은 줄어드는 반면, 근로장려세제 지출은 늘어날 수 있다. 만약, 새롭게 발굴한 비정형소득이 공식적인 소득이 높은 계층에 집중되면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수입이 모두 늘어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변화는 크지 않은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일부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새로운 유형의 취업소득활동이 활발해지는 경우에, 정부는 과세형평성 제고 및 소득재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일 제도가 아닌 여러 제도 간의 연계성과 상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수 일자리 취업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세법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동시 발생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소득기반 사회보험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의 종합소득신고를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세 및 사회보험료의 과세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공단과 과세당국 간에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상호 교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정형 취업소득 발생자 중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재정 정책 차원의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학술적·정책적 기여도가 있다. 먼저, 플랫폼 근로자 등 비정형소득자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나 과제는 존재했지만, 소득신고 등의 측면에서 ‘비공식’소득을 추정하려는 노력은 본 연구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또한, 이렇게 추정된 비공식 비정형소득의 발생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기초생활보장급여, 근로장려세제 등 여러 측면에 미치는 효과를 단일한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검토한 연구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개별응답에만 기반한 설문조사에서 주로 포착되는 ‘소득 과소보고’와 연관된 측정오차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에 기반한) 보완자료 간의 간극을 활용하였다는 점도 기여점 중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기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시뮬레이션의 여러 단계에서 사용된 제도들을 추정할 때 OLS, Probit 모형을 가정하였는데, 이러한 가정이 실제 제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둘째, 자료의 시점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각 자료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 자료를 결합하여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였다. 독자들은 두 가지 문제로 인한 오류가 시뮬레이션 수행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20년 귀속연도 소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기 때문에, 2021년 7월 이후부터 도입된 특고·예술훈 고용보험 제도와 이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 제도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특히 마지막 한계점 때문에, 인적용역 사업 소득이 발견되어도 고용보험의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므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의 급여혜택을 정부지출로 파악하지 못한 점도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분석 연도를 2021년 이후로 하고, 분석기법 고도화, 최근의 과세자료 및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활용 등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 목 차

|  |    |
|--|----|
| I. 서론 .....                                      | 15 |
| 1. 문제의식 .....                                    | 15 |
| 2. 연구 목적 및 범위 .....                              | 17 |
| II. 기존 문헌 및 제도 현황 .....                          | 21 |
| 1. 기존 문헌 .....                                   | 21 |
| 가. 지하소득 추정 관련 .....                              | 21 |
| 나. 비정형 취업 관련 .....                               | 30 |
| 2. 소득파악 행정 발전 연혁 및 동향 .....                      | 31 |
| 가. 소득파악 행정 발전 연혁 .....                           | 31 |
| 나. 소득파악 행정의 최근 동향: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br>중심으로 ..... | 32 |
| 다. 소득파악 행정의 최근 동향: 인적용역 사업자를 중심으로 .....          | 34 |
| 라. 소결 .....                                      | 48 |
| 3. 주요 분야 경제활동 현황 .....                           | 50 |
| 가. 2021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 .....                   | 50 |
| III. 분석 방법 .....                                 | 59 |
| 1. 분석 방법 개관 .....                                | 59 |
| 2. 설문조사 설계 방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 .....        | 61 |
| 3. 시뮬레이션 분석 절차 개관 .....                          | 62 |
| 4. 정책 및 제도의 모형 반영 방법 .....                       | 64 |
| 가. 건강보험 .....                                    | 64 |
| 나. 국민연금 .....                                    | 66 |
| 다. 고용보험 .....                                    | 67 |

- 라. 소득세 ..... 68
- 마. 근로장려세제 ..... 70
- 바. 기초생활보장제도 ..... 70
  
- IV. 분석 자료 ..... 75
  - 1.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75
  - 2.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용 ..... 78
  -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 기초통계량 ..... 79
  
- V. 분석 결과 ..... 82
  - 1. 조사자료-행정자료 관계 추정 결과 ..... 82
    - 가. 과소보고와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성 ..... 82
    - 나. 보완소득과 조사소득 간 관계식 추정 결과 ..... 82
  -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 결과 ..... 87
    - 가. 비공식 취업소득 관련 기초통계량 ..... 87
    - 나. 비공식 취업소득 발생 확률 및 금액 추정 결과 ..... 92
  - 3. 시뮬레이션 모형: 기준경제 ..... 99
  - 4. 비공식 취업소득 추정 결과 ..... 111
  - 5. 비공식 취업소득 반영 이후 과세 및 지원의 변화 양상 ..... 115
  
- VI. 논의 및 정책함의 ..... 120
  - 1. 요약 및 논의 ..... 120
  - 2. 정책함의 ..... 122
  
- 참고문헌 ..... 125
  
- 부록 ..... 129

---

---

## 표목차

|  |    |
|--|----|
| 〈표 II-1〉 지하경제 규모 추정을 위한 직·간접적 방법의 장단점            | 22 |
| 〈표 II-2〉 지하경제 규모 추정을 위한 간접적 방법들의 특징 및 장단점        | 23 |
| 〈표 II-3〉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                        | 29 |
| 〈표 II-4〉 국세청 소득파악 행정 발전 연혁                       | 32 |
| 〈표 II-5〉 근로자 및 인적용역 사업자 소득파악 방법 및 주기             | 34 |
| 〈표 II-6〉 인적용역 사업자 대상 소득파악 수단                     | 37 |
| 〈표 II-7〉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업종별 원천징수 현황(2016~2020년 귀속) | 41 |
| 〈표 II-8〉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46 |
| 〈표 II-9〉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법상 신고의무                    | 46 |
| 〈표 II-10〉 업종별 플랫폼 예시                             | 51 |
| 〈표 II-11〉 플랫폼노무제공자의 인구학적 특징                      | 53 |
| 〈표 II-12〉 이전 경제활동 및 가상의 경제활동 상태                  | 55 |
| 〈표 II-13〉 재정정책 및 사회보험 가입상태                       | 56 |
| 〈표 II-14〉 플랫폼의 신원파악, 지급형태 유형 및 소득신고내용            | 57 |
| 〈표 III-1〉 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공식·비공식 부문 가정       | 61 |
| 〈표 III-2〉 시뮬레이션 분석 단계별 절차                        | 63 |
| 〈표 III-3〉 시뮬레이션의 제도 반영 방법                        | 71 |
| 〈표 IV-1〉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초통계                   | 76 |
| 〈표 IV-2〉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변수의 조사시점 개관                | 78 |
| 〈표 IV-3〉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 시점별 수집정보                 | 79 |
| 〈표 IV-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 응답자 분포: 인구학적 특성    | 81 |
| 〈표 V-1〉 과소보고(조사<보완)와 주요 변수들 간 상관성 분석             | 83 |
| 〈표 V-2〉 보완소득과 조사소득 간 관계식 추정 결과                   | 86 |

---

<표 V-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 응답자 분포: 정형적 경제활동 ...88

<표 V-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 응답자 분포: 비정형 경제활동 ...91

<표 V-5> 비공식소득의 발생 확률 추정 결과: 배달 및 퀵서비스 .....94

<표 V-6> 비공식소득의 규모 추정 결과: 배달 및 퀵서비스 .....95

<표 V-7> 비공식소득의 발생 확률 추정 결과: 돌봄, 가사, 과외 .....96

<표 V-8> 비공식소득의 규모 추정 결과: 돌봄, 가사, 과외 .....97

<표 V-9> 비공식소득의 발생 확률 추정 결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 .....98

<표 V-10> 비공식소득의 규모 추정 결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 .....99

<표 V-11> 개인의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유형 및 소득신고 유형(1/3):  
     기준경제 ..... 100

<표 V-12> 개인의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유형 및 소득신고 유형(2/3):  
     기준경제 ..... 101

<표 V-13> 개인의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유형 및 소득신고 유형(3/3):  
     기준경제 ..... 102

<표 V-14> 개인의 특성별 사회보험료 및 결정세액(1/2): 기준경제 ..... 103

<표 V-15> 개인의 특성별 사회보험료 및 결정세액(2/2): 기준경제 ..... 104

<표 V-16> 가구특성별 사회보험 및 소득신고 유형(1/3): 기준경제 ..... 105

<표 V-17> 가구특성별 사회보험 및 소득신고 유형(2/3): 기준경제 ..... 106

<표 V-18> 가구특성별 사회보험 및 소득신고 유형(3/3): 기준경제 ..... 107

<표 V-19> 가구의 특성별 사회보험료 및 결정세액(1/2): 기준경제 ..... 108

<표 V-20> 가구의 특성별 사회보험료 및 결정세액(2/2): 기준경제 ..... 109

<표 V-21> 비공식소득 발생 확률 추정 결과: 기초통계량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 ..... 113

<표 V-22> 비공식소득 규모 추정 결과: 기초통계량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 ..... 114

<표 V-23> 과세 및 지원의 변화 양상(기준경제 대비) ..... 117

---

## 그림목차

|   |     |
|---|-----|
| [그림 II-1] 원천징수 비대상 인적용역 업종별 기본 거래형태 .....                   | 36  |
| [그림 II-2] 간이지급명세서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인적용역 제공 형태 .....               | 38  |
| [그림 II-3]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인적용역<br>제공 형태 .....     | 38  |
| [그림 II-4]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업종별 원천징수 현황<br>(2016~2020년 귀속) ..... | 40  |
| [그림 II-5]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지역별 원천징수 현황(2020년 귀속) .....          | 43  |
| [그림 II-6] 신종업종 사업자 탈루 사례 .....                              | 47  |
| [그림 II-7] 업종별 근로시간, 월소득, 시간당임금 비교 .....                     | 54  |
| [그림 V-1] 비공식소득의 취업소득 분포에의 영향 .....                          | 118 |

---



---

# I. 서론

---

## 1. 문제의식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조세 및 재정 정책의 설계, 운영, 집행에 있어서 소득과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소득수준이 재정 정책 및 조세지출의 수급대상을 판별할 때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당국의 소득과약 역량은 복지대상 발굴 역량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재정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에 생계(30%)·의료(40%)·주거(45%)·교육(50%)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sup>1)</sup> 한편 주요 조세지출 제도의 하나인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총소득기준액이 단독가구(2,200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맞벌이가구(3,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특히, 유사한 맥락에서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맞물려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가 구축된 것은, 과세당국의 국세행정이 사회복지 제도의 성공적인 집행에 결정적인 요인임을 방증한다.

반면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형평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당국이 파악하는 일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소득세 징수는 개인 및 법인이 신고한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되, 과세당국의 세무행정력(추가적인 자료수집 혹은 세무조사 등)을 투입하여 신고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 최종적인 소득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확정된 소득자료의 일부는 사회보험공단으로 전달되어 사회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

---

1) 전자정부누리집,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3&PAGE=3&topTitle=](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3&PAGE=3&topTitle=), 검색일자: 2022. 3. 1.

된다.<sup>2)</sup>

앞서 언급한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소득과약 국세행정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과약에 필요한 국세행정에 대한 정책수요는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발달 및 다양한 결제 수단의 발생으로 다양한 소득 및 수익 창출의 기회가 생겨나고, 그러한 새로운 흐름이 전통적인 생산 및 고용 관계의 쇠퇴 기조에 의해 가속화됨에 따라 특히 그러하다. 혹자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전자결제 방식이 담보되는 경우 소득과약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며 현재 과세당국의 소득과약 역량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 플랫폼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플랫폼이 개인 간 서비스 거래를 촉진하고 정보제공 서비스로부터 수수료 수입은 얻되 최종적인 거래를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최종적인 소비재(예: 배달 음식)에 대해서는 전자결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그 중간에서 인적용역(예: 배달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원은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도 존재한다.<sup>3)</sup> 요컨대, 플랫폼 경제가 발달한다고 해서 거래자의 신원이나 거래금액을 플랫폼이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유튜버 등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도 새로운 경제활동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득과약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나 네이버 등 시장 지배적인 플랫폼으로 한정할 때, 플랫폼에서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충분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가 제품 홍보 등과 관련하여 음성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개인의 신고 혹은 거래 사업자의 협조 없이 파악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되는 후원 수당의 경우, 과세당국이 파악할

---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산 정보도 추가적으로 입수해야 한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지방정부로부터 자료협조를 받아, 국세청의 소득 정보 등과 함께 종합적인 지표를 생성한 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3) 이상의 내용은 김빛마로·김문정(2021)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수 있는 방안이 마땅히 없다. 즉, 소득파악 인프라가 크게 발전하고, 전자결제가 보편화되더라도 과세당국이 포착하지 못하는 소득(‘비공식소득’)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 2. 연구 목적 및 범위

본고에서는 비공식 취업소득을 고려했을 때 주요 조세 및 재정 정책의 함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서술하기 전에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비공식’이라는 표현은 과세당국이 포착하지 못하거나 포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단,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과세당국이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러한 소득은 본고에서 정의하는 비공식 취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sup>4)</sup> 또한, 사회보험 공단과 과세당국 간의 과세 징수 기준의 불일치로 인하여 특정 측면에서 징수되지 않는 소득 역시 비공식 취업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둘째, 본고에서는 ‘취업소득’에 초점을 맞춘다. 본고에서의 취업소득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세법상 연말정산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인적용역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부가가치세 납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한다.<sup>5)</sup> 비공식적인 자산소득은 본 연구의 분석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으로 분석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가상화폐 등 새로운 자산유형이 나타남에 따라 관련 과세 방안도 중요한 정책연구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자산소득까지 함께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역시 배제하였다.<sup>6)</sup>

셋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탈루 문제는 본고에서 검토하지

---

4) 예를 들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이자소득 제외) 1,000원 미만인 경우,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중앙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음(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검색일자: 2022. 11. 15.).

5)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자: 2022. 11. 15.).

6) 온라인 콘텐츠 제작으로 인한 대가나 소득이 가상화폐로 지급·전환되는 경우 세원파악이 어려울 수 있고(신상화, 2022), 이 점에서 가상화폐도 향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규모를 추정하는 문제는 국세행정 분야의 중요한 연구과제인 만큼 기존 연구에서는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의 소득탈루 문제가 집중적으로 검토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요 초점은 인적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로자(혹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제주체)로 한정한다. 이러한 분석의 초점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먼저, 자영업자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연구분석의 범위를 좁히고자 했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임금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제주체 관점에서도 비정형 취업활동의 접근성이 다분히 높기 때문에, 이들의 ‘복수취업’(임금일자리 + 인적용역 활동) 행태가 향후 더욱 보편화될 수 있음을 반영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초점을 맞추는 비공식 취업소득에는 무엇이 있는가? 본고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업종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배달 및 퀵서비스 부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1) 및 김빛마로·김문정(2021)에 따르면, 배달 및 퀵서비스 분야 인적용역 종사자들 중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특히 폐쇄형 플랫폼으로 인적용역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당국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원을 플랫폼을 통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배달·퀵서비스 부문의 비공식 취업소득이 파악되는 경우 근로장려세제나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의 정책함의가 클 수 있다.

두 번째로 연구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비공식 취업소득 분야는 돌봄 및 가사서비스이다. 이 분야는 전통적으로 개인 간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므로 비공식 취업소득 소득의 분석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sup>7)</sup>

마지막 분석대상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서비스 분야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

7) 가사서비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가사서비스 제공자는 오랫동안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가사서비스의 대가 역시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져 가사서비스 제공자들은 오랜 기간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어, 공식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이 사용자로서 서비스 제공자들과 근로계약을 맺는다. 이 경우, 가사서비스 사용자는 가사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용요금을 지불하게 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자: 2022. 11. 15.).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서비스와 관련된 국세청의 업종코드가 최근에는야 포함된 사례(2019년 9월 이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종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과세당국이 온라인 콘텐츠 활동에 대한 이해가 아직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만약 온라인 콘텐츠 제작으로 인한 수입이 압호화폐로 지급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해외계좌에 수입을 예치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해당 소득을 포착하기 어려울 것이다.

독자가 가장 궁금해 할 핵심적인 부분은 과세당국이 포착하지 못하는 비공식 취업소득을 연구자 관점에서 어떻게 파악하느냐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비공식 취업소득 정보를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되, 조사자료에 흔히 발생하는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s)를 교정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 대상은 가구주가 자영업자가 아닌 일정한 가구유형(단독가구, 가구주 + 배우자, 가구주 + 배우자 + 30세 미만 자녀)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개인이다. 설문조사에서 각 개인은 본고에서 연구자들이 초점을 맞춘 3개 분야의 비공식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하고, 만약 해당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소득 금액 및 소득 신고 행위에 대해서도 응답하게 된다. 요컨대,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자는 특정 개인·가구의 특징을 갖고 있는 어떠한 개인에게 (전술한 3개 분야의) 비정형 취업소득이 발생할 확률, 이때의 소득수준, 소득의 공식성/비공식성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자체 설문조사에서 수집한 비공식 취업소득의 정보를 통계청이 제공하는 2020년도에 대한 「가계금융복지조사」(2021년 공표 자료)와 결합하여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2017년 이후 소득변수(사업소득 제외)를 행정자료로 대체로 보완하는 반면, 연구진의 설문조사는 '조사자료이기 때문에 공식소득을 연계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사소득과 보완소득(행정자료 기반)이 동시에 제공되는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을 이용하여 일정 부분

보완하였다. 예를 들어, 어떠한 개인 혹은 가구 특징을 갖고 있는 집단이 근로소득을 과소보고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설문조사에서 응답된 근로소득 역시 그러한 과소보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여 해당 집단의 조사된 소득 금액을 보정할 수 있다.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는, 소득변수의 보정단계를 거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비공식 취업소득의 발생확률 및 소득금액을 설문조사에서 추정하고, 이렇게 도출된 관계식을 2020년 설문조사 분석표본에 투영하여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함의 등을 이끌어내었다.

---

## II. 기존 문헌 및 제도 현황

---

### 1. 기존 문헌

#### 가. 지하소득 추정 관련

비정형 취업활동의 비공식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은 지하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과 유사한 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공식적인 자료나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드러나지 않은 경제부문에 대한 파악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8)</sup>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하경제의 규모 파악을 위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어온 방법론들을 검토하고, 그를 바탕으로 비공식취업의 (소득) 규모 파악을 위한 전략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적인 방식과 간접적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II-1〉 참조).<sup>9)</sup>

우선 직접적 방법의 경우 임금근로자 혹은 비임금근로자 등 지하경제의 잠재적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혹은 (심층) 인터뷰 등을 실시함으로써 그 규모를 직접 기늬해보는 방식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등에서 지하경제와 유사한 비공식경제(informal economy)의 규모를 기늬하기 위해 고안·사용한 방법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는데, 조사 대상 표본의 대표성이 충분하고 응답의 정확성이 담보될 수

---

8) 비공식 취업소득도 결국 지하경제 소득의 한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미세한 개념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지하경제라 함은 보통 소득파악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소득탈루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수행된 경제활동이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소득파악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제활동의 출현으로 인하여 기존의 소득파악 인프라로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9) 이하 지하경제 규모 추정방법에 관한 논의는 강문수 외(2015), 안종석 외(2010)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있다는 전제하에 신빙성 있는 추정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설문조사 내지 (심층) 인터뷰로부터 참여자들의 진솔한 응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그에 따라 직접적 방식을 활용하여 지하경제 규모 추정을 시도할 경우 그 규모가 과소평가될 우려가 존재한다.

한편, 직접적인 관측이 불가능한 지하경제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대변해주는 지표(들)를 추정함으로써 그 규모를 가늠해보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접근법들을 지하경제 규모 추정을 위한 간접적 방법들이라 통칭할 수 있다. 간접적 방법의 경우 지하경제에 대한 관측이 불가능하더라도 그와 연관된 '지문'을 온전히 지우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대리변수가 적절히 선택되고 그 추정이 엄밀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하경제 규모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적절한 대리변수 설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대리변수의 측정 및 집계와 관련된 측면에서 지하경제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등은 간접적 접근법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표 II-1〉 지하경제 규모 추정을 위한 직·간접적 방법의 장단점

| 구분     | 방식   | 장점   | 단점   |
|--------|--|--|--|
| 직접적 방법 | - 지하경제의 잠재적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혹은 (심층) 인터뷰 등을 실시  | - 조사 대상 표본의 대표성이 충분하고 응답의 정확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경우, 신빙성 있는 추정치 확보 가능 | - 조사 대상자들의 진솔한 응답을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가 과소 추정될 우려 |
| 간접적 방법 | - 지하경제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대변해주는 지표(들)를 추정함으로써 그 규모를 추정 | - 대리변수가 적절히 선택되고 그 추정이 엄밀히 진행될 경우 지하경제 규모의 체계적인 파악 가능        | - 적절한 대리변수 설정의 어려움<br>- 대리변수의 측정 내지 집계와 관련된 문제     |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간접적 방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하경제의 규모 추정을 시도하는 기존 연구들은 직접적 접근법이 아닌 간접적 접근법을 주로 택하고 있다. 이는 직접적 방법이 기대는 설문조사 등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들의 극복이 더 쉽

지 않은 것으로 연구자들이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간접적 방법들에 초점을 맞추어 지하경제 규모 추정을 시도한 선행연구들을 소개·정리하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하경제를 대변하는 지표를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방법론 일반을 간접적 접근법이라 칭할 수 있는데, 추정에 활용되는 대리변수의 종류 및 성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분류가 가능하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어 온 대리변수로는 현금수요, 가계 소비지출, 전력소비량 등이 있는데, 해당 대리변수를 활용하는 방법론을 현금통화수요 추정법, 소득·소비 비교추정법, 전력수요 추정법이라 각각 명명할 수 있다. 한편, 하나의 대리변수가 아닌 여러 변수들을 동시에 활용하여 지하경제 규모 추정을 시도할 수도 있는데, 이를 MIMIC(multiple indicators and multiple causes) 추정법이라 부른다. 끝으로 실제 세수와 이론적으로 계산되는 세수의 차이를 이용하여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려는 시도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조세격차(tax gap) 추정법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제 이상에서 열거한 간접적 방법론들의 특징 및 장단점(〈표 II-2〉 참조), 각각의 방법론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추정한 지하경제의 규모(〈표 II-3〉 참조) 등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II-2〉 지하경제 규모 추정을 위한 간접적 방법들의 특징 및 장단점

| 방법론         | 특장점  | 단점  |
|-------------|--|---|
| 현금통화수요 추정법  | - 지하경제의 주 거래수단이 현금이라는 사실에 근거<br>- 현금통화수요를 바탕으로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                  | - 추정을 위해 도입되는 가정들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현실성이 부족함               |
| 소득·소비 비교추정법 | - 근로자의 성실 소득신고, 자영업자의 불성실 소득신고를 가정<br>- 근로자들의 소득·소비 관계로부터 자영업자들의 실제 소득수준을 추계 | - 사업소득자의 소득탈루만을 고려하여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므로 그 규모가 과소 추정될 우려 |

〈표 11-2〉의 계속

| 방법론       | 특장점  | 단점  |
|-----------|--|---|
| 전력수요 추정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경제활동 영역에 있어 전기가 필수불가결함에 근거</li> <li>- 전력수요 성장률과 GDP 성장률을 비교하여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수요와 국내총생산 간에 추정된 관계에 크게 의존</li> </ul>                      |
| MIMIC 추정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경제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과 지하경제를 반영하는 여러 지표들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으로 설정</li> <li>- 구조방정식을 추정함으로써 잠재요인으로서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치를 지하경제 규모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임의적인 가정 도입이 불가피</li> </ul>           |
| 조세격차 추정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세수와 이론적으로 계산되는 세수의 차이(tax gap)를 바탕으로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적 관심인 지하경제 규모와 추정된 조세격차 규모가 정확히 대응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li> </ul> |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1) 현금통화수요 추정법

지하경제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제활동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현금을 주 거래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금통화와 관련된 수요를 추정함으로써 지하경제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지하경제 규모 추정방법을 현금통화수요 추정법이라 부른다. 당연하게도 현금통화수요 추정법의 핵심은 현금통화수요함수의 엄밀한 추정인데, 일반적으로 총통화 대비 현금통화 비율을 종속변수로,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소비지출비율, 이자율, 조세부담률 등을 설명변수로 삼는다. 이때 실제 현금통화수요와 세부담이 0일 때의 현금통화수요를 비교함으로써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계한다. 만일 지하경제 내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등 현금통화수요 추정법이 상정하는 일련의 가정들이 현실과 충분히 부합될 경우, 본 방법론으로부터 산출되는 추정치의 정확도는 상당 수준 이상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담 이외의 요인에 의해 지하경제가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현금통화수요 추정법에 근거한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는 비판적으로 수용될 필요가 있다.

현금통화수요 추정법은 상대적으로 널리 활용되어 온 지하경제 규모 추정 방법으로서,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한 연구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가령 2013~2015년을 기준으로 추정을 시도한 안중석 외(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8.0~8.7% 수준으로 나타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추정치는 2008년 기준 추정치 18.6~18.9%(안중석 외, 2010), 2006년 기준 추정치 22.6%(노기성·윤여필, 2007), 혹은 1999~2000년 기준 추정치 27.5%(Schneider, 2005)보다는 낮은 수준인데,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 2) 소득·소비 비교추정법

흔히 근로자는 자영업자에 비해 세금(소득)신고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통계조사에서 관측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지출(소비) 관련 정보가 실제 지출을 비교적 정확히 대변할 경우, 연구자들은 근로자들의 소득·소비 정보로부터 그 관계식을 추정한 뒤 자영업자들의 소비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소득수준을 추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자영업자들의 추정된 실제 소득이 과세당국에 신고된 소득에 비해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상당한데, 그 차이를 바탕으로 사업소득자의 소득탈루율, 나아가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바로 소득·소비 비교추정법의 전략이다. 따라서 소득·소비 비교추정법은 미시자료에 기반한 계량경제학적 추정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추정에 필요한 가정들의 적절성이다. 즉, 근로자의 경우 세금신고와 지출조사 모두 성실하게 응하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지출조사에만 성실히 임한다는 가정을 상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사실상 사업소득자의 소득탈루만을 고려하여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까닭에 그 규모가 과소 추정될 우려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득·소비 비교추정법을 활용한 연구성과들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편인데, 2008년을 기준으로 수행된 안중석 외(2010)의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3~3.1%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현금통화수요 추정법에 따른 추

정치(18.6~18.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소득·소비 비교추정법의 과소 추정 가능성을 예시한다. 다만, 동일한 연구에서 사업소득세 탈루율은 17~23%로 추정되고 있는바,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와 보완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sup>10)</sup>

### 3) 전력수요 추정법

현대에 이르러 전기는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지하경제 내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 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전력수요 추정법은 바로 이와 같은 전기의 필수불가결함을 이용하여 지하경제의 규모 추정을 시도하는 방법론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수요의 총량 내지 성장률을 국내총생산의 총량 내지 성장률과 비교함으로써 그 간격을 지하경제의 규모 내지 성장률로 환산해내는 방식이다. 전기의 생산 및 공급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독과점 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 전력 수요 내지 소비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은 비교적 용이한 편이며, 이는 전력수요 추정법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추정의 정확도 내지 신뢰도가 전력수요와 국내총생산 간 추정된 관계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은 전력수요 추정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전력수요 추정법의 경우 개발도상국 내지 체제전환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어 온 까닭에, 이를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2011~2013년을 기준으로 추정을 시도한 강문수 외(2015) 혹은 2005년을 기준으로 추정을 시도한 Onnis and Tirelli(2010) 정도가 유일한데,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0% 수준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상에서 소개한 전력수요 추정법과 유사하게 인공위성을 통해 확보 가능한 야간조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 역시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김규철(2020)은 야간조도 자료를

---

10) 최근에 수행된 연구(박수현, 2021)에서는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탈루율이 2015년 13.6%로 분석 기간(1990~2016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바탕으로 북한의 소득과 후생의 장기 추세를 새로운 시각에서 제시한 바 있다.

#### 4) MIMIC 추정법

이상에서 살펴본 현금통화수요 추정법, 소득·소비 비교추정법, 전력수요 추정법 등은 지하경제 활동을 대변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적 변수에 기대어 연구자들이 직접 관측하기 어려운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계해내는 방법들이다. 그러나 각각의 방법론들을 소개하며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단일변수의 대표성·충분성 문제 내지 가정의 현실성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간접추계 방식들의 한계점은 지하경제의 여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일정 수준 극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하경제를 설명·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multiple causes)과 지하경제를 반영하는 여러 지표들(multiple indicators)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으로 설정하고, 그 방정식을 추정함으로써 잠재요인으로서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해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MIMIC 추정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결과 값은 지하경제의 규모 그 자체가 아닌 지수(index)이다. 따라서 지수를 규모로 변환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임의적인 가정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MIMIC 추정법은 비교적 최근의 방법론으로서, 해당 방법론을 적용하는 연구가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 성과로는 김종희(2016)와 Schneider and Buehn(2018) 등이 있는데, 비슷한 시기의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정치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지적될 필요가 있다. 한편, MIMIC 추정법을 활용한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들은 여타 방법론으로부터 얻어지는 추정치들에 비해 그 값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MIMIC 추정법에서 상정하는 지하경제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 5) 조세격차 추정법

기본적으로 지하경제의 영역은 과세당국이 포착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의 영역과 넓은 교집합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탈세가 발생하는 영역이 지하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경제 규모는 탈세 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조세격차 추정법은 탈세 규모를 우선적으로 추정한 뒤 이를 지하경제 규모로 변환하는 방식을 택하는 접근법이다. 탈세 규모 추정을 위해 조세격차를 계산하는 방식이 EU 회원국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과세당국이 실제 징수한 조세수입과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잠재 조세수입 간의 격차(tax gap)를 추산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추정된 조세격차 규모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하경제 규모로 적절히 변환될 필요가 있는데, 개념상 양자가 정확히 대응되기는 어렵다는 점이 조세격차 추정법의 한계로 흔히 지적된다.

조세격차 추정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격차의 경우 17.8%(2010년 기준: 김재진·김학수, 2013) 내지 19.1%(2011년 기준: 안종석 외, 2016)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EU 28개국의 부가가치세 조세격차 중앙값이 10.3%(2016년 기준: Poniatowski et al., 2019)인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조세격차 규모가 주요국 대비 다소 높은 편임을 말해준다. 한편, 추정된 조세격차 규모를 바탕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기능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위에서 언급된 안종석 외(2016)에 따르면 그 규모가 국내 총생산 대비 2.7~4.7%(2011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 6) 소결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하경제 규모 추정을 위한 간접적 방법들은 각기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간접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뒤, 그 결과들을 보완적으로 이해·해석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앞서 소개한 지하경

제 규모 추정을 위한 직접적 방법과 간접적 방법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양자의 장단점을 고려하는 가운데 두 방법론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경우 지하경제의 모습을 보다 입체적·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단일 연구에서 다양한 방법론들을 모두 적용하여 지하경제 규모 파악을 시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방법론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공식 취업소득의 규모를 추정하려는 본 연구의 경우에도 직접적 방법과 간접적 방법의 활용을 모두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론을 모두 적용하면 연구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인 비공식 취업소득 발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직접적 방법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비공식소득 규모 추정을 시도한다. 설문조사 혹은 심층 인터뷰 등을 실시할 경우 현재까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비공식소득 보유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 특성 등이 일정 수준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지적한 직접적 방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통계적인 보완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Ⅲ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표 II-3〉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

(단위: GDP 대비 %)

| 추정 방법          | 추정 연도     | 추정치                 | 출처              |
|----------------|-----------|---------------------|-----------------|
| 현금통화수요 추정법     | 2013~2015 | 8.0~8.7             | 안종석 외(2017)     |
|                | 2008      | 18.6~18.9           | 안종석 외(2010)     |
|                | 2006      | 22.6                | 노기성·윤여필(2007)   |
|                | 2000      | 20.0                | 배민근(2005)       |
|                | 1999~2000 | 27.5                | Schneider(2005) |
| 소득·소비<br>비교분석법 | 1990~2016 | <13.6 <sup>1)</sup> | 박수현(2021)       |
|                | 2008      | 2.3~3.1             | 안종석 외(2010)     |
|                | 1994      | 13.4                | 최영순(1997)       |
|                | 1994~1995 | 9.5~14.0            | 유일호(1998)       |

〈표 II-3〉의 계속

(단위: GDP 대비 %)

| 추정 방법                     | 추정 연도     | 추정치       | 출처                        |
|---------------------------|-----------|-----------|---------------------------|
| 전력수요 추정법                  | 2011~2013 | 19.8      | 강문수 외(2015)               |
|                           | 2005      | 20.0      | Onnis and Tirelli(2010)   |
| MIMIC 추정법                 | 1995~2014 | 10.9      | 김종희(2016)                 |
|                           | 1996~2014 | 25.9      | Schneider and Buehn(2018) |
|                           | 1999~2010 | 24.7~28.3 | Schneider and Buehn(2013) |
|                           | 2008      | 17.1      | 안종석 외(2010)               |
|                           | 1996~2006 | 27.0~29.0 | Schneider et al.(2010)    |
| Tax Gap 추정법 <sup>2)</sup> | 2011      | 19.1      | 안종석 외(2016)               |
|                           | 2010      | 17.8      | 김재진 · 김학수(2013)           |
|                           | 1995      | 14.3      | 노기성 · 김동준(2001)           |

주: 1) 자영업자 소득탈루를

2) 부가가치세 tax gap 추정 결과

자료: 강문수 외(2015), p. 47 〈표 2-7〉을 수정 · 보완

## 나. 비정형 취업 관련

비정형 경제활동의 경우 가장 관심을 받은 것은 플랫폼 노동에 관한 부분이였다. 과거의 관련 연구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부분은 플랫폼 공급자 혹은 플랫폼 노무제공자들의 사용자 종속성에 관한 것이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근로계약을 맺는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일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그러한 종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실제 사례나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밝힌 바 있다.<sup>11)</sup> 이러한 문헌은 궁극적으로 2021년 7월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이 새롭게 도입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도 플랫폼 노무제공 활동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많은 경우 전화 인터뷰, 대면 인터뷰 등으로 플랫폼 공급자를 파악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여러 업종 중에서도 일부 업종에 국한하여 소득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문

11) 기존 연구로는 김준영 외(2018), 김준영 외(2021), 장지연(2020), 정홍준(2021) 등의 연구를 고려할 수 있다.

향에 소득신고 문항을 추가로 고려하여 이러한 비정형 소득활동의 비공식 성격을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이 기존의 설문조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 초점을 맞추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활동도 기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저자들이 수행한 설문조사의 주요 기여점 중의 하나이다.

본고에서 논의된 비정형 취업자 개념 혹은 시뮬레이션으로 도출된 정책함 의점 역시 기존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보통 비정형 취업자를 논의할 때는 근로자와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취약계층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비정형 취업자 중에서는 상용직 등 정형적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서 부수입을 창출하거나 추가적인 취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또한, 정책함의 경우 기존 연구는 고용보험 제도만이 주로 고려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소득수준이 공식화되었을 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여러 차원에서의 국가 및 개인 관점에서의 파급효과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 2. 소득파악 행정 발전 연혁 및 동향

### 가. 소득파악 행정 발전 연혁

1966년 3월 3일 당시 재무부 외청으로서 국세청이 발족한 이래 2022년 10월 현재까지 국세청의 가장 큰 과업 중 하나는 전 국민 소득파악이라 할 수 있다. 정확하면서도 적시적인 소득파악이 공평하고 효율적인 과세행정 구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sup>12)</sup> 1990년대 이후 국세청 소득파악 행정의 발전 연혁은 <표 II-4>에 요약·제시된 바와 같은데, 세정의 과학화 및 전자화가 소득파악 행정 발전의 핵심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초 세정의 과학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00년대 초 홈택스서비스가 개통되기에 이른다. 이후 현금영

12) 이하 국세청 소득파악 행정 발전 연혁 내용은 국세청(2016) 제1편 및 제2편 제4장을 참고하여 정리·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수증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지속된 한편, 2015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되는 등 전자세정 고도화 작업이 병행되었다.

〈표 II-4〉 국세청 소득파악 행정 발전 연혁

| 기간                    | 내용  |
|-----------------------|---|
| 1991. 12. ~ 1995. 12. | - 세정의 과학화 추진                              |
| 1995. 12. ~ 1998. 3.  | - 통합전산망 구축 통한 획기적 세정 과학화                  |
| 1998. 3. ~ 1999. 5.   | - TIS 체계적 정비·보완으로 조기 안정화 도모               |
| 1999. 5. ~ 2001. 9.   | - 전산시스템으로 세원 관리 본격화<br>-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
| 2001. 9. ~ 2003. 3.   | - 홈택스서비스 개통, 전자세정의 전기 마련                  |
| 2003. 3. ~ 2005. 3.   | - 전자세정 고도화로 납세서비스 획기적 개선                  |
| 2005. 3. ~ 2006. 6.   | -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
| 2006. 7. ~ 2007. 11.  | - 공정세정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                        |
| 2007. 11. ~ 2009. 1.  | - 기업 친화적인 세정환경 조성                         |
| 2009. 7. ~ 2010. 7.   | - 과세 사각지대 없애기 노력 경주                       |
| 2010. 8. ~ 2013. 3.   | - 새로운 10년 대비한 미래전략 수립                     |
| 2013. 3. ~ 2014. 8.   | -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기반 구축                       |
| 2014. 8. ~ 2017. 6.   | -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

자료: 국세청(2016) 제1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나. 소득파악 행정의 최근 동향: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정책 시행 및 개인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큰 타격을 안겼다. 문제는 감염병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은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식별 및 지원 수준 설정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지원 대상 파악 및 지원 수준 설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소득파악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제활동 영역이 상당했음은

물론,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에서도 그 파악 주기가 촘촘하지 못해 행정당국이 확보하고 있는 소득정보의 시의성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과약 체계 외연 확장 및 시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바, 이하에서는 이른바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 구축을 목표로 2022년 6월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세법개정 사항 등을 면밀히 정리·검토함으로써 소득과약과 관련된 최근 국세행정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2년 6월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및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과약 방법 및 주기 등은 <표 II-5>에 요약·정리된 바와 같다. 우선 상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 주기로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에 의해 소득과약이 가능하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소득과약이 가능한데, 2020년 추진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그 제출 주기가 기존 매분기에서 매월로 단축된 상황이다.<sup>13)</sup>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세법상 지위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에 따라 소득과약 방법 및 주기가 결정된다.<sup>14)</sup> 우선 면세사업자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월별 소득과약이 가능하도록 2022년 6월 현재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이다. 다만 발생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소득과약 방법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의해,<sup>15)</sup>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아니면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의해,<sup>16)</sup> 매월 소득이 과세관청에 보고되도록 세법이 개정된 상태이다.<sup>17)</sup> 한편 인적용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면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해 소득이 파악될 수 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종이세금계산서의 경

13) 「소득세법」 제164조

14)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되 차량 등의 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인적용역을 공급할 경우 과세사업자로 분류된다.

15) 「소득세법」 제164조의3

16) 「소득세법」 제173조

17) 「소득세법」 개정 이전에는 제출주기가 각각 매반기 및 매년이었다.

우 그 제출주기가 반기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I-5〉 근로자 및 인적용역 사업자 소득과약 방법 및 주기

| 대상  |      | 소득과약 방법     |               | 제출주기                 |          |
|-----|------|-------------|---------------|----------------------|----------|
| 근로자 | 상용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반기                   |          |
|     | 일용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월                   |          |
| 사업자 | 인적용역 | VAT 면세      | 원천징수○ (36종)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매월       |
|     |      |             | 원천징수× (8종)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매월       |
|     |      | VAT 과세 (4종) | 종이세금계산서       |                      | 반기       |
|     |      |             | 전자세금계산서       |                      | 발급일 다음 날 |

주: 2022년 6월 기준으로 작성. VAT는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를 의미함  
 자료: 국세청(2021), p. 29 일부 수정

#### 다. 소득과약 행정의 최근 동향: 인적용역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상에서 근로자 및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과약 방법 및 주기 등에 대하여 간략히 논의하였으나, 다양한 업종 및 거래 형태가 존재하는 현실(그림 II-1 참조)에서의 실제 소득과약 행정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플랫폼<sup>18)</sup>에 기반한 사업 운영 및 그로부터의 소득 발생은 최근 매우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형태 및 노동시장의 복잡화·다변화는 소득과약 관련 행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과약과 관련된 동향을 보다 상세히 점검하고, 과세자료에 기반하여 그 규모 변화 추이를 제시·논의한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신종업종 사업자의 현행 세법상 의무 및 대표적인 탈루 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소득과약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고민하도록 한다.

18) 우리말로 ‘정거장’으로 번역할 수 있는 ‘플랫폼’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사업형태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 「신종업종 세무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9&cntntsId=7801>, 검색일자: 2022. 6.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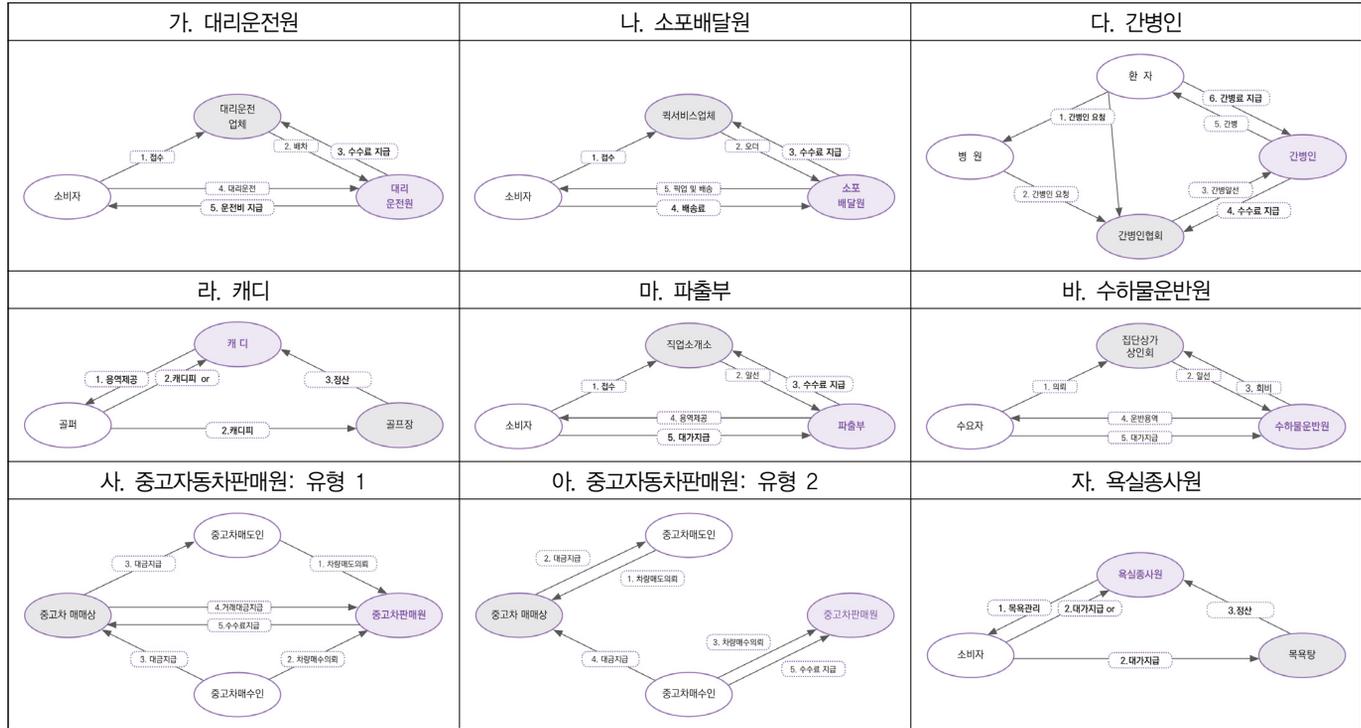
## 1) 소득과약 상세동향

〈표 Ⅱ-6〉에는 인적용역 사업자 대상 소득과약 방법이 보다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택배기사, 건설기계운전원, 화물차운전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근로자 고용 없이 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실시간(혹은 반기별) 소득과약이 가능하다. 반면,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 그 외 38개 업종의 경우에는 소득과약 수단이 실제 계약 내지 거래 형태에 의해 결정된다. 가령 〈그림 Ⅱ-2〉에 도해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업주 등이 (대가를 수령하여)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sup>19)</sup> 〈그림 Ⅱ-3〉에 도해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인적용역 사업자가 용역공급 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로 제출명세서를 통해 월별 소득을 과약할 수 있다. 요컨대 동일 업종이라도 소득과약 수단은 구체적인 계약 및 거래의 형태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표 Ⅱ-6〉에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의 범주가 세법상 인적용역의 범주와 비교되어 제시되고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점은 세법상 인적용역의 범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주와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범주 각각 및 그 합집합에 비해 넓게 정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주와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범주 역시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택배기사, 건설기계운전원 등 총 13종의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은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범주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캐디와 소프트웨어기술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과후강사는 노무제공자 범주에만 포함되어 있음을 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 참고로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은 면제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

[그림 II-1] 원천징수 비대상 인적용역 업종별 기본 거래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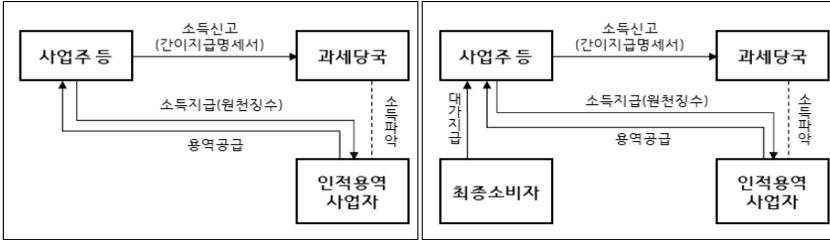
자료: 국세청(2021), pp. 49~54

〈표 II-6〉 인적용역 사업자 대상 소득파악 수단

| 특고<br>(산재) | 노무<br>(고용) |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   |         | 세법상<br>사업<br>종류 | 소득파악 수단 |       |
|------------|------------|---|---------|-----------------|---------|-------|
| ○          | ○          | 택배기사, 건설기계운전원,<br>화물차운전원, 가전제품설치기사  |         | 4종              | 과세      | 세금계산서 |
|            |            | 가사도우미   |         | 8종              | 면세      | 계산서   |
|            |            | 중고차판매원  |         |                 |         |       |
| ○          | ○          | 대리운전  |         |                 |         |       |
| ○          | ○          | 퀵서비스(소포배달원)   |         |                 |         |       |
| ○          | ×          | 캐디  |         |                 |         |       |
|            |            | 간병인   |         |                 |         |       |
|            |            |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         |                 |         |       |
|            |            | 물품배달(수하물운반원)  |         |                 |         |       |
| ○          | ○          | 보험설계, 방판/외판,<br>학습지방문강사,<br>교육교구방문강사,<br>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br>신용카드회원모집인   | 36<br>종 |                 |         |       |
| ×          | ○          | 방과후강사   |         |                 |         |       |
|            |            | 기타모집수당, 저술가, 화가관련,<br>작곡가, 배우, 모델, 가수, 성악가,<br>직업운동가, 바둑기사, 연예보조,<br>꽃꽂이교사, 학원강사,<br>행사도우미, 심부름용역,<br>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br>다단계판매, 기타자영업,<br>봉사료수취자, 자문/고문, 병의원,<br>음료운반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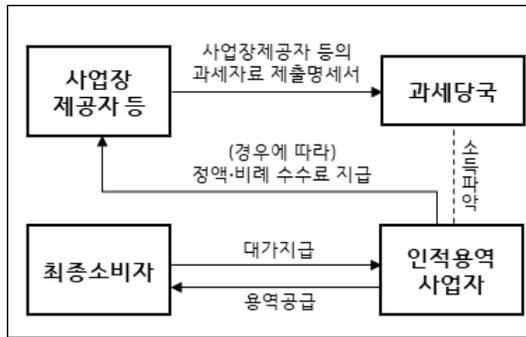
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서 소프트웨어기술자는 표에 생략되어 있음  
 자료: 국세청(2021), p. 41 일부 수정

[그림 II-2] 간이지급명세서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인적용역 제공 형태



자료: 최인혁·정훈(2021), p. 8 [그림 III-1] 일부 수정

[그림 II-3]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인적용역 제공 형태



자료: 최인혁·정훈(2021) p. 10 [그림 III-3] 일부 수정

## 2) 원천징수 현황

인적용역 사업자의 규모 및 소득수준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업종별 원천징수 현황을 통하여 가늠해볼 수 있다. <표 II-7>은 2016~2020년 귀속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29종의 원천징수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0년 총인원은 6,950천명, 총지급액은 약 73.4조원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2016년 당시 총인원 5,105천명, 총지급액 51.1조원에 비해 각각 36.2% 및 43.5% 증가한 수치로, 그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름을 목격할 수 있는 대목이다.<sup>20)</sup>

20) 참고로 동 기간 1인당 지급액은 10.0백만원에서 10.6백만원으로 약 6% 상승한 것으로

물론 사업자 규모 및 소득의 변화 추이에 있어 인적용역 업종별 이질성은 상당한 것으로 관찰되는데, 특히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인해 사업자 규모 및 소득 측면에서 급증과 급감을 보이는 경우가 모두 발견된다. 가령 퀵서비스(940918)의 경우 그 인원이 2016년 11천명에서 2020년 101천명 수준으로 무려 76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그림 II-4 참조), 봉사료 수취자(940905)의 경우 그 인원이 2016년 51천명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25천명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940306) 등의 업종이 새롭게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자영업(940909)에 해당되는 인원 및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sup>21)</sup> 기준 경비율·단순경비율 등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됨을 고려할 때 보다 실제적인 분류를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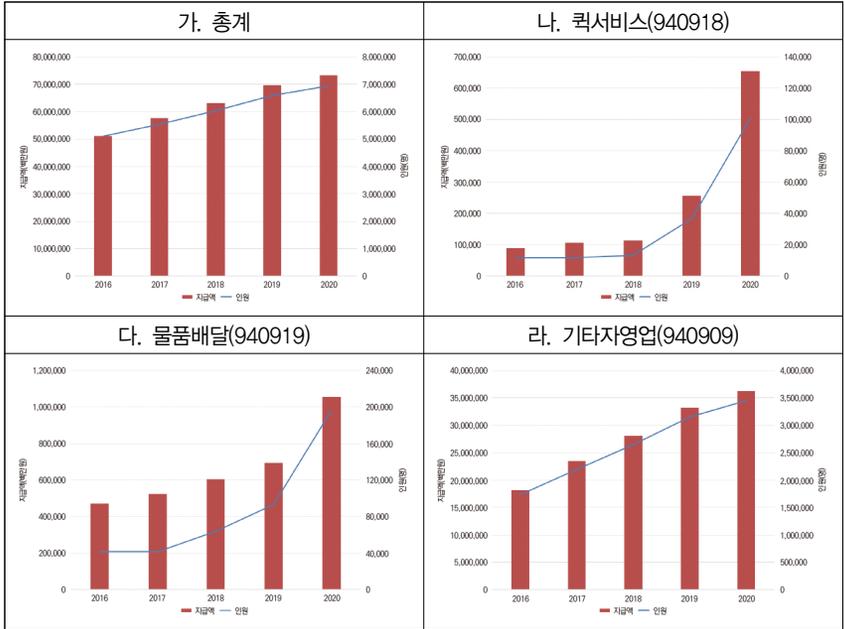
인적용역 사업자 규모 및 소득 측면에서의 지역별 비중은 [그림 II-5]에 도해되어 있다.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내 인적용역 사업자 인원 및 소득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2020년 귀속 기준)하고 있는데, 지급액 측면에서는 서울, 인원 측면에서는 경기의 비중이 더 높아 1인당 지급액은 서울(18.7백만원)이 경기(13.6백만원)보다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계된다.

21) 2016년과 2020년 사이 기타자영업 인원 및 지급액은 각각 98.9% 및 99.9% 증가하였다.

[그림 11-4]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업종별 원천징수 현황(2016~2020년 귀속)



주: 병의원(851101), 학습지방문강사(940920), 교육교구방문강사(940921), 대여제품 방문점검원(940922), 대출 모집인(940923), 신용카드회원 모집인(940924), 방과후강사(940925)는 총계에서 제외되었음  
 자료: 장혜영 의원실 보도자료(2022. 2. 8), <첨부 1> 재가공(원자료는 국세청 제공)

〈표 II-7〉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업종별 원천징수 현황(2016~2020년 귀속)

(단위: 명, 백만원)

| 업종             | 업종 코드  | 2016년      |           |         | 2017년   |           |         | 2018년   |           |         | 2019년   |           |         | 2020년   |           |         |
|----------------|--------|------------|-----------|---------|---------|-----------|---------|---------|-----------|---------|---------|-----------|---------|---------|-----------|---------|
|                |        | 인원         | 지급액       | 1인당 지급액 | 인원      | 지급액       | 1인당 지급액 | 인원      | 지급액       | 1인당 지급액 | 인원      | 지급액       | 1인당 지급액 | 인원      | 지급액       | 1인당 지급액 |
| 저술가            | 940100 | 75,851     | 630,907   | 8.3     | 75,072  | 656,784   | 8.7     | 77,083  | 683,762   | 8.9     | 82,051  | 735,122   | 9.0     | 81,905  | 773,241   | 9.4     |
| 화가관련           | 940200 | 16,354     | 288,458   | 17.6    | 17,291  | 318,833   | 18.4    | 16,680  | 319,885   | 19.2    | 16,904  | 315,874   | 18.7    | 19,687  | 360,282   | 18.3    |
| 작곡가            | 940301 | 14,020     | 143,050   | 10.2    | 15,366  | 154,158   | 10.0    | 16,918  | 182,403   | 10.8    | 18,657  | 202,949   | 10.9    | 21,290  | 251,548   | 11.8    |
| 배우             | 940302 | 16,346     | 632,108   | 38.7    | 19,618  | 589,993   | 30.1    | 19,001  | 596,840   | 31.4    | 18,456  | 647,308   | 35.1    | 17,977  | 583,417   | 32.5    |
| 모델             | 940303 | 8,454      | 83,916    | 9.9     | 8,285   | 79,846    | 9.6     | 8,495   | 88,925    | 10.5    | 9,525   | 90,855    | 9.5     | 9,206   | 88,551    | 9.6     |
| 가수             | 940304 | 4,799      | 368,238   | 76.7    | 6,322   | 338,105   | 53.5    | 6,437   | 390,367   | 60.6    | 8,440   | 340,167   | 40.3    | 8,068   | 261,747   | 32.4    |
| 성악가            | 940305 | 8,550      | 59,750    | 7.0     | 8,806   | 59,062    | 6.7     | 9,303   | 65,483    | 7.0     | 9,592   | 69,449    | 7.2     | 8,291   | 53,303    | 6.4     |
|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 940306 | (2019년 신설) |           |         |         |           |         |         |           |         | 4,874   | 20,322    | 4.2     | 33,065  | 308,387   | 9.3     |
| 연예보조           | 940500 | 67,089     | 695,289   | 10.4    | 67,562  | 661,817   | 9.8     | 66,863  | 711,629   | 10.6    | 65,630  | 752,295   | 11.5    | 56,493  | 646,677   | 11.4    |
| 자문/고문          | 940600 | 87,534     | 1,080,767 | 12.3    | 90,898  | 1,108,253 | 12.2    | 97,250  | 1,192,678 | 12.3    | 99,722  | 1,254,165 | 12.6    | 97,526  | 1,289,750 | 13.2    |
| 바둑기사           | 940901 | 393        | 10,811    | 27.5    | 419     | 11,618    | 27.7    | 420     | 11,067    | 26.4    | 558     | 8,994     | 16.1    | 493     | 10,245    | 20.8    |
| 꽃꽂이교사          | 940902 | 765        | 4,320     | 5.6     | 1,006   | 5,671     | 5.6     | 953     | 5,034     | 5.3     | 1,321   | 6,722     | 5.1     | 1,197   | 4,715     | 3.9     |
| 학원강사           | 940903 | 384,063    | 5,102,380 | 13.3    | 400,529 | 5,310,498 | 13.3    | 409,603 | 5,487,659 | 13.4    | 431,471 | 5,828,730 | 13.5    | 386,827 | 4,880,179 | 12.6    |
| 직업운동가          | 940904 | 39,125     | 860,796   | 22.0    | 43,386  | 988,835   | 22.8    | 47,284  | 1,051,045 | 22.2    | 51,490  | 1,153,504 | 22.4    | 43,339  | 1,007,080 | 23.2    |
| 봉사료수취자         | 940905 | 51,128     | 861,328   | 16.8    | 44,198  | 767,053   | 17.4    | 38,952  | 688,547   | 17.7    | 34,353  | 602,809   | 17.5    | 24,613  | 312,146   | 12.7    |
| 보험설계           | 940906 | 92,375     | 4,695,125 | 50.8    | 101,226 | 5,133,403 | 50.7    | 102,316 | 5,577,149 | 54.5    | 110,256 | 6,445,471 | 58.5    | 114,322 | 7,205,658 | 63.0    |

〈표 11-7〉의 계속

(단위: 명,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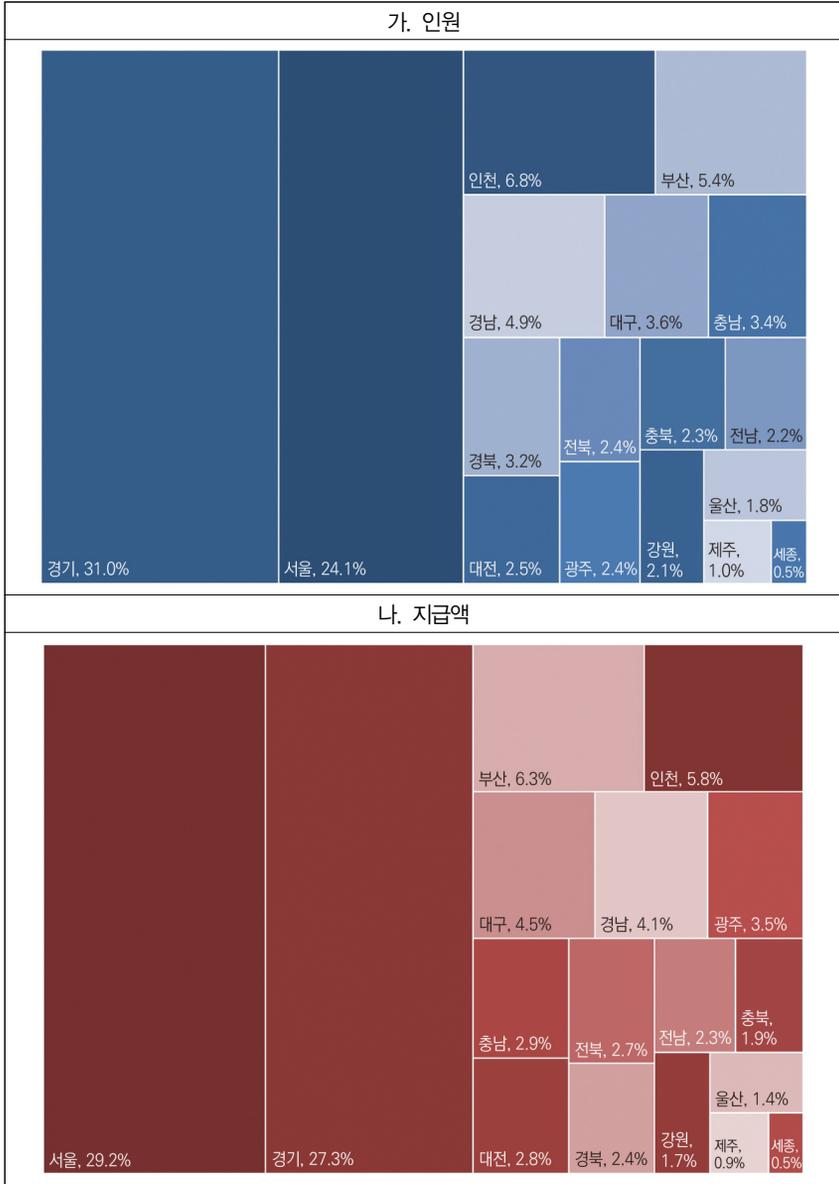
| 업종      | 업종 코드  | 2016년     |            |         | 2017년     |            |         | 2018년     |            |         | 2019년     |            |         | 2020년     |            |         |
|---------|--------|-----------|------------|---------|-----------|------------|---------|-----------|------------|---------|-----------|------------|---------|-----------|------------|---------|
|         |        | 인원        | 지급액        | 1인당 지급액 |
| 음료배달    | 940907 | 4,013     | 44,502     | 11.1    | 4,094     | 44,991     | 11.0    | 8,460     | 61,215     | 7.2     | 4,418     | 55,212     | 12.5    | 4,692     | 63,976     | 13.6    |
| 방판/외판   | 940908 | 259,366   | 3,473,224  | 13.4    | 243,520   | 3,539,461  | 14.5    | 239,645   | 3,565,753  | 14.9    | 248,616   | 3,622,654  | 14.6    | 320,282   | 3,649,732  | 11.4    |
| 기타 자영업  | 940909 | 1,734,651 | 18,134,349 | 10.5    | 2,192,801 | 23,459,499 | 10.7    | 2,647,339 | 28,076,803 | 10.6    | 3,152,394 | 33,243,422 | 10.5    | 3,449,875 | 36,254,409 | 10.5    |
| 다단계 판매  | 940910 | 1,190,433 | 1,549,553  | 1.3     | 1,095,454 | 1,478,806  | 1.3     | 1,083,424 | 1,547,408  | 1.4     | 1,018,486 | 1,511,202  | 1.5     | 980,267   | 1,481,428  | 1.5     |
| 기타 모집수당 | 940911 | 741,842   | 10,692,280 | 14.4    | 776,327   | 10,996,653 | 14.2    | 771,334   | 10,669,115 | 13.8    | 765,917   | 10,224,336 | 13.3    | 713,746   | 10,677,684 | 15.0    |
| 간병인     | 940912 | 41,380    | 430,709    | 10.4    | 45,210    | 508,429    | 11.2    | 51,706    | 609,357    | 11.8    | 54,832    | 696,068    | 12.7    | 52,356    | 733,899    | 14.0    |
| 대리운전    | 940913 | 54,680    | 135,813    | 2.5     | 55,974    | 150,044    | 2.7     | 67,824    | 176,399    | 2.6     | 82,100    | 224,510    | 2.7     | 79,052    | 217,905    | 2.8     |
| 캐디      | 940914 | 2,515     | 6,229      | 2.5     | 3,109     | 7,340      | 2.4     | 3,379     | 7,677      | 2.3     | 3,726     | 9,116      | 2.4     | 2,912     | 8,106      | 2.8     |
| 목욕관리사   | 940915 | 1,027     | 17,429     | 17.0    | 1,051     | 17,968     | 17.1    | 1,036     | 18,679     | 18.0    | 961       | 17,243     | 17.9    | 730       | 8,589      | 11.8    |
| 행사도우미   | 940916 | 141,285   | 470,394    | 3.3     | 156,853   | 513,882    | 3.3     | 156,630   | 525,722    | 3.4     | 150,241   | 532,955    | 3.5     | 99,621    | 398,159    | 4.0     |
| 심부름용역   | 940917 | 13,539    | 104,818    | 7.7     | 15,895    | 122,024    | 7.7     | 16,912    | 135,123    | 8.0     | 21,602    | 133,750    | 6.2     | 25,040    | 143,222    | 5.7     |
| 퀵서비스    | 940918 | 11,705    | 88,987     | 7.6     | 11,705    | 106,774    | 9.1     | 13,198    | 113,945    | 8.6     | 36,798    | 257,634    | 7.0     | 100,831   | 654,655    | 6.5     |
| 물품배달    | 940919 | 41,444    | 472,292    | 11.4    | 41,444    | 524,749    | 12.7    | 63,843    | 606,177    | 9.5     | 93,391    | 695,664    | 7.4     | 196,753   | 1,056,718  | 5.4     |
| 총계      |        | 5,104,726 | 51,137,822 | 10.0    | 5,543,421 | 57,654,549 | 10.4    | 6,042,288 | 63,165,846 | 10.5    | 6,596,782 | 69,698,502 | 10.6    | 6,950,456 | 73,385,408 | 10.6    |

주: 병의원(851101), 학습지방문강사(940920), 교육교구방문강사(940921), 대여제품 방문점검원(940922), 대출 모집인(940923), 신용카드회원 모집인(940924), 방과후강사(940925)는 표에서 생략됨

자료: 장혜영 의원실 보도자료(2022. 2. 8), <첨부 1> 재가공(원자료는 국세청 제공)

#### 42 • 비공식 취업소득의 추정과 조세·재정 정책함의

[그림 II-5]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지역별 원천징수 현황(2020년 귀속)



주: 전국 총인원은 7,023,057명, 전국 총지급액은 108,626,933백만원으로 집계됨  
 자료: 장혜영 의원실 보도자료(2022. 2. 8), <첨부 2> 재가공(원자료는 국세청 제공)

### 3) 신종업종 관련 쟁점

최근 플랫폼에 기반한 새로운 거래형태 내지 수익창출 모형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세무행정 차원의 대응 역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플랫폼에 기반한 경제활동이 기존의 그것과 가장 크게 차별화 되는 점은 누구나, 비교적 수월하게, ‘사업자’가 될 수 있는 환경 아래에 그것이 영위된다는 점이다. 가령 특별한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라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플랫폼에 업로드·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잠재적인 수익발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인데, 문제는 이러한 행위의 계속성·반복성 여부를 개인이 판단하고 그에 따라 세법상 지위에 부합되는 세무행정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현재까지 많은 모호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나라 과세관청인 국세청은 신종업종 관련 세무행정에 대한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는 방식 등으로 세무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중심으로 신종업종 세무행정의 현황 및 한계점 등에 대하여 간략히 논의하도록 한다.

#### 가) 신종업종 사업자 세법상 의무: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중심으로<sup>22)</sup>

국세청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체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유튜브(YouTube), 아프리카TV 등에 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하는 이들 중 일부가 1인 미디어 창작자로 분류되는 셈이다. 여기서 영상을 제작·공유하는 모든 사람이 아닌 일부만이 1인 미디어 창작자로 분류되는 이유는 1인 미

---

22) 이하 신종업종 사업자 세법상 의무 관련 내용은 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검색일자: 2022. 6. 26.)를 참고하여 정리·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참고로 해당 자료에는 1인 미디어 창작자뿐만 아니라 SNS마켓 사업자, 공유숙박 사업자 등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나, SNS마켓 혹은 공유숙박 사업자 등의 경우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까닭에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음 역시 밝혀두기로 한다.

어 관련 플랫폼 이용자 모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1인 미디어 관련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운데 ①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광고수익을 배분받는 경우, ②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경우, ③ 특정 기업 혹은 제품의 홍보와 관련된 대가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④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등<sup>23)</sup>에 해당될 때 1인 미디어 창작자로서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sup>24)</sup>

일시적·우발적이 아닌 계속적·반복적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로서 수입이 발생하면 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요구되는바, 이때 고용관계 형성 여부 및 물적 시설 보유 여부에 따라 면세·과세 사업자 여부가 결정된다(〈표 II-8〉 참조). 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고용이나 물적 시설의 구비·이용 없이 영상 콘텐츠를 생산·공급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시나리오 작가 혹은 영상 편집자 등을 직접 고용하거나 또는 별도의 전문적인 촬영장비 내지 방송시설 등을 보유·이용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면세사업자 혹은 과세사업자 분류 여부는 궁극적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법상 신고의무에 영향을 미치는데, 〈표 II-9〉는 면세사업자에게는 사업장현황 신고의무가, 과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부여됨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면세·과세 사업자 모두에게 종합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두 유형의 사업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하겠다.

23) 흔히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를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사업자라 지칭하는데,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을 나누는 경우" 역시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 유형으로서 적시하고 있다.

24) 물론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수입이 일시적·우발적이 아닌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함을 전제하고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표 II-8〉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면·과세 | 적용범위  |
|--------|---------------------|----------------|------|---|
| 940306 | 기타 자영업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면세   | -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br>-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예시: 유튜브, BJ, 크리에이터 등) |
| 921505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 과세   | -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자료: 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lid=7802>, 검색일자: 2022. 6. 26. 일부 수정

〈표 II-9〉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법상 신고의무

| 구분   | 사업장현황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
| 신고대상 |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 종합소득이 있는 자          |
| 과세기간 | 1. 1. ~ 12. 31.     | (1기) 1. 1. ~ 6. 30.<br>(2기) 7. 1. ~ 12. 31. | 1. 1. ~ 12. 31.     |
| 신고기간 | 다음 해 1. 1. ~ 2. 10. | (1기) 7. 1. ~ 7. 25.<br>(2기) 1. 1. ~ 1. 25.  | 다음 해 5. 1. ~ 5. 31. |

자료: 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자주 묻는 질문·답변」,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5595&bbsld=30632#none>, 검색일자: 2022. 6. 26. 일부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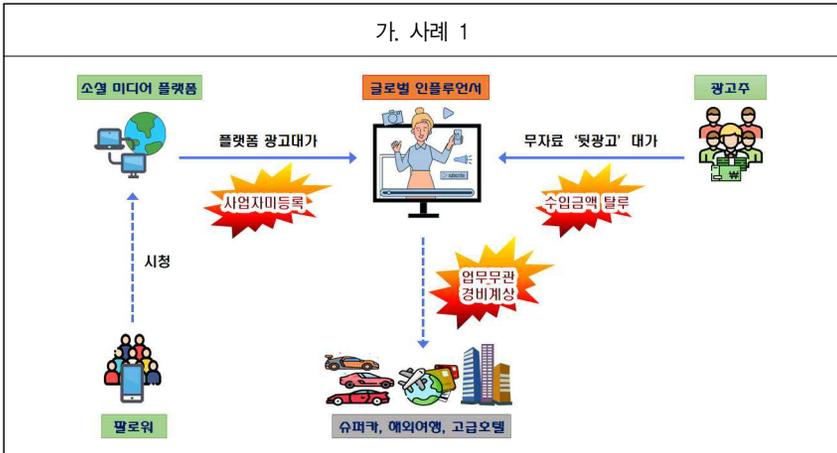
#### 나) 신종업종 사업자 탈루 사례

이상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중심으로 신종업종 사업자의 세법상 지위 및 의무 등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하였다. 그러나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940306) 업종코드가 2019년에 신설되었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듯, 현실에서 신종업종과 관련된 세무행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간주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플랫폼 운영사 소재지국 과세당국과의 공조 등을 통하여 국내외 플랫폼과 관련된 신종 탈세행위를 포착하여 그 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sup>25)</sup> 해당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그림 II-6)

25) 국세청 보도자료,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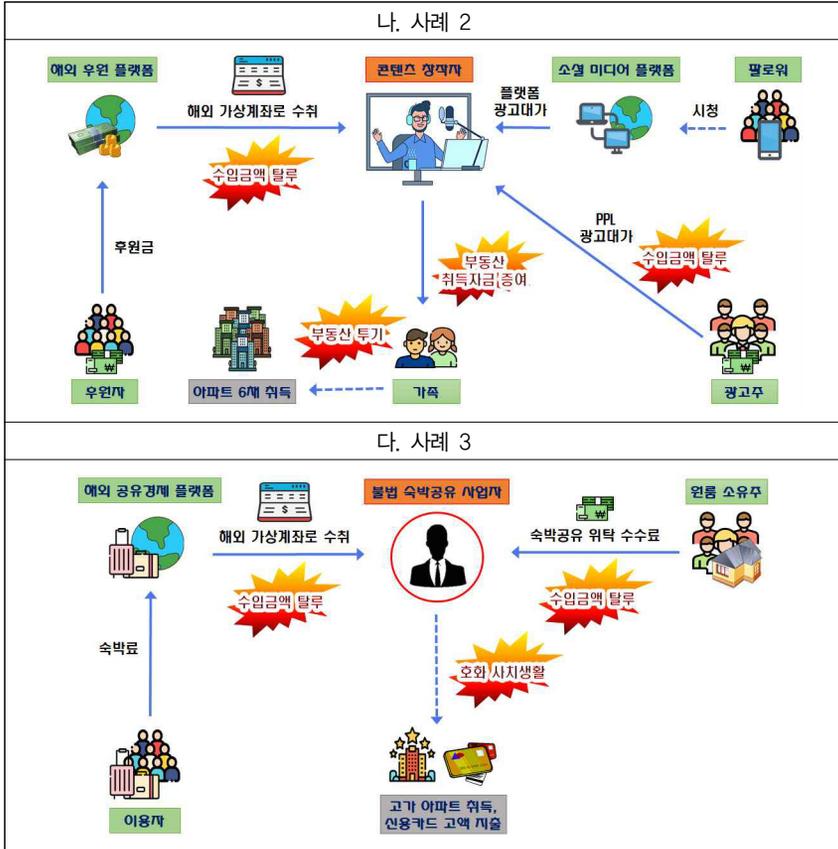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광고소득을 숨긴 경우(사례 1), 해외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대가)을 수취하고도 신고를 누락한 경우(사례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에 기반하여 숙박공유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고 숙박료를 해외 가상계좌로 수취하는 방식 등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사례 3) 등이 이번 과세당국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해외 플랫폼 및 가상계좌 등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거래가 소득과약 사각지대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 소득과약 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지속적인 관찰 및 단속을 넘어 국가 간 협조 등 근본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그림 II-6] 신종업종 사업자 탈루 사례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 2021. 10. 21.

[그림 11-6]의 계속



자료: 국세청 보도자료(2021. 10. 21.), pp. 7~9

## 라. 소결

이상에서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2022년 6월 현재 소득과약 동향을 짚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신속한 세법개정 등으로 사업주나 사업장제공자의 법적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소득과약 측면에서의 적시성은 그 이전과 비교해 한층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득과약 대상의 외연 확대 내지 소득과약의 정확성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근본적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하에서 현 소득과약 체계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가운데 본 절의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한다.

우선 인적용역 공급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주 등이 세무상 비용 입증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인적용역 공급자에 대한 소득과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단순경비율 내지 기준경비율을 이용하여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실제 지출비용에 대한 입증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일용근로자 등에게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 등에게 지급된 소득 정보가 과세관청에 보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상 용역제공대가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관련 정보 미제출을 허용해주고 있는데, 소득과약 체계의 완전성 측면에서 볼 때 향후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물론 현실에서 사업장제공자 등이 인적용역 사업자의 용역제공대가를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예외조문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현 소득과약 체계 내에서 원천징수 비대상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실시간) 소득과약이 사실상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그 틈을 메우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장기적인)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사업장제공자 등이 이용을 회피하면 해당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은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가령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등은 최종소비자에게 최초로 용역을 공급할 때에 한하여 플랫폼 등을 이용하고 그 이후의 (장기적인) 용역공급은 소비자와의 직접거래에 의지할 유인 및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인적용역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최종소비자에게 원천징수 의무 내지 비용처리 필요가 부재하기 때문에 발현되는 현상으로,<sup>26)</sup> 향후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화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

26) 이는 앞서 살펴본, 세무상 비용입증이 필요치 않는 사업주 등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3. 주요 분야 경제활동 현황

#### 가. 2021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sup>27)</sup>

2021년 하반기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설문조사(이하 조세연 설문조사(2021))를 수행한 바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인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최종 1,850명의 인적용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해당 조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경우에 한정하였으므로 이 절에 대해서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플랫폼노무제공자라고 지칭한다.

본고에서는 2021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플랫폼노무제공자 대상 조사자료에 기반하여 개인 및 가구 특징, 경제활동 상태, 정책수혜 및 사회보험 가입 상태, 납세의식 분야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본 설문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 11~12월에 실시되었으며, 짧은 기간 내 많은 플랫폼노무제공자 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서비스앤빌런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조사하였다.<sup>28)</sup>, <sup>29)</sup> 최종적으로 1,850명의 표본을 확보하였고 1순위 주된 업종이 '전세버스기사'에 해당하는 3명의 표본을 제외한 1,847명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업종 분야별로 배달 600명, 퀵 51명, 화물택배 111명, 대리운전 315명, 택시 17명, 바이럴마케팅 155명, 재능자문 432명, 돌봄 155명 등으로 집계되었다.<sup>30)</sup>

---

27) 본원에서는 여러 종류의 플랫폼 업종에 종사하는 설문조사를 2021년 하반기에 실시하였고 해당 결과를 김문정·김빛마로(2022)에 출판한 바 있다. 1,850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본 설문조사는 소득신고 측면의 문항을 담았다는 점에서 기존 플랫폼 설문조사와 차별성이 있으며, 본 기본과제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내용을 본고에도 게재하였음을 밝힌다.

28) 본 연구는 (주)서비스앤빌런즈의 어떠한 이해관계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해당 업체는 고객 대상으로 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만 수행하였음을 밝힌다.

29) 설문조사는 설문시점 기준 '지난 주'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응답자가 답변하도록 설계되었다.

30)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에서 바이럴(viral)은 '바이러스의', '감염된'이라는 뜻의 영어단어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여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입소문을 내게 하는 광고기법을 의미한다.

조세연 설문조사(2021)에서는 주요 업종 분야별로 다음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① 플랫폼노무제공자의 개인 및 가구의 특징, ② 플랫폼노무제공자의 과거 및 가상적인 경제활동 상태, ③ 플랫폼 생태계의 복잡성, ④ 플랫폼노무제공자의 수혜 정책 및 가입된 사회보험 범위, ⑤ 플랫폼노무제공자의 납세의식 및 납세협력비용 등이 그것이다.

조세연 설문조사(2021)에서는 주요 업종으로 배달, 퀵서비스, 화물운송·택배·이삿짐, 대리운전, 택시, 바이럴마케팅, 교육레슨·전문상담분야, 돌봄서비스·홈케어서비스·심부름 등 8가지 분야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주요 업종으로 여러 개의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데, 1순위라고 응답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였음을 밝힌다. 조세연 설문조사(2021)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업종구분(분류 2)을 제시하였으나, 플랫폼 간 유사성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업종구분(분류 1)을 재도출하였다. 본 절에서의 업종구분은 이러한 포괄적 정의에 따른 것이다.<sup>31)</sup>

먼저, 주요 업종별 플랫폼은 <표 II-10>과 같이 조사되었다.

<표 II-10> 업종별 플랫폼 예시

| 주요 업종                     | 플랫폼   |
|---------------------------|---|
| 배달<br>[배달/600]            |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쿠팡이츠, 배민커넥트, 생각대로, 부릉, 바로고, 공유다, 제트콜, 배달캠프, 모이콜, 나눔콜, 베테랑, 배달히어로, 명동, 달리고, 영웅배송 스파이더, 런투유, 비온드, 달리버리 등 |
| 퀵<br>[퀵/51]               | 카카오, 티맵, 로지, 통합콜, 손자, 인성, 고고엑스, 기타  |
| 화물운송·택배·이삿짐<br>[화물택비/111] | 쿠팡플러스, 비빅스, 운수대통, 센디, 통합콜, 카고매니저, 로지, 고고엑스, 다이렉트 콜, 인성, 짐카, 위메치, 한방이사,  |
| 대리운전<br>[대리운전/315]        | 로지, 손자, 아이콘, 앱대리, 인성, 카카오, 콜마너, 통합콜, 티맵 등   |

31) 플랫폼노무제공자가 복수의 (보다 세부적인) 업종에서 활동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표 II-10>에 제시된 포괄적 업종에 머무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10〉의 계속

| 주요 업종   | 플랫폼   |
|---|---|
| 택시<br>[택시/17]                                     | 카카오, 마카롱, 나비콜, 반반택시, 타다, 파파, 티머니 온다, 우티(UT) 택시, 리본택시 등  |
| 바이럴마케팅<br>[바이럴마케팅/166]                            | 레뷰, 링블, 셀럽리뷰, 파인애플, 미디언스, 재능아지트, 크몽, 아이보스, 숨고, 재능넷  |
| 교육레슨, 전문분야 자문<br>상담<br>[재능자문/482]                 | 프리모아, 라우드소싱, 크몽, 위시켓, 재능지트, 숨고, 재능넷, 오투잡, 캐스팅엔, 프리모아, 플리토, 와블, 바벨탑, 두둑, 클레슨, 모두의 음악, 탈잉, 파인드 강사, 강사닷컴, 재능마켓, 마인즈랩, 아하커넥츠, 로톡, 다방, 직방,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 |
| 돌봄서비스<br>홈케어서비스, 심부름<br>서비스, 가전청소 등<br>[돌봄가사/155] | 미소, 당신의 집사, 청소 연구소, 대리 주부, 홈마스터, 단디헬퍼, 이모넷, 홈스토리, 맘시터, 자란다, 케어닥, 좋은 케어, 시니어시터, 김집사, 도와줘, 워클, 써지니, 평동, 수고  |

주: [ ] 안의 내용은 업종에 대한 약어 및 표본 건수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1) 플랫폼노무제공자의 인구학적 특징

배달이나 퀵 종사자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어리고(각각의 평균 연령 35.62, 37.22세), 수도권 거주 확률이 특히 높았으며(72%), 고등교육 진학확률(31~48%)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표 II-11〉). 화물택배 종사자는 수도권 거주확률은 상대적으로 낮고(58%), 고등교육 진학확률과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바이럴마케팅과 재능자문 분야 종사자는 고등교육 진학확률이 타 업종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75~77%)에서는 유사하지만, 바이럴마케팅은 남성비율(22%)과 연령(33세)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럴마케팅이 고학력의 30대 여성 종사자가 많은 반면, 돌봄가사 분야는 40대 미취학 자녀가 존재하는 여성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 플랫폼노무제공자의 인구학적 특징

| 주된 업종      | 연령    | 남성<br>여부 | 고등교육<br>진학 여부 | 수도권<br>거주<br>여부 | 가구주<br>여부 | 배우자<br>존재<br>여부 | 미취학<br>자녀<br>존재 여부 | 가구<br>소득 |
|------------|-------|----------|---------------|-----------------|-----------|-----------------|--------------------|----------|
| 배달         | 35.62 | 0.75     | 0.48          | 0.72            | 0.57      | 0.38            | 0.89               | 4.59     |
| 퀵          | 37.22 | 0.75     | 0.31          | 0.75            | 0.67      | 0.41            | 0.90               | 4.08     |
| 화물택배       | 37.67 | 0.74     | 0.58          | 0.58            | 0.64      | 0.54            | 0.80               | 4.95     |
| 대리운전       | 41.76 | 0.96     | 0.54          | 0.61            | 0.82      | 0.54            | 0.85               | 4.37     |
| 택시         | 47.06 | 0.76     | 0.59          | 0.53            | 0.82      | 0.53            | 0.94               | 4.82     |
| 바이럴<br>마케팅 | 33.92 | 0.22     | 0.75          | 0.67            | 0.35      | 0.42            | 0.76               | 4.69     |
| 재능자문       | 41.53 | 0.47     | 0.77          | 0.70            | 0.62      | 0.52            | 0.89               | 4.91     |
| 돌봄가사       | 46.30 | 0.22     | 0.58          | 0.66            | 0.40      | 0.60            | 0.97               | 4.72     |

주: 가구소득은 가구소득의 유형변수(categorical variable)이며 단위는 아래와 같음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200만원 미만
3. 200만원~300만원 미만
4. 300만원~400만원 미만
5. 400만원~500만원 미만
6. 600만원~700만원 미만
7. 700만원~800만원 미만
8. 800만원~900만원 미만
9. 900만원~1000만원 미만
10. 1000만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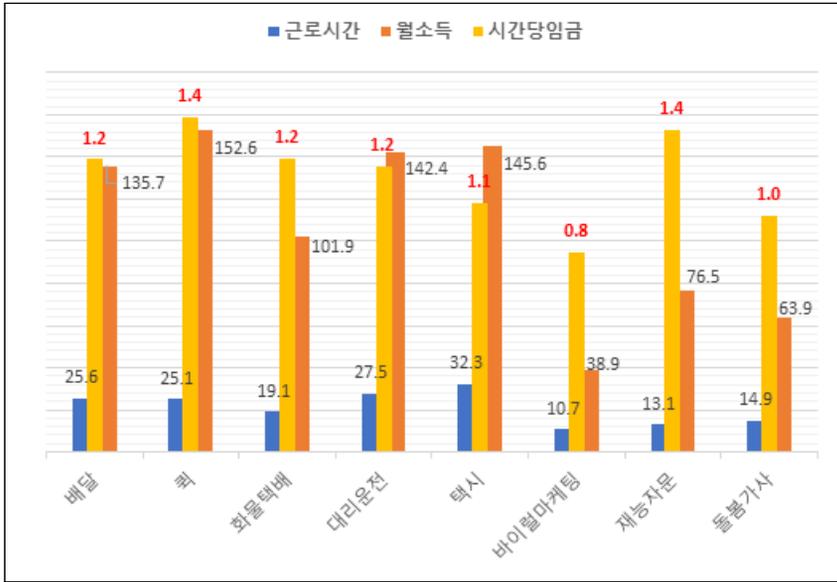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플랫폼노무제공자의 소득활동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모든 유형의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사했을 때, 주당 근로시간은 10.7~32.3시간이었고, 월소득은 38.9만~152.6만원, 시간당임금은 0.8만~1.4만원으로 업종별로 상당한 이질성을 보인다(그림 II-7).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배달, 퀵, 대리운전, 택시 업종의 소득이 다른 업종보다 높은 등 월소득은 근로시간에 대체로 비례하였다.

[그림 II-7] 업종별 근로시간, 월소득, 시간당임금 비교

(단위: 시간, 만원)



주: 첫번째 파란색 막대그래프는 주당 근로시간, 주황색 막대그래프는 월소득, 노란색 막대그래프는 시간당임금을 각각 나타냄. 시간당임금은 월소득을 주당 근로시간×4.3을 나누어 계산함

- 전체 설문조사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구직을 하였거나 경제활동을 수행한 플랫폼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본 그림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된 것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3) 플랫폼노무제공자의 전반적 경제활동 및 가상적인 취업상태

〈표 II-12〉에서는 플랫폼노무제공자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및 가상 일자리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패널 (1)에서의 ‘과거 일자리란 응답 시점 기준으로 ‘지난 주를 제외한’ 과거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일을 하였지만 현재에는 그만둔 일자리를 의미한다. 패널 (2)에서는 응답자가 지난 주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패널 (3)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일자리가 없었을 경우 응답자가 예상하는 응답자의 가상적인 취업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일자리 경험이 있는 경우, 임금근로자 일자리 경험률이 높았으며, 온라인 플랫폼 공급자로서 활동하지 않았다면 선택했을 일자리 역시 임금근

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I-12〉). 한편, 돌봄가사 분야 종사자(71%)와 화물택배 종사자(67%)의 경우 임금근로자로서 일자리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확률이 가장 높았고, 택시 분야 종사자가 35%로 해당 확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현재 임금 일자리(상용, 임시, 일용)를 보유하고 있을 확률도 현재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는 오프라인 일자리에 종사할 확률도 60%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II-12〉 이전 경제활동 및 가상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비율)

| 주된 업종  | 과거 일자리(1) |         |      | 임금 일자리 보유 여부 (2) | 온라인 플랫폼 일자리 부재 시 가상의 취업상태(3) |        |         |        |
|--------|-----------|---------|------|------------------|------------------------------|--------|---------|--------|
|        | 임금 근로자    | 자영업 종사자 | 없음   |                  | 비경활                          | 임금 근로자 | 자영업 종사자 | 무급 종사자 |
| 배달     | 0.54      | 0.07    | 0.40 | 0.71             | 0.20                         | 0.65   | 0.08    | 0.08   |
| 퀵      | 0.55      | 0.06    | 0.39 | 0.67             | 0.18                         | 0.63   | 0.10    | 0.10   |
| 화물택배   | 0.67      | 0.03    | 0.31 | 0.73             | 0.13                         | 0.68   | 0.08    | 0.11   |
| 대리운전   | 0.46      | 0.09    | 0.45 | 0.62             | 0.17                         | 0.71   | 0.05    | 0.08   |
| 택시     | 0.35      | 0.12    | 0.53 | 0.82             | 0.18                         | 0.65   | 0.18    | 0.00   |
| 바이럴마케팅 | 0.49      | 0.04    | 0.46 | 0.61             | 0.27                         | 0.63   | 0.04    | 0.06   |
| 채능자문   | 0.57      | 0.06    | 0.37 | 0.69             | 0.13                         | 0.70   | 0.10    | 0.07   |
| 돌봄가사   | 0.71      | 0.06    | 0.23 | 0.76             | 0.19                         | 0.70   | 0.06    | 0.04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4) 지원정책 및 사회보험 가입현황

여러 지원 정책 중에서 수혜율이 가장 높은 정책은 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나타났으며, 퀵이나 돌봄가사 분야를 제외했을 때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장 가입 확률이 40~50%로 높게 나타난다(〈표 II-13〉). 돌봄가사 분야 종사자는 근로장려세제(8%), 실업급여(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8%)으로 정책수혜율이 가장 낮았다. 퀵 분야 종사자는 사회보험 가입률(22~29%)이 가장 낮은 반면, 근로장려세제(24%)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7%) 수혜확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sup>32)</sup>

32) 한편, 산재보험의 가입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업종은 가입

〈표 II-13〉 재정정책 및 사회보험 가입상태

(단위: 비율)

| 주된 업종   | 정책 수혜 여부    |          |       |             |           | 사회보험 가입상태    |       |             |             |                |
|---------|-------------|----------|-------|-------------|-----------|--------------|-------|-------------|-------------|----------------|
|         | 기초 생활 보장 급여 | 근로 장려 세제 | 실업 급여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코로나 정책 금융 |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 고용 보험 | 건강 보험 직장 가입 | 국민 연금 직장 가입 | 산업 재해 보험 특고 가입 |
| 배달      | 0.04        | 0.18     | 0.21  | 0.08        | 0.07      | 0.14         | 0.52  | 0.44        | 0.40        | 0.17           |
| 퀵       | 0.06        | 0.24     | 0.20  | 0.06        | 0.08      | 0.27         | 0.29  | 0.24        | 0.22        | 0.10           |
| 화물택배    | 0.05        | 0.23     | 0.24  | 0.06        | 0.09      | 0.12         | 0.59  | 0.59        | 0.53        | 0.04           |
| 대리운전    | 0.06        | 0.25     | 0.20  | 0.07        | 0.10      | 0.23         | 0.48  | 0.46        | 0.43        | 0.02           |
| 택시      | 0.12        | 0.24     | 0.18  | 0.12        | 0.18      | 0.12         | 0.65  | 0.53        | 0.53        | 0.00           |
| 바이럴 마케팅 | 0.01        | 0.11     | 0.23  | 0.08        | 0.12      | 0.13         | 0.55  | 0.56        | 0.51        | 0.01           |
| 재능자문    | 0.03        | 0.14     | 0.25  | 0.08        | 0.07      | 0.06         | 0.52  | 0.49        | 0.43        | 0.02           |
| 돌봄가사    | 0.06        | 0.08     | 0.19  | 0.11        | 0.05      | 0.08         | 0.42  | 0.41        | 0.29        | 0.01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5) 플랫폼에 제출한 개인정보 수준 및 소득신고 현황

플랫폼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까지 플랫폼에 제출하거나 플랫폼이 노무제공자에게 소득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업종별로 대체로 50% 미만이다(〈표 II-14〉). 특히 퀵이나 재능자문 분야는 개인정보 제출 확률이 60% 미만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는 경우는 25% 미만으로 상당히 낮았다. 모든 업종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창출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평균 20% 미만으로 낮았고, 실제로 국세청에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 최대 48%(바이럴마케팅) 수준에 머물렀다(〈표 II-14〉). 단, 법인소속 택시기사는 근로소득자에 해당되는 등,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그 소득이 사업소득·기타소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외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외 업종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주가 부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14〉 플랫폼의 신원파악, 지급형태 유형 및 소득신고내용

(단위: 비율)

| 주된 업종   | 개인정보 제출 | 주민등록 번호 제출 | 플랫폼에 의한 지급방식 | 소득유형: 사업소득 | 국세청 신고내용 |       |       |        |
|---------|---------|------------|--------------|------------|----------|-------|-------|--------|
|         |         |            |              |            | 사업 소득    | 근로 소득 | 기타 소득 | 모름 무신고 |
| 배달      | 0.71    | 0.39       | 0.34         | 0.06       | 0.17     | 0.43  | 0.06  | 0.11   |
| 퀵       | 0.57    | 0.24       | 0.61         | 0.08       | 0.16     | 0.37  | 0.10  | 0.14   |
| 화물택배    | 0.75    | 0.34       | 0.16         | 0.10       | 0.21     | 0.36  | 0.07  | 0.13   |
| 대리운전    | 0.83    | 0.57       | 0.55         | 0.09       | 0.30     | 0.40  | 0.09  | 0.10   |
| 택시      | 0.65    | 0.47       | 0.24         | 0.12       | 0.18     | 0.41  | 0.06  | 0.12   |
| 바이럴 마케팅 | 0.80    | 0.29       | 0.07         | 0.08       | 0.34     | 0.35  | 0.14  | 0.09   |
| 재능자문    | 0.59    | 0.20       | 0.17         | 0.16       | 0.24     | 0.32  | 0.10  | 0.14   |
| 돌봄가사    | 0.71    | 0.34       | 0.27         | 0.05       | 0.10     | 0.30  | 0.10  | 0.23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6) 소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1)를 기반으로 플랫폼노무제공자의 인구학적 특징, 경제활동 상태, 정책수혜 및 사회안전망 현황, 납세의식 등의 측면으로 업종별 기초통계량을 검토한 결과 업종별로 다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과반수 이상의 플랫폼노무제공자가 임금일 자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과거 일자리나 (플랫폼 일자리가 없는 가상적 환경하에서의) 가상 일자리 역시 임금일 자리에 해당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돌봄 분야나 커서비스를 제외한 분야에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의 직장가입 확률이 대체로 40~60%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돌봄 분야, 커서비스는 사회안전망 직장가입확률은 낮는데, 이 경우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최하위 혹은 차상위 계층이거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법인택시 기사의 소득은 근로소득일 수 있으나, 대부분의 플랫폼 노무제공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응답자의 상당수가 이를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노무제공자가 오프라인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했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이행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플랫폼 경제는 N잡러(복수취업자)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같은 자격기반의 사회보험제도로는 이러한 취업형태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궁극적으로 소득기반 사회보험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노무제공자에 대한 정부지원 설계 시, 이들 노무제공자의 'N잡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플랫폼 기반 소득, 기존의 전형적인 일자리에서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일 업종에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며, 플랫폼별 이질성이 상당히 높아서 단일한 플랫폼 정책은 경제 비효율을 낳고 스타트업이나 창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 경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규모 집단별 실태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과세자료-사회보험 자료-기업연계 자료 등을 결합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체 생태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플랫폼노무제공자와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는 노무제공자 간,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간, 플랫폼노무제공자 간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플랫폼노무제공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플랫폼노무제공자의 소득과약 인프라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의 과제를 기존 복지성 제도의 문맥하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구의 소득수준은 사회보험, 근로장려세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성 제도와 정책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 Ⅲ. 분석 방법

---

### 1. 분석 방법 개관

본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의 비공식 취업소득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가장 근간이 되는 자료로서 2021년(2020년 귀속 소득분)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2021년 가금복 자료)를 활용한다. 조사 및 행정 자료가 결합되어 있고 특히 조세 및 재정 정책 수급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거나, 적어도 정책수급을 위한 자격요건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가구 및 가구원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2021년 가금복 자료가 공식 부문의 취업소득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가정한다.<sup>33)</sup> 이러한 가정하에서 2021년 가금복 자료에 기반하여 비공식 취업소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업이 수행되어야 한다.<sup>34)</sup> 공식 부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2021년 가금복 자료와 결합해야 한

---

33) 본 분석에서는 분석 방법에서 가금복 자료가 공식 부문의 소득이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사업소득의 경우, 조사자료를 행정자료보다 우선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정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보기 문항에 존재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자영업자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를 구축하였다. 그러므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주로 집계되는 사업소득이 일반 사업자의 사업소득일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로 인한 비공식-공식 부문 정의 문제가 시뮬레이션 등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4) 행정자료 자체도 측정오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금복 자료는 많은 행정자료가 결합이 되어 측정오차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세 행정자료의 수집, 기입 등의 과정이나 개인의 소득신고 과정에서 실제 공식 취업소득과 2021년 가금복 취업소득 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공식 취업소득 측정오차 문제라고 명명한다. 최근에는 조사자료뿐만 아니라 행정자료에도 측정오차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논문이 제시되고 있다(Jenkins and Avila, 2021).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측정오차에 대한 분포를 추정한 후, 공식부문 취업소득의 참값(true values)을 시뮬레이션하고자 한다. '공식 취업소득 측정오차 문제'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모두 제공하는 2017년의 가금복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 이 단계에서는 비공식 부문 취업소득 수집 문제, 비공식 부문 조사자료의 측정오차 문제, 공식-비공식 취업소득 결합 문제 등이 발생한다.

‘비공식 부문의 취업소득 수집문제’는 비공식 취업소득에 대해 직접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기획, 수행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단기간에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 패널조사 업체에 설문조사를 의뢰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에서는 △공식 부문의 취업소득, △가구 및 가구원의 특성, △비공식 부문의 취업소득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공식 부문의 취업소득과 가구 및 가구원의 특성의 경우, 향후 조사자료 간 결합을 용이하도록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사하게 설문문항을 작성한다. 비공식 취업소득의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 전반에 대해 논의하되,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는 3개 업종의 보다 세부적인 소득활동에 대하여 질의한다.

‘비공식 취업소득에 관한 조사자료의 측정오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일부를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한다. 대면조사를 통해 온라인 조사문항을 직접 문의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측정오차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온라인 설문 혹은 오프라인 설문에 응답한 플랫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한다.<sup>35)</sup> 동일한 응답자의 오프라인 면접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 간의 간극을 측정오차로 간주하여 비공식 취업소득의 측정오차 문제를 해결한다.

‘공식-비공식 취업소득 결합문제’는 행정자료의 측정오차가 보정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조사자료의 측정오차가 보정된 2022년 하반기 기준 비공식 취업소득 자료를 결합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때, 두 가지 도전적인 요인이 발생하는데 첫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최근에 입수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사에서 파악되는 소득이 2020년 귀속소득이기 때문에 2022년 8월 기준으로 파악된 비공식 취업소득과 기준시점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사실 해결하기 쉽지 않다. 2022년 상반기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가계동향조사 소득정보의 시간 추세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정보 시간 추세와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가계금융복지

---

35) 재정패널조사도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제공하는 응답가구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조사]의 2022년 소득정보를 2022년 상반기 시점의 소득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또 다시 측정오차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계열 기초통계량을 살펴서 시간에 따른 소득에 체계적인 변화가 발생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공식 취업소득에 관한 「가계금융복지조사」과 조사자료인 비공식 취업조사 자료를 결합해야 한다. 완전히 동일한 가구에 대하여 비공식 취업소득에 관한 추가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는 두 자료를 결합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별도로 설문조사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떠한 특징의 가구에 어떠한 비공식 취업소득을 연계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본고에서는 가구 및 가구원의 취업유형 등에 따라 가구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측정오차를 보정한) 비공식 취업소득의 수준을 시뮬레이션한 후, 이를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과 결합하고자 한다.

〈표 III-1〉 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공식·비공식 부문 가정

| 구분           |   | 공식 | 비공식 |
|--------------|---|----|-----|
| 근로소득         |   | 0  | -   |
| 인적용역<br>사업소득 | 3개 업종<br>배달·퀵 서비스<br>돌봄·가사·과외<br>온라인 콘텐츠 제작 | 0  | 0   |
|              | 기타 업종                                       | 0  | 0   |

자료: 저자 작성

## 2. 설문조사 설계 방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

비공식 부문 취업소득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가구 및 가구원 관련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의 취업소득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설문 대상은 18세 이상 64세 미만 개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자신이 속한 가구가 ① 단독가구, ② 가구주와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 ③ 가구주와 배

우자 및 30세 미만의 자녀(들)로 구성된 (2 + n)인 가구인 경우로 한정하였다.<sup>36)</sup> <sup>37)</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계금융복지조사」과 최대한 유사하게 문항을 구성하여 가구 및 가구원 관련 정보, 공식 부문 취업소득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였다.<sup>38)</sup> 최종적인 설문조사 인원은 2022년 8월 어떠한 형태로든 취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응답한 3,500명으로 선정하였으며, 개별 응답자들에게 배달·퀵 서비스, 돌봄·가사·과외, 온라인 콘텐츠 제작서비스 부문에서의 소득 발생 여부 및 소득 신고 여부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질의하였다. 설문조사로부터 얻어진 기초통계 등은 이후 제Ⅳ장에서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 3. 시뮬레이션 분석 절차 개관

이하 제Ⅳ장 및 제Ⅴ장에서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될 수 있다(〈표 Ⅲ-2〉 참조).

우선 2017년(조사연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제공되는 소득변수의 조사자료와 보완자료를 이용하여 설문조사상 인별 소득자료가 수집되었을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회귀식을 추정한다(1단계).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2017년부터 여러 정부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관련 변수를 보정하고 있다. 2017년 자료에 국한하여 통계청은 응답자가 직접 보고하는 소득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로 대체되는 소득 ‘보완자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2018년 이후부터는 행정자료로 교정한 보완자료만 제공된다. 이 때문에 최근 자료가 아닌 2017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조사자료와 보완자료 간의 간극을 추정한 것이다.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는 보완자료가 부분적

36) 가구 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속한 경우도 설문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37) 이하 시뮬레이션 분석은 개인(가구원) 단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개인은 (설문조사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단독가구, 가구주와 그 배우자로만 구성된 2인 가구, 가구주, 배우자, 그리고 30세 미만 자녀 n명으로 구성된 (2+n)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가구주와의 관계는 무관)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38) 설문조사 문항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으로만 활용되고 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은 전면적으로 행정자료로 대체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조사자료의 값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사자료를 우선으로 하고, 조사자료 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행정자료 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행정자료로 보완하고 있다.

〈표 III-2〉 시뮬레이션 분석 단계별 절차

| 단계  | 내용   |
|-----|--|
| 1단계 | - 조사(공식)소득과 보완(공식)소득 간 관계식 추정<br>- 2017년(조사연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자료 및 보완자료 이용                 |
| 2단계 | -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공식소득 정보 보완<br>- 1단계에서 추정된 회귀식 및 설문조사상 공식소득 조사자료 이용                              |
| 3단계 | - 비공식소득 발생 여부 및 그 규모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 추정<br>- 설문조사상 비공식소득 발생 여부 및 규모 관련 정보 활용                   |
| 4단계 | - 2021년(조사연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응답자들(가구원 단위)의 인별 비공식 소득 발생 여부 및 그 규모를 추정<br>- 3단계에서 추정된 회귀식 활용   |
| 5단계 | - 개인 혹은 가구 특성과 각 제도의 부담·수혜 정도를 연결하는 함수식 설계 내지 추정   |
| 6단계 | - 기존 공식소득에 추정된 비공식소득이 더해졌을 경우 예상되는 각 제도별 부담·수혜의 변화 양상을 개인별·가구별로 추정<br>- 5단계에서 설계·추정된 함수식을 이용 |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회귀식에는 가구원의 성별, 나이, 교육 정도, 종사상지위,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수도권 여부, 가구 유형 등이 설명변수로 포함되며, 인별 소득수준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 회귀식을 추정한다. 다음으로 1단계에서 추정된 회귀식과 설문조사상 공식소득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공식소득 정보를 보완한다(2단계).<sup>39)</sup>

보완된 공식소득 자료는 여타 인구학적 특성 등을 보여주는 변수들과 함께 비공식소득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추정을 위해 활용하도록 한다(3단계).

39) 2017년의 measurement error를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조금이나마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를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득으로 변환하였다.

이때 비공식소득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과 관련된 정보는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직접 확보하도록 하며, 1단계에서의 추정과 유사하게 인별 소득수준을 2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 추정을 시도한다. 다음으로 2021년(조사연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응답자들(가구원 단위)의 소득정보 및 인구학적 특성 변수 등을 3단계에서 추정된 회귀식에 대입하여 인별 비공식소득 발생 여부 및 그 규모를 추정한다(4단계).<sup>40)</sup>

이제 최종적으로 비공식소득이 새롭게 포착될 경우 각 개인 혹은 가구의 (준)조세 부담 정도 및 복지수혜 정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인 혹은 가구의 특성과 각 제도의 부담·수혜 정도를 연결하는 함수식을 설계 내지 추정하도록 한다(5단계). 그리고 설계·추정된 함수식을 이용하여 기존 공식소득에 추정된 비공식소득이 더해졌을 경우 발생하게 될 각 제도별 부담·수혜의 변화 양상을 개인별·가구별로 추정하도록 한다(6단계).

#### 4. 정책 및 제도의 모형 반영 방법

##### 가. 건강보험<sup>41)</sup>

기준상태에서의 건강보험 자격 판단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직장가입자는 임금근로자이면서 건강보험료 지출이 있는 경우이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① 특고 및 1인 자영자이면서 건강보험료 지출이 있는 경우, ② 무급가족종사자나 무직이지만 건강보험료 지출이 있는 경우, ③ 가구주가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지만 피부양자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된다. 한편, 피부양자나 지역세대원은 건강보험료가 0의 값을 갖는 경우로 정의된다. 본고에서 직장가입자가 부재한 가구의 가구원을 지칭하는 ‘지역세대원’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40) 모든 단계의 파라미터를 통합하여 추정하여 오차항 변수가 서로 연관성을 가질 수 있고, 모든 단계의 정보가 동시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이는 향후 구조모형(structural approach)으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한다.

41)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은 〈부표 2〉~〈부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않는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존재하는 가구에 적용되는 일종의 특혜 제도이다.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가 없으면 모든 세대원이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해당 금액이 합계금액으로 세대주에게 고지된다. 데이터상으로는 세대주가 아닌 지역세대원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모두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자격판단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단, 세대원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해석할 때 동일 가구에 속하는 본인이 아닌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료를 포괄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기준경제에서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경우를 분리하여 계산되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이 계산되는 현행 방법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양육수당을 제외한 비과세 소득을 12로 나눈 값을 보수월액으로 정의하였다. 소득월액은 직장가입자 중에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국한하여 계산되었다. 소득월액은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항목 중에 기타 재산소득의 합계는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공적연금소득은 30%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하여 12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되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시 보수월액의 건강보험료는 상한액 730.71만원, 하한액 1.95만원을 적용하였다. 소득월액의 건강보험료는 상한액 365.355만원이 적용되었고, 최종적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 기반 건강보험료와 소득월액 건강보험료의 합산금액으로 정의되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자산을 반영하고, 계산방식이 유형별로 구분되는 등 일정한 산식으로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가정하에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선형회귀모형을 가정하되 설명변수에는 교육수준, 고용형태,<sup>42)</sup> 연령 및 연령의 제곱항,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소득, 자산금액 각각의 로그값,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등의 변수를 고려하였다. 추정회귀식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시뮬레이션하여 계산하였다.

42) 고용형태 변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해 보고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2020년 기준 임의 시점 기준의 고용형태를 가정하여 사회보험료 자격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고용형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상의 고용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이상의 내용은 기준경제에서의 건강보험 가입상태와 건강보험료 수준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굴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제도상의 부과자격과 보험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 자격이 우선시되므로 자격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소득월액이 상승함에 따라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기존 3,4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sup>43)</sup>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이 부여되는 근로소득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격은 그대로이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에 따라 반영될 수 있다.<sup>44)</sup> 반면 기준경제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공식소득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고, 건강보험료는 0원에서 양(+)의 값으로 전환될 수 있다.<sup>45)</sup>

#### 나. 국민연금<sup>46)</sup>

국민연금의 가입자격 판단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먼저, 임금근로자이면서, 만 나이가 60세 미만, 연금기여금이 존재하는 경우는 직장가입자로 분류하였다. 지역가입자는 고용형태가 특고자 혹은 1인 자영자이고, 60세 미만 연금기여금이 존재하는 경우로 정의되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기여금이 존재하고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경우로 정의되었다. 전술한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미가입자로 정의되었다.

국민연금 기여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비과세소득 제외한 근로소득을 12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상으로 정의된 종합소득(비과

43) 이러한 건강보험료 인상분은 원래 데이터에서의 사업소득을 새로운 사업소득이 추가된 금액으로 변경하는 경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44) 직장가입자의 경우처럼, 이 경우에도 사업소득을 변경한 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계산된다.

45) 현재 시뮬레이션 모형에는 지역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변경 사항은 반영하지 못하였다.

46) 국민연금 기여금 산정방식은 <부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을 계산하여 12로 나누는 값으로 정의되었다.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31만원의 하한액과 486만원의 상한액을 고려하였다. 2단계로 국민연금 기여금 요율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4.5/100)%,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9/100)%가 적용된다고 가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기준경제에서의 국민연금 가입상태와 국민연금 기여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굴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상태와 기여금에는 다음과 같이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구자의 추가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자격상의 변화는 없고,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기여금 산출식에는 준소득월액 외의 다른 소득은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국민기여금상 변동사항이 없다. 기준경제에서 지역가입자였던 경우나, 임의계속사업자였던 경우에는 자격변동은 없고,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추가됨에 따라 국민연금 기여금이 늘어나게 된다. 60세 미만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추가되는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이 일어나고, 이때 새롭게 포착된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기준소득 금액으로 간주되어 국민연금 기여금이 결정될 것이다.<sup>47)</sup>

#### 다. 고용보험<sup>48)</sup>

2020년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가입 확률을 추정(Linear Prob. Model)하였다. 표준정규분포 임의변수를 발생시켜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이는 임금근로자로 판별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원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자로 분류되었다.<sup>49)</sup> 고용보험료의 경우

47) 시뮬레이션 모형에서는 기존 준조세연금기여금이 0원이고 시뮬레이션 모형상의 국민연금 가입 판단이 '미가입자'인 경우에, 이러한 자격변동이 반영되게 하였다.

48) 고용보험 기여금 산정방식은 <부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49) 종사자 규모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임의가입). 그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확률은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인구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보고된 근로소득에 기반하여 추정하였다. 고용보험료 납부금액과 추정금액이 크지 않으면 1단계에 의해서 미가입자라 하더라도 가입상태로 전환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기준경제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상태와 고용보험료 수준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데 고용보험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굴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상태에서는 변화가 없다. 이는 본고에서 검토하려는 부분이 2020년 귀속된 소득분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조세 재정 정책의 변경사항으로 2021년 7월부터 도입된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보험료도 변경되지 않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방식과 달리 고용보험 제도하에서는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 라. 소득세<sup>50)</sup>

먼저, 양육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간주하여 총급여액으로 정의하였다. 근로소득공제는 현재 제도를 반영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종합소득에서는 퇴직소득을 제외하였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산입하였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상으로 조사되는 ‘기타재산소득’도 포함하였다. 기타소득 분리과세 제도 등을 고려할 때, 위에서 정의한 종합소득 금액이 근로소득보다 충분히 높은 경우에만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금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500만원을 합산한 금액보다 낮으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분류하였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대상자로 분류하였다. 신고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한다고 가정하였다.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기 위

---

조사 기준 1%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7월 이후부터는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이 신규 도입되었으나 그 이전까지의 경우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한 가정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50) 부그림 기은 세액결정 과정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여 소득금액에 따라 두 개 집단으로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811만원보다 근로소득이 낮은 집단을 근로소득 1, 높은 집단을 근로소득 2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공제대상을 판별하기 위하여 가구주, 배우자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간주가구주’ 개념을 고려하였다 여기에서 간주가구주는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본인 당사자이며, 배우자가 존재하면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큰 종합소득금액을 갖고 있어 자녀가 존재할 때 자녀 관련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신고자를 의미한다.

부양자 대상, 경로, 장애 등 현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제도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근로기타연금공제, 근로특별공제, 조특공제 등은 국세통계연보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근로기타연금공제의 경우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무작위 추출 결과, 근로소득 1 유형은 12%의 확률로 평균 492만원 혜택을, 근로소득 2 유형은 3% 확률로 285만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신고유형에 따라 근로소득 혹은 종합소득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를 제한 후, 소득공제제도 총합과 2,500만원 중에서 낮은 값을 제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산출세액의 경우, 2020년 기준 산출세액 계산공식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산출세액 적용단계 이후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경우 국세통계연보 기반으로 단순 추정하되,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종합소득자는 전체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비중을 고려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 자녀세액공제는 제도대로 반영하되, 전술한 ‘간주가구주’에게만 적용된다고 가정하였다.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세액감면의 경우 국세통계연보에 기반하여 단순 추정하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였고 종합소득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액공제내용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전체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자체 추정하였다. 근로소득자에게 이러한 공제 및 감액금액을 산출할 때는 전술한 ‘근로소득 1’ 유형과 ‘근로소득 2’ 유형에 따른

이질성을 반영하였다.

종합소득신고자의 경우 산출세액 단계 이후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금액은 국세통계연보 집계자료에 기반하여 추정하였고, 남성과 여성,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분을 제한 값과 0 중에서 큰 값으로 정의하였다.

#### 마.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2020년 귀속연도 기준 제도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가구 내의 포착되는 소득 변동이 존재할 때 이를 반영하여 수급요건이나 수급액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게 된다. 사회보험료는 자격기반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소득세는 면세자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포착되어도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근로장려세제의 경우에는 수급요건과 수급액이 모두 이를 반영하게 될 수 있다. 단,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가구의 소득 계산 시 원천징수형 인적용역 사업소득만 반영되고, (소득지급자가 아닌 제3자인 사업장제공자에 의하여 소득이 신고되는) 용역제공자의 사업소득은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발굴된 사업소득이 일괄적으로 근로장려세제상 소득범위에 곧바로 포함된다고 가정하였고 이 때문에 근로장려세제 차원의 효과를 과대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 바.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확률을 계산하였다. 실제 관련 급여는 여러 유형이 존재하는데, 각 유형별 정보가 부재하여 수급액 총합(제공된 자료)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프로비트(Probit) 모형의 회귀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퇴직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의 로그값, 가구원수, 가구주 나이와 가구주 나이의 제곱항, 장애인가구 여부, 근로장려세제상의 가구유형 등을 가구주 데이터만

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된 회귀식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이를 다시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임의변수를 발생시켜 시뮬레이션 기반의 수급 여부 실현값을 계산하였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양수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OLS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이때 종속변수인 기초생활보장급여에는 로그값을 취하였다. 추정된 회귀식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이를 다시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임의변수를 발생시켜 시뮬레이션 기반의 수급액 실현값을 계산하였다. 이 실현값은 전술한, 시뮬레이션으로 인해 수급을 받는 가구에 한정해 적용되었다.

〈표 III-3〉 시뮬레이션의 제도 반영 방법

| 항목 구분 |          | 시뮬레이션 모형 반영 방법  | 비고  |
|-------|----------|---|---|
| 고용보험  | 현재 자격 판단 | 1)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가입확률 추정함(Linear Prob. Model), $N(0,1)$ 추가하여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를 임금근로자의 경우 적용함. 하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판단함<br>2) 근로소득 기반 고용보험료 추정하고, 그 간극이 크지 않은 경우(8만원), 1단계에 의해서 미가입이더라도 가입으로 전환함                               | 2020년 기준 (특고 고용보험 미반영)                        |
|       | 보험료      | 근로소득의 0.8% 부담한다고 가정함  |   |
| 국민연금  | 현재 자격 판단 | - 직장가입자: 임금근로자이면서, 만 15세가 60세 미만, 연금기여금이 존재하는 경우<br>- 지역가입자: 고용형태가 특고자 혹은 1인 자영자이고, 60세 미만 연금기여금 존재하는 경우<br>- 임의가입자: 연금기여금이 존재하고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경우<br>- 미가입자: 상기 세 가지 유형에 비례하는 경우   | 기여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33.40%<br>모형의 예상은 26.0%         |
|       | 보험료      | 1단계)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함<br>- 직장가입자인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비과세소득 제외한 근로소득을 12로 나눈 값으로 정의됨. 지역가입자인 경우, 연금종합소득을 계산하여 12로 나눈 값으로 정의됨<br>- 2020년 기준 소득월액 금액(31만원, 486만원)을 적용함(가입자 자격이 있는 경우에 적용함)<br>2단계) 요율을 적용함. 직장가입자는 4.5/100%, 사업장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는 9/100%를 부과함 | 연금 종합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양육소득을 제외하였고 사업소득을 합산한 값으로 정의됨 |

〈표 III-3〉의 계속

| 항목 구분                 | 시뮬레이션 모형 반영 방법   | 비고  |
|-----------------------|--|---|
| 현재<br>자격<br>판단        | - 직장가입자: 임금근로자이면서 건강보험료 지출이 있는 경우<br>- 지역가입자: ① 특고 및 1인 자영자이면서 건강보험료 지출이 있는 경우, ② 무급가족종사자나 무직이지만 건강보험료 지출이 있는 경우, ③ 가구주가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지만, 피부양자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br>- 피부양자: 가구주 직장가입자자격이 있고,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임금근로자의 85.48%가 직장가입자 특고 1인 자영자의 85.71%가 지역가입자임                                      |
| 건강보험<br><br>금액        | <직장가입자><br>1단계)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을 계산함<br>보수월액: 직장인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을 12로 나눈 값으로 정의함<br>소득월액: 직장인의 경우 사업, 금융재산, 임대재산, 기타재산소득의 합산액은 100% 반영, 공적연금소득은 30% 반영하였음<br>2단계) 소득을 이용하여 적용함<br><지역가입자><br>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된 개인 및 가구의 특징 변수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간의 관계식을 적용함   |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 기준 조건 적용할 필요가 있음   |
| 소득<br>정의              | 1) 먼저, 양육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간주하여 총급여액으로 정의하였음<br>2) 근로소득공제는 현재 제도를 반영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함<br>3) 종합소득에서는 퇴직소득을 제외하였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산입하였음.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상으로 조사되는 ‘기타재산소득’도 포함함  | 연금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사적연금 정보 부재로 인하여 본고에서는 연금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 소득세<br><br>신고유형<br>판단 | 1) 기타소득 분리과세 제도 등을 고려할 때, 위에서 정의한 종합소득금액이 근로소득보다 충분히 높은 경우에만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였음<br>구체적으로 종합소득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500만원을 합산한 금액보다 낮으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로 분류하였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대상자로 분류함<br>2) 신고금액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한다고 가정하였음<br>3)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에 따라 두 개 집단으로 고려하였음. 811만원보다 근로소득이 낮은 집단을 근로소득 1, 높은 집단을 근로소득 2 집단으로 구분함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보고된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이 아닌 비용이 이미 고려된 ‘소득’ 금액으로 간주되어, 이에 경비를 적용과정을 추가로 거치지 않았음 |

〈표 III-3〉의 계속

| 항목 구분                    | 시뮬레이션 모형 반영 방법  | 비고 |
|--------------------------|---|----|
| 공제 대상 판별                 | 1) 공제대상을 판별하기 위하여 가구주, 배우자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간주가구주' 개념을 고려함. 여기에서 간주가구주는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본인 당사자이며, 배우자가 존재하면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큰 종합소득금액을 갖고 있어 자녀가 존재할 때 자녀 관련 공제혜택을 받게 되는 신고자를 의미함<br>2) 부양자 대상, 경로, 장애 등 현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제도를 그대로 반영하였음 |    |
| 연금, 특별, 조특공제             | 근로기타연금공제, 근로특별공제, 조특공제 등은 국세통계연보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적용하였음<br>예를 들어, 근로기타연금공제의 경우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무차위 추출 결과, 근로소득 1 유형은 12%의 확률로 평균 492만원 혜택을, 근로소득 2 유형은 3% 확률로 285만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하였음   |    |
| 과세 표준                    |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신고유형에 따라 근로소득 혹은 종합소득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를 제한 후, 소득공제제도 총합과 2,500만원 중에서 낮은 값을 제한 값으로 정의하였음  |    |
| 소득세 산출세액                 | 현재 산출세액 계산공식을 그대로 반영함   |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국세통계연보 기반으로 단순 추정하되,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 산출세액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고, 종합소득자는 전체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비중을 고려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함   |    |
| 자녀세액 공제                  | 자녀세액공제는 제도대로 반영하되, 전술한 '간주가구주'에게만 적용된다고 가정함   |    |
|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 공제, 세액감면 | 국세통계연보에 기반하여 단순 추정하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였고 종합소득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액공제 내용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전체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자체 추정하였음. 한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할 때 전술한 '근로소득 1' 유형과 '근로소득 2' 유형을 구분하였음  |    |
| 종합소득 세액감면                | 국세통계연보 집계자료에 기반하여 추정하였고, 남성과 여성,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하였음   |    |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분을 제한 값과 0 중에서 큰 값으로 정의함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추정 시, 종합소득신고자와 근로소득 신고자를 구분하였음)  |    |

〈표 III-3〉의 계속

| 항목 구분        |      | 시뮬레이션 모형 반영 방법  | 비고                          |
|--------------|------|---|-----------------------------|
| 근로장려<br>세제   | 수급판단 | 제도 그대로 반영   | 2020년<br>귀속연도 관련<br>제도를 반영함 |
|              | 수급액  | 제도 그대로 반영   |                             |
| 기초생활<br>보장급여 | 수급판단 | 1)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생활보장<br>급여 수급확률을 계산함. 실제 관련 급여는 여러 유<br>형이 존재하는데, 각 유형별 정보가 부재하여 수급<br>액 총합(제공된 자료)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함<br>프로빗(Probit) 회귀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br>용소득, 임대소득, 퇴직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의<br>로그값, 가구원수, 가구주 나이와 가구주 나이의 제<br>곱항, 장애인가구 여부, 근로장려세제상의 가구유형<br>등을 가구주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음<br>2) 추정된 회귀식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이를 다시<br>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임의변수를 발생시켜 시뮬<br>레이션 기반의 수급 여부 실현값을 계산하였음 |                             |
|              | 수급액  | 1)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양수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위<br>와 동일한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OLS 회귀식을 추정<br>하였음. 이때 종속변수인 기초생활보장급여에는 로<br>그값을 취하였음<br>2) 추정된 회귀식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이를 다시<br>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임의변수를 발생시켜 시뮬<br>레이션 기반의 수급액 실현값을 계산하였음. 이 실<br>현값은 전술한, 시뮬레이션으로 인해 수급을 받는<br>가구에 한정해 적용됨  |                             |

자료: 저자 작성

---

## IV. 분석 자료

---

### 1.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본 연구에서는 2017년 및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에 이용한다.<sup>51)</sup> 「가계금융복지조사」은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과 관련된 항목들을 매우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매년 공동으로 전국 20,000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설문조사이다. 2017년 이후 공개되는 자료는 설문조사의 내용을 행정 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한 것인데, 2017년 이전과 이후의 연속성을 위하여 2017년에는 조사자료와 보완자료 모두를 공개·제공하고 있다. 일반에게 특별한 제약 없이 공개되는 자료에는 표본가구 및 그 가구원들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각 소득 및 지출의 세분화된 항목들은 누락되어 있다. 이 세부정보들은 승인된 기관 및 개인에 한정하여 제공되는데, 본 연구는 한국통계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인가용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는 조사자료와 보완자료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데, 양자의 차이는 <표 IV-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에서 각 조사자료에 대응되는 보완자료의 통계량은 음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근로·사업·재산 소득, 공적 이전소득 모두 조사자료 평균보다 보완자료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소비지출 항목 중 세금의 경우에도 조사자료 평균보다 보완자료 평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공적연금·사회보험료 지출의 경우에는 양자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

---

51) 2017년과 2021년은 조사가 수행된 연도에 해당되며, 각각 2016년과 2020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된다.<sup>52)</sup>

이하 제3절에서 논의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비공식 소득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다. 이때 두 자료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변수 구성 등의 측면에서 통일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설문조사 설계 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설계 방식을 참조하는 한편,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이용 시에는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 조건과 일치하는 관측치만을 활용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가구주 및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 가구주 및 배우자와 30세 미만 자녀(들)로만 구성된 (2+n)인 가구로 한정하도록 하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포함된 가구 역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표 IV-1〉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초통계

(단위: 백만원)

| 항목     |                      | 평균    | 표준 편차 | 최솟값 | 25% | 50% | 75% | 최댓값 |
|--------|----------------------|-------|-------|-----|-----|-----|-----|-----|
| 지역     | 수도권                  | 0,344 |       |     |     |     |     |     |
|        | 비수도권                 | 0,657 |       |     |     |     |     |     |
| 성별     | 남성                   | 0,755 |       |     |     |     |     |     |
|        | 여성                   | 0,245 |       |     |     |     |     |     |
| 교육 정도  | 초등학교 졸업              | 0,192 |       |     |     |     |     |     |
|        | 중학교 졸업               | 0,105 |       |     |     |     |     |     |
|        | 고등학교 졸업              | 0,330 |       |     |     |     |     |     |
|        | 대학졸업 이상              | 0,373 |       |     |     |     |     |     |
| 종사상 지위 | 상용근로자                | 0,395 |       |     |     |     |     |     |
|        | 임시·일용근로자             | 0,123 |       |     |     |     |     |     |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0,051 |       |     |     |     |     |     |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0,181 |       |     |     |     |     |     |
|        | 무급가족종사자              | 0,000 |       |     |     |     |     |     |
|        | 기타 종사자 <sup>1)</sup> | 0,011 |       |     |     |     |     |     |
|        | 기타 <sup>2)</sup>     | 0,238 |       |     |     |     |     |     |

52) 부록에서는 조사자료와 보완자료 간 차이를 보다 다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독자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표 IV-1〉의 계속

(단위: 백만원)

| 항목                 |                          | 평균     | 표준<br>편차 | 최솟값  | 25%   | 50%    | 75%    | 최댓값       |        |
|--------------------|--------------------------|--------|----------|------|-------|--------|--------|-----------|--------|
| 혼인<br>상태           | 미혼                       | 0.087  |          |      |       |        |        |           |        |
|                    | 배우자 있음                   | 0.674  |          |      |       |        |        |           |        |
|                    | 사별                       | 0.140  |          |      |       |        |        |           |        |
|                    | 이혼                       | 0.100  |          |      |       |        |        |           |        |
| 가구원수               |                          | 2,677  | 1,281    | 1    | 2     | 3      | 4      | 10        |        |
| 만 나이               |                          | 55.21  | 14.90    | 18   | 44    | 55     | 66     | 106       |        |
| 자산                 | 금융자산                     | 91.74  | 179.28   | 0.00 | 11.95 | 42.69  | 104.13 | 8,080.00  |        |
|                    | 실물자산                     | 285.35 | 562.55   | 0.00 | 12.00 | 150.00 | 342.40 | 23,100.00 |        |
| 부채                 | 금융부채                     | 47.63  | 159.78   | 0.00 | 0.00  | 0.90   | 50.00  | 8,390.00  |        |
|                    | 임대보증금                    | 18.64  | 94.31    | 0.00 | 0.00  | 0.00   | 0.00   | 4,700.00  |        |
| 경상<br>소득           | 근로소득 <sup>3)</sup>       | 29.91  | 37.13    | 0.00 | 0.00  | 19.20  | 47.00  | 739.00    |        |
|                    |                          | 32.12  | 43.04    | 0.00 | 0.00  | 18.85  | 48.50  | 1,595.07  |        |
|                    | 사업소득 <sup>3)</sup>       | 11.17  | 31.02    | 0.00 | 0.00  | 0.00   | 8.00   | 1,000.00  |        |
|                    |                          | 11.86  | 33.67    | 0.00 | 0.00  | 0.00   | 10.00  | 1,433.83  |        |
|                    | 재산소득 <sup>3)</sup>       | 2.28   | 11.83    | 0.00 | 0.00  | 0.00   | 0.02   | 500.00    |        |
|                    |                          | 3.78   | 17.38    | 0.00 | 0.02  | 0.30   | 2.04   | 716.19    |        |
|                    | 공적 이전소득 <sup>3)</sup>    | 3.31   | 7.00     | 0.00 | 0.00  | 0.00   | 3.90   | 88.80     |        |
|                    |                          | 3.65   | 7.12     | 0.00 | 0.00  | 0.92   | 4.45   | 85.64     |        |
| 사적 이전소득            |                          | 0.89   | 2.86     | 0.00 | 0.00  | 0.00   | 0.10   | 66.00     |        |
| 비소비<br>지출          | 세금 <sup>3)</sup>         | 2.21   | 6.24     | 0.00 | 0.16  | 0.69   | 2.12   | 305.61    |        |
|                    |                          | 3.06   | 14.90    | 0.00 | 0.16  | 0.63   | 1.99   | 790.48    |        |
|                    | 공적연금·사회보험료 <sup>3)</sup> | 2.84   | 2.98     | 0.00 | 0.26  | 2.14   | 4.42   | 36.96     |        |
|                    |                          | 2.83   | 3.12     | 0.00 | 0.34  | 2.04   | 4.32   | 53.95     |        |
|                    | 가구 간 이전지출                |        | 1.03     | 2.68 | 0.00  | 0.00   | 0.00   | 1.00      | 60.00  |
|                    |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        | 0.74     | 1.81 | 0.00  | 0.00   | 0.00   | 0.80      | 80.30  |
|                    | 연간지급이자                   |        | 1.60     | 4.89 | 0.00  | 0.00   | 0.00   | 1.68      | 200.00 |
| 소비지출 <sup>3)</sup> |                          | 23.15  | 16.50    | 0.00 | 11.20 | 19.50  | 31.00  | 208.60    |        |

주: 1) 실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2) 무직자, 가사, 학생 등  
 3) 음영은 조사자료에 대응되는 보완자료에 해당  
 자료: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마스터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용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와 전년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를 조정하고자 2019년, 2020년,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관련 내용은 <표 IV-2>를 참고할 수 있다.

<표 IV-2>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변수의 조사시점 개관

| 발표시점<br>조사<br>시점<br>변수 | 타깃<br>시점            | 자료<br>없거나<br>부정확 | 2019년<br>「가계금융복지조사」 |             | 2020년도<br>「가계금융복지조사」 |             | 2021년도<br>「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                  | 일반자산<br>총자산<br>지위   | 소득<br>지출    | 일반자산<br>총자산<br>지위    | 소득<br>지출    | 일반자산<br>총자산<br>지위    | 소득<br>지출    |
|                        |                     |                  | 2019년<br>3월 31일     | 2018년<br>연간 | 2020년<br>3월 31일      | 2019년<br>연간 | 2021년<br>3월31일       | 2020년<br>연간 |
| 가구정보 일반                | 2020년               |                  |                     |             | ○                    |             |                      |             |
| 총자산지위                  | 2020년               |                  |                     |             | ○                    |             |                      |             |
| 소득                     | 2020년               |                  |                     |             |                      |             |                      | ○           |
| 자산                     | 2019년 <sup>1)</sup> |                  | ○                   |             |                      |             |                      |             |
|                        | 2020년 <sup>2)</sup> |                  |                     |             | ○                    |             |                      |             |
| 소득세                    | 2021년               | ○                |                     |             |                      |             |                      |             |
| 사회보험료                  | 2020년               |                  |                     |             |                      |             |                      | ○           |
| 근로장려세제                 | 2021년 <sup>3)</sup> | ○                |                     |             |                      |             |                      | △           |
| 기초생보                   | 2020년               |                  |                     |             |                      |             |                      | ○           |
| 고용보험                   | 2020년               |                  |                     |             |                      |             |                      | △           |

주: 1) 건강보험료의 경우 당해 연도 자산금액을 활용하지 않는데, 본고에서는 전년도 자산금액을 활용한다고 가정함(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자료와 재산과표자료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아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음. 2020년 1~10월까지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019년 6월 1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과표자료에 기준한 것이므로 이러한 가정이 타당하고 할 수 있음)

2)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실시간으로 자격조건을 검토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 자산이 필요함. 근로장려세제의 경우는 2020년 소득분에 대하여 심사를 할 때 2020년도 자산금액이 필요함

3) 2020년 귀속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지급액을 계산하고자 하는데, 2019년 이후부터 반기 지급제로 인하여 소득장려세제는 2020년 귀속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수급액 정보는 2020년과 2021년에 나누어 수집됨

자료: 저자 작성

〈표 IV-3〉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 시점별 수집정보

| 시점 구분   | 변수 내용   |
|---|---|
| 당해 연도 기준 제공 정보<br>(2021년 3월 31일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부동산 등 실물자산, 금융자산, 자산운용</li> <li>• 부채: 금융부채,</li> <li>• 일반사항: 가구원, 교육, 동거 여부, 혼인상태, 종사상지위</li> </ul>                          |
| 전년도 기준 제공 정보<br>(2020년 1월 1일~<br>2020년 12월 31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가구 간 이전소득, 비영리 단체 이전소득, 수당, 지원금 등</li> <li>• 지출: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유형별 지출</li> </ul> |

자료: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 기초통계량

경제활동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는 2022년 10월 초 수행되었다. 설문은 온라인설문조사 전문업체(엠브레인)에 의뢰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인원은 3,500명이며, 이 중에서 5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오프라인 설문조사도 추가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sup>53)</sup> 「가계금융복지조사」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모집단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도 전체를 모집단으로 상정하고자 하나,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징으로 인하여 고령자층은 상대적으로 엠브레인 온라인 패널조사에 포함될 확률도 낮고, 설문조사에 자발적으로 응답할 확률도 낮다.

제Ⅲ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문조사 대상자는 18세에서 65세 미만으로 한정하였고, 가구주가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는 제외하였다. 가구 유형으로는 단독가구, 가구주 + 배우자 가구, 가구주 + 배우자 + 30세 미만 자녀 가구를 고려하였다. 이와 같이 가구형태에 한정을 가한 이유는 가구 내 공식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인원을 최대한 줄이고자 했기 때문이다.<sup>54)</sup> 또한 모

53) 이러한 오프라인 조사는 비공식 취업소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의 측정오차를 보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4) 현재 연구진이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에 활용한 자료는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Public Use 자료인데, 이 자료에서는 개인단위별 사회보험 가입 및 소득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뮬레이션 수행 전에 이를 추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추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인원을 최대한 줄이고자 한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연구진이 시뮬레이션을 위해 활용하고자 하

든 가구 유형을 포함하는 경우 설문조사 규모를 더 늘려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므로 적절한 선에서 설문조사 대상 가구를 한정하는 것 역시 필요했다. 한편 설문 결과 실질 비공식소득 금액이 월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차 분석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혀둔다.<sup>55)</sup>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IV-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응답자 중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66.8%로, 배우자(25.5%) 혹은 30세 미만 자녀(7.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연령대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60~64세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10.0%)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의 경우 응답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응답자 중 가구주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음을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교육수준별로는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의 비중이 53.6%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자(20.2%)가 그 뒤를 이었다.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는 경기·인천 거주자의 비중(34.3%)이 가장 높으나, 비수도권 거주자의 비중도 50%에 육박함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는 MATLAB이 통계청 원격컴퓨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하지만, 통계청 원격컴퓨터에서는 R을 제공하기 때문에 향후 R로 프로그래밍을 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55) 즉, 연간 실질 비공식소득 금액 3,000만원 초과자 4명을 제외한 3,49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IV-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 응답자 분포: 인구학적 특성  
(단위: %)

| 구분            | 전체 표본 | 단독가구  | 가구주 + 배우자<br>가구 | 가구주 + 배우자<br>+ 30세 미만<br>자녀 |
|---------------|-------|-------|-----------------|-----------------------------|
| 가. 가구주와의 관계   |       |       |                 |                             |
| 가구주           | 66.8  | 100.0 | 56.7            | 51.6                        |
| 배우자           | 25.5  | -     | 43.3            | 33.0                        |
| 30세 미만 자녀     | 7.7   | -     | -               | 15.5                        |
| 나. 연령대        |       |       |                 |                             |
| 18~29세        | 20.3  | 34.5  | 9.9             | 16.4                        |
| 30~39세        | 20.0  | 27.5  | 26.1            | 13.2                        |
| 40~49세        | 23.4  | 18.8  | 16.6            | 28.9                        |
| 50~59세        | 26.2  | 13.7  | 21.8            | 35.4                        |
| 60~64세        | 10.0  | 5.5   | 25.6            | 6.1                         |
| 다. 성별         |       |       |                 |                             |
| 남성            | 51.2  | 51.0  | 49.0            | 52.3                        |
| 여성            | 48.8  | 49.0  | 51.0            | 47.7                        |
| 라. 교육수준       |       |       |                 |                             |
| 고등학교 졸업 미만    | 3.2   | 3.0   | 4.0             | 3.0                         |
| 고등학교 졸업       | 20.2  | 18.8  | 22.3            | 20.1                        |
| 대학(3년제 이하) 졸업 | 16.5  | 17.4  | 16.9            | 15.8                        |
| 대학(4년제 이상) 졸업 | 53.6  | 55.1  | 49.7            | 54.4                        |
| 대학원 이상 졸업     | 6.5   | 5.7   | 7.2             | 6.7                         |
| 마. 거주 지역      |       |       |                 |                             |
| 서울            | 19.3  | 24.6  | 17.4            | 16.9                        |
| 경기 인천         | 34.3  | 29.2  | 35.9            | 36.5                        |
| 비수도권-광역시      | 22.4  | 21.9  | 22.3            | 22.8                        |
| 비수도권-광역시도     | 24.0  | 24.3  | 24.4            | 23.7                        |

주: 연간 실질 비공식소득 금액 3,000만원 초과자는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 V. 분석 결과

---

### 1. 조사자료-행정자료 관계 추정 결과

#### 가. 과소보고와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성

과소보고<sup>56)</sup> 여부와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명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설정하고 추정을 시도한 결과는 <표 V-1>에 제시되어 있다. 각 소득 또는 지출 항목별로 과소보고 여부와 관련 있는 변수들의 조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가구원수, 금융·실물자산 등은 대체로 모든 항목들의 과소보고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프로빗 모형 추정과 더불어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random forest algorithm)을 활용하여 과소보고 여부 예측을 위한 변수별 중요도 점수를 계산한 결과는 [부그림 6]에 도해되어 있다. 변수별 중요도 점수 계산 결과는 대체로 <표 V-1>의 결과와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하에서 조사소득과 보완소득 간 관계 추정 시 해당 분석 결과들을 참고하여 모형에 포함시킬 변수들을 선별하도록 한다.

#### 나. 보완소득과 조사소득 간 관계식 추정 결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에 의해서 조사된 소득금액은 2022년 기준으로 개인이 보고하는 조사자료(survey data)이다. 이러한 조사자료에 기반한 소득금액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조사자료에 비하

---

56) 과소보고는 “조사자료<보완자료”인 경우, 과대보고는 “조사자료 >보완자료”인 경우를 각각 의미한다.

여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파악된 소득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즉, 조사의 경우에는 소득을 과소보고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이를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행정자료라고 해서 완전한 정보는 아니며, 기존 연구에 따르면 행정자료 역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s)에서 자유롭지 않다.<sup>57)</sup>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을 이용하여 이를 보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행정자료에 기반한 소득금액이 참값이라는 가정하에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sup>58)</sup>

〈표 V-1〉 과소보고(조사 < 보완)와 주요 변수들 간 상관성 분석

| 변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br>이전소득 | 세금        | 공적연금·<br>사회보험료 |
|----------|----------|-----------|-----------|------------|-----------|----------------|
| 지역: 수도권  | -0.070*  | 0.190***  | 0.028     | 0.054      | -0.132*** | -0.033         |
| 성별: 남성   | -0.111** | 0.063     | -0.128**  | -0.009     | 0.031     | -0.205***      |
| 교육       |          |           |           |            |           |                |
| 중학교 졸업   | -0.085   | 0.272***  | -0.072    | -0.028     | 0.108*    | 0.081          |
| 고등학교 졸업  | -0.057   | 0.318***  | -0.213*** | -0.185***  | 0.109**   | -0.083         |
| 대학졸업 이상  | -0.131*  | 0.329***  | -0.142*   | -0.235***  | -0.104*   | -0.266***      |
| 종사상지위    |          |           |           |            |           |                |
| 임시·일용근로자 | -0.040   | 0.186***  | -0.149**  | 0.028      | 0.574***  | 0.248***       |
| 자영업자     | 0.711*** | -1.707*** | -0.035    | -0.053     | 0.154**   | 0.179***       |
| 무직 등     | 0.606*** | 0.107     | -0.070    | -0.230***  | 0.318***  | 0.278***       |
| 혼인상태     |          |           |           |            |           |                |
| 배우자 있음   | 0.087    | 0.107     | 0.121     | 0.568***   | 0.016     | 0.102          |
| 사별       | -0.000   | 0.262**   | 0.107     | -0.053***  | -0.145*   | 0.036          |
| 이혼       | 0.069    | 0.168*    | -0.008    | -0.230***  | 0.102     | 0.109          |
| 가구원수     | 0.116*** | 0.083***  | 0.099***  | 0.112***   | 0.001     | 0.110***       |
| 만 나이     | 0.006*** | -0.008*** | -0.002    | -0.008***  | 0.000     | -0.008***      |

- 57) 변수에 따라 여러 행정자료를 매칭하는 과정에서 오분류(misclassification)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행정자료에서 해당 금액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
- 58) 본고는 가구의 종사상지위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여 설문조사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또한, 자녀가 존재하더라도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국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연령대의 미혼자녀나 배우자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될 확률이 낮다. 즉, 공식적인 소득은 임금근로소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정자료가 참값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V-1〉의 계속

| 변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br>이전소득 | 세금        | 공적연금·<br>사회보험료 |
|-----------------------|-----------|-----------|-----------|------------|-----------|----------------|
| 금융자산                  | -0.072*** | -0.054*** | -0.053*** | -0.033***  | -0.214*   | -0.067***      |
| 실물자산                  | -0.051*** | -0.040*** | 0.025***  | -0.003     | -0.091*** | -0.016**       |
| 금융부채                  | 0.007     | -0.014    | 0.010     | 0.000      | -0.010    | -0.002         |
| 임대보증금                 | -0.000    | -0.002    | -0.079*** | 0.002      | -0.030*** | -0.011**       |
| 근로소득                  | 0.442***  | 0.026***  | 0.037***  | 0.010      | 0.018***  | 0.060***       |
| 사업소득                  | -0.013*   | 0.264***  | 0.036***  | 0.010      | 0.017**   | 0.019***       |
| 재산소득                  | 0.011     | 0.006     | 0.441***  | -0.035***  | 0.119***  | 0.025***       |
| 공적 이전소득               | -0.010    | 0.011     | -0.022**  | 0.414***   | 0.027***  | -0.005         |
| 사적 이전소득               | 0.020**   | 0.020**   | 0.012     | 0.017**    | 0.030***  | 0.012          |
| 세금                    | 0.214***  | 0.084***  | -0.010    | -0.035*    | 0.641***  | 0.037**        |
| 공적연금·사회보험료            | -0.055*** | 0.016     | 0.052***  | 0.021      | -0.060*** | 0.420***       |
| 가구간 이전지출              | -0.003    | 0.008     | -0.014    | -0.014     | -0.007    | -0.005         |
|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 -0.008    | 0.010     | -0.029*** | -0.010     | -0.009    | -0.002         |
| 연간지급이자                | -0.014    | 0.047***  | 0.023     | -0.014     | -0.025**  | -0.010         |
| 소비지출                  | -0.327*** | -0.042    | -0.152*** | -0.185***  | -0.297*** | -0.217***      |
| 관측치 수                 | 9,185     | 9,185     | 9,185     | 9,185      | 9,185     | 9,185          |
| Pseudo R <sup>2</sup> | 0,330     | 0,282     | 0,349     | 0,421      | 0,244     | 0,194          |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프로빗 모형을 추정한 결과로서, 보완자료와 조사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설명변수의 경우 보완자료를 사용함

자료: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마스터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기준) 자료에서는 조사자료에 기반한 소득금액(조사소득)과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조사소득을 보완한 금액(보완소득)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조사소득과 보완소득 간 관계를 모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회귀식을 고려하기로 한다.

$$(1) \text{보완소득(로그)} = \beta_1 \times \text{가구 특성} + \beta_2 \times \text{가구원 특성} + \text{상수항} + \text{오차항}$$

여기에서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가구 및 가구원의 특성(가구원의 실질 조사소득(로그) 포함)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에 의해서도 확보

할 수 있는 변수들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2016년과 2022년의 화폐가치를 통일하기 위하여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식 (1)을 추정하였고,<sup>59)</sup> 2022년 설문조사에서 추정된 소득금액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 또한 소득금액의 크기별로 추정 결과에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하위표본을 구성하여 추정을 시도하였다.<sup>60)</sup>

〈표 V-2〉에 제시된 전체 가구원 대상 추정 결과를 우선 살펴보면, 가구 유형, 가구원의 종사상지위, 가구원의 실질 조사소득(로그) 등이 보완소득을 추정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가구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구원의 실질 조사소득을 포함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단독가구에 비해 2인 가구 혹은 (2+n)인 가구의 보완소득이 더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일용근로자의 보완소득은 상용근로자인 경우보다 낮게, 기타 종사자 및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보완소득은 상용근로자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 역시 추정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소득수준에 따른 회귀식 추정 결과는 전체 대상 추정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가령 가구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보완소득 추정에 있어 가구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구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보완소득 추정에 있어 가구원의 종사상지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가구원의 실질 조사소득의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완소득 추정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더욱이 가구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계수 추정치가 1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조사소득과 보완소득 간 차이가 증가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조사소득을 보완소득으로 간주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59) 2020년을 100으로 설정하였다.

60) 3,000만원 미만을 하위, 3,000만원 이상 및 7,000만원 미만을 중위, 7,000만원 이상을 상위로 분류하였다.

〈표 V-2〉 보완소득과 조사소득 간 관계식 추정 결과

| 설명변수                       | 소득수준:<br>전체 | 소득수준:<br>하위 | 소득수준:<br>중위 | 소득수준:<br>상위 |
|----------------------------|-------------|-------------|-------------|-------------|
| 가구 특성                      |             |             |             |             |
| 가구유형: 2인 가구                | 0.0621***   | 0.0957***   | 0.0339      | -0.0414     |
| 가구유형: (2+n)인 가구            | 0.0890***   | 0.0996***   | 0.0613***   | -0.0410     |
| 수도권 여부: 수도권                | -0.0029     | 0.0160      | -0.0055     | -0.0125     |
| 가구원 특성                     |             |             |             |             |
| 성별: 남성                     | 0.0016      | 0.0000      | 0.0229      | 0.0303      |
| 교육: 고등학교 졸업                | -0.0206     | -0.0612***  | 0.0102      | 0.0628      |
| 교육: 대학(3년제 이하)             | -0.0069     | 0.0253      | -0.0128     | 0.0918**    |
| 교육: 대학(4년제 이상)             | 0.0253      | -0.0006     | 0.0340      | 0.0793*     |
| 교육: 대학원 이상                 | 0.0691***   | -0.0117     | 0.0627*     | 0.1030**    |
| 종사상지위: 일용                  | -0.0494***  | -0.0281     | -0.0937***  | -0.0475     |
| 종사상지위: 기타 <sup>1)</sup>    | 0.0603***   | 0.0433      | 0.0508***   | 0.0677***   |
|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sup>2)</sup>  | 0.0351***   | -0.0048     | 0.0617***   | 0.0494***   |
| 가구주와의 관계: 배우자              | -0.0236     | -0.0976***  | -0.0038     | 0.0012      |
| 가구주와의 관계: 자녀 <sup>3)</sup> | 0.0172      | 0.1150      | 0.0425      | -0.0252     |
| 나이(1차항)                    | 0.0116***   | 0.0237***   | 0.0071*     | 0.0072      |
| 나이(2차항)                    | -0.0001***  | -0.0002***  | 0.0000      | -0.0000     |
| 실질 조사소득(로그)                | 0.9050***   | 0.7530***   | 0.8850***   | 0.9590***   |
| $R^2$                      | 0.753       | 0.544       | 0.629       | 0.789       |
| 관측치수                       | 15,087      | 3,484       | 6,883       | 4,720       |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1) 실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3) 그 배우자도 포함됨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인가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 결과

### 가. 비공식 취업소득 관련 기초통계량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정형적·비정형적 경제활동 양상을 보여주는 기초 통계는 <표 V-3> 및 <표 V-4>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정형적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응답자 대다수(77.4%)가 상용직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인적용역 사업자 비중은 6.5%로 조사되었다. 종사상지위 분포는 가구유형에 따라 소폭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주와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자 비중이 8.4%로 조사되어 단독가구 혹은 (2+n)인 가구에 비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종사상지위별 월 소득 평균은 상용직이 334.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224.6만원), 인적용역 사업자(159.1만원), 임시·일용직(148.6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가구유형별로도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다만 단독가구에서는 임시·일용직의 월 소득 평균이 155.9만원으로 집계되어 인적용역 사업자의 월 소득 평균(137.1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로시간 평균의 경우 일반적인 기대와 부합되게 상용직에서 가장 긴 38.5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주당 근로시간 평균(19.0시간)의 2.0배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위에서 살펴보았던 월 소득 평균의 경우에도 상용직의 해당 수치가 인적용역 사업자의 2.1배였음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인적용역 사업자에 비해 임시·일용직의 월 소득 평균이 높았던 단독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임시·일용직의 주당 근로시간 평균(24.4시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측면에서는 교육·보건·예술 등에 해당되는 응답자 비중이 27.3%로 조사되어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제조업(18.5%), 기타 서비스업(12.0%), 기타(10.6%)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종별 분포의 경우 가구유형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다만 단독가구의 경우 기타 서비스업 종사 비율이 15.4%로 조사되어 2인 가구(11.8%) 혹은 (2+n)인

가구(10.2%)에 비해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한편 직종과 관련된 설문에서는 사무 종사자로 응답한 비율이 41.7%로 가장 높았으며, 관리자(14.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5.9%), 서비스·판매 종사자(14.1%)의 비중은 유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분포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가령 단독가구의 경우 관리자 비중이 9.3%로 조사된 반면 (2+n)인 가구는 17.9%로 조사되어 큰 차이를 보였다.

〈표 V-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 응답자 분포: 정형적 경제활동<sup>1)</sup>  
(단위: %, 만원, 시간)

| 구분                                 | 전체 표본 | 단독가구  | 가구주 + 배우자 가구 | 가구주+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
|------------------------------------|-------|-------|--------------|--------------------|
| 가. 종사상지위 <sup>2)</sup>             |       |       |              |                    |
| 상용직                                | 77.4  | 78.7  | 76.3         | 77.2               |
| 임시, 일용직                            | 11.3  | 12.3  | 9.7          | 11.4               |
| 인적용역 사업자                           | 6.5   | 5.3   | 8.4          | 6.5                |
| 자영업자(고용인 무)                        | 4.7   | 3.7   | 5.6          | 5.0                |
| 나. 종사상지위별 월 소득 평균 <sup>3)</sup>    |       |       |              |                    |
| 상용직                                | 334.0 | 283.3 | 323.3        | 368.8              |
| 임시, 일용직                            | 148.6 | 155.9 | 174.9        | 133.6              |
| 인적용역 사업자                           | 159.1 | 137.1 | 196.8        | 153.3              |
| 자영업자(고용인 무)                        | 224.6 | 181.3 | 247.8        | 233.3              |
| 다. 종사상지위별 주당 근로시간 평균 <sup>3)</sup> |       |       |              |                    |
| 상용직                                | 38.5  | 38.7  | 38.2         | 38.4               |
| 임시, 일용직                            | 22.7  | 24.4  | 21.5         | 22.1               |
| 인적용역 사업자                           | 19.0  | 17.3  | 24.0         | 17.5               |
| 자영업자(고용인 무)                        | 27.8  | 24.7  | 31.0         | 27.7               |

〈표 V-3〉의 계속

(단위: %, 만원, 시간)

| 구분                    | 전체 표본 | 단독가구 | 가구주+ 배우자<br>가구 | 가구주+배우자<br>+30세 미만<br>자녀 |
|-----------------------|-------|------|----------------|--------------------------|
| 라. 업종 <sup>2)</sup>   |       |      |                |                          |
| 농임어광업                 | 0.4   | 0.8  | 0.4            | 0.2                      |
| 제조업                   | 18.5  | 17.5 | 19.2           | 18.7                     |
| 건설업                   | 6.8   | 7.1  | 6.2            | 6.8                      |
| 도소매업                  | 8.4   | 7.4  | 10.0           | 8.3                      |
| 운수창고통신                | 8.2   | 7.8  | 8.5            | 8.5                      |
| 숙박음식점업                | 2.6   | 2.7  | 1.9            | 2.9                      |
| 금융보험업                 | 3.0   | 2.4  | 2.9            | 3.5                      |
| 부동산업                  | 2.1   | 2.5  | 2.7            | 1.7                      |
| 교육·보건·예술 등            | 27.3  | 27.9 | 25.9           | 27.6                     |
| 기타 서비스업 <sup>4)</sup> | 12.0  | 15.4 | 11.8           | 10.2                     |
| 기타 <sup>5)</sup>      | 10.6  | 8.7  | 10.6           | 11.6                     |
| 마. 직종 <sup>2)</sup>   |       |      |                |                          |
| 관리자                   | 14.3  | 9.3  | 12.9           | 17.9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15.9  | 18.7 | 15.6           | 14.3                     |
| 사무 종사자                | 41.7  | 44.1 | 40.3           | 40.9                     |
| 서비스·판매 종사자            | 14.1  | 13.7 | 15.3           | 13.9                     |
| 기능원 등 <sup>6)</sup>   | 7.3   | 7.0  | 8.8            | 6.9                      |
| 단순노무 종사자              | 6.7   | 7.2  | 7.1            | 6.2                      |

주: 1) 2022년 8월 기준이며, 비정형 경제활동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된 16명은 분포 산출 시 제외  
 2) 1순위 응답 기준  
 3) 복수의 종사상지위를 응답한 경우 조사된 종사상지위별 비중을 적용하여 각 응답자의 종사상지위 별 월 소득 및 주당 근로시간을 산출함  
 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타 포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정형적 경제활동에 이어 비정형 경제활동의 양상을 살펴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6.8%가 배달 및 퀵서비스와 관련된 경제활동에서 소득을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달과 퀵서비스 중에서는 배달에만 종사하는 비중이 매

우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단독가구에서 특히 더 두드러졌다. 배달 및 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월 소득 평균은 34.2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온라인 플랫폼 이용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으로 한정할 경우 33.7만원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배달 및 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한 경험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1/3을 넘지 않았으며, 소득신고를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인 응답자의 비중 역시 절반 이하로 조사되었다.<sup>61)</sup>

돌봄·가사·과외의 경우 그 참여 비율이 배달 및 퀵서비스에 비해 소폭 낮은 4.6%로 조사되었다. 돌봄·가사·과외 중에서는 돌봄과 과외 비중이 높았는데, 단독가구에서는 과외(53.7%), 2인 가구에서는 육아·요양 돌봄(63.9%)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가사·과외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월 소득 평균은 68.0만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온라인 플랫폼 이용으로 발생된 소득으로 한정하면 61.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배달 및 퀵서비스와는 달리 소득신고 경험자와 소득신고 완료·예정자 비율이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비율이 배달 및 퀵서비스(89.1%)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인 34.0%로 조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이다.

끝으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참여 비율은 5.0%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데, 가구유형별로 제작 비중이 높은 콘텐츠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가구유형에서 글·그림·캐릭터·동영상·기타 콘텐츠 중 글 콘텐츠 제작·납품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동영상의 비중(24.1%) 역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월 소득 평균은 29.1만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배달 및 퀵서비스, 돌봄·가사·과외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소득신고 경험 및 완료·예정 측면에서는 배달 및 퀵서비스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소득신고 경험이 있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 비율은 34.1%, 소득신고를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인 비율은 40.9%로 각각 조사되었다.

---

61) 단, (2+n)인 가구의 경우 해당 비율이 50.9%로 집계되었다.

〈표 V-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 응답자 분포: 비정형 경제활동<sup>1)</sup>

(단위: %, 만원)

| 구분                          | 전체 표본 | 단독가구 | 가구주+배우자 가구 | 가구주+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
|-----------------------------|-------|------|------------|--------------------|
| <b>가. 배달 및 퀵서비스</b>         |       |      |            |                    |
| 제공 여부                       | 6.8   | 7.1  | 6.9        | 6.7                |
| 배달                          | 88.3  | 91.7 | 82.4       | 88.8               |
| 퀵서비스                        | 4.2   | 5.6  | 9.8        | 0.9                |
| 배달 및 퀵서비스                   | 7.5   | 2.8  | 7.8        | 10.3               |
| 월 소득 평균                     | 34.2  | 28.9 | 34.7       | 37.3               |
| 온라인 플랫폼 이용 여부               | 89.1  | 90.3 | 86.3       | 89.7               |
| 온라인 플랫폼 소득                  | 33.7  | 27.5 | 31.1       | 38.7               |
| 향후 지속 의향: 긍정적               | 32.2  | 26.4 | 39.2       | 32.8               |
| 소득신고 경험 유                   | 28.0  | 27.8 | 29.4       | 27.6               |
| 소득신고 완료·예정                  | 47.7  | 41.7 | 49.0       | 50.9               |
| <b>나. 돌봄, 가사, 과외</b>        |       |      |            |                    |
| 제공 여부 <sup>2)</sup>         | 4.6   | 4.0  | 4.9        | 4.9                |
| 돌봄(육아)                      | 32.7  | 22.0 | 33.3       | 37.7               |
| 돌봄(요양)                      | 13.6  | 7.3  | 30.6       | 9.4                |
| 가사                          | 10.5  | 17.1 | 11.1       | 7.1                |
| 과외                          | 43.2  | 53.7 | 25.0       | 45.9               |
| 월 소득 평균                     | 68.0  | 74.2 | 72.7       | 63.0               |
| 온라인 플랫폼 이용 여부 <sup>3)</sup> | 34.0  | 36.6 | 25.0       | 36.5               |
| 온라인 플랫폼 소득                  | 61.8  | 54.6 | 45.1       | 70.1               |
| 향후 지속 의향: 긍정적               | 63.1  | 62.2 | 65.8       | 62.4               |
| 소득신고 경험 유                   | 50.6  | 51.2 | 63.9       | 44.7               |
| 소득신고 완료·예정                  | 54.9  | 58.5 | 72.2       | 45.9               |
| <b>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b>       |       |      |            |                    |
| 제공 여부 <sup>2)</sup>         | 5.0   | 5.7  | 5.3        | 4.5                |
| 글                           | 44.3  | 34.5 | 53.9       | 46.8               |
| 그림                          | 15.9  | 20.7 | 18.0       | 11.4               |
| 캐릭터                         | 1.1   | 1.7  | 0.0        | 1.3                |
| 동영상                         | 17.1  | 24.1 | 15.4       | 12.7               |
| 기타 <sup>4)</sup>            | 21.6  | 19.0 | 12.8       | 27.9               |
| 월 소득 평균                     | 29.1  | 25.1 | 51.5       | 20.9               |
| 향후 지속 의향: 긍정적               | 77.2  | 75.0 | 77.6       | 78.8               |
| 소득신고 경험 유                   | 34.1  | 39.7 | 43.6       | 25.3               |
| 소득신고 완료·예정                  | 40.9  | 43.1 | 48.7       | 35.4               |

주: 1) 2022년 8월 기준

2) 제공 서비스 혹은 콘텐츠 비중은 1순위 응답 기준

3) 1순위 응답 기준

4) 무응답 포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나. 비공식 취업소득 발생 확률 및 금액 추정 결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에서는 비정형 소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그런데 비정형 소득의 모두가 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비공식소득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어떤 온라인 플랫폼은 해당 소득이 국세청에 수집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특히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에 해당되면서 실제로 원천징수의무가 이행되는 경우 그러하다.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의 경우에는 라이더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이 과정에서 소득과 신원 정보를 보험관리당국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다. 한편, 특고의 경우에는 소득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더라도 관련 소득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비정형소득 중에서 비공식소득과 공식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정형 소득활동을 하고 이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응답자들이 응답한 상위 1~3위의 온라인 플랫폼을 일일이 검토하여 비정형 소득의 소득파악률을 가늠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오프라인 중개업소 활용을 고려하여 소득파악률을 가늠하는 것이다. 오프라인 중개업소 역시 원천징수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소득자료를 입수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비정형 취업소득 활동의 자료가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것에 비해서는 소득파악률이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소득신고 경험 및 소득신고 계획에 대한 응답 내용을 기반으로 소득파악률을 가늠하는 것이다. 물론 비록 비정형 취업활동을 하는 본인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수입제공자에 의해 원천징수 되는 경우, 소득이 파악될 가능성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는 작업은 아직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신고 소득을 단순하게 비공식소득으로 간주하였다. 과거 소득신고 여부에 대한 정보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 현재 소득신고 행태를 기반으로 비공식소득을 정의하였다.

비공식소득의 발생 확률 및 규모 추정 결과는 <표 V-5>~<표 V-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추정은 배달 및 퀵서비스, 돌봄·가사·과외, 온라인 콘텐츠 각각을 나누어 수행하였으며, 각 비공식소득 유형별로는 전체 표본 및 하위표본 각각을 대상으로 추정을 시도하였다. 이때 하위표본은 보완된 실질 공식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 3,000만원 미만인 응답자와 3,000만원 이상인 응답자를 나누어 구성하였다. 한편 비공식소득의 발생 확률 추정을 위해서는 로짓 모형(logit model)을 활용하였으며, 비공식소득의 규모 추정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선형 회귀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가구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과 가구원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전자에는 가구유형 및 지역(수도권 여부), 후자에는 성별, 교육, 종사상지위, 가구주와의 관계, 나이(1차항 및 2차항), 보완 실질 공식소득(로그) 등이 포함된다.

이제 추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공식소득 유형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들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배달 및 퀵서비스와 관련된 비공식소득 발생 확률 추정에서는 종사상지위의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타나는데(〈표 V-5〉 참조), 이는 상용직에 비해 일용직 혹은 자영업자일 경우 배달 및 퀵서비스 관련 비공식소득 발생 확률이 높아짐을 말해주고 있다. 반면 돌봄·가사·과외와 관련된 비공식소득 발생 확률 추정에서는 성별(남성)의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타나는데(〈표 V-7〉 참조), 이는 남성일 경우 여성에 비해 돌봄·가사·과외와 관련된 비공식소득 발생 확률이 낮아짐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비공식소득 유형에 따라 그 발생 확률 내지 규모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상이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다만 〈표 V-5〉~〈표 V-10〉에 제시된 추정 결과들을 인과적인 관계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장의 제4절에서는 이상의 추정 결과들을 활용하여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상 각 가구원들의 비공식소득 발생 확률 및 규모를 추정한다. 이때 하위표본을 활용한 추정 결과를 적용할 예정인데, 하위표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상 관측치 수가 충분하지 않아 추정되지 못한 변수들의 계수 값이 일부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가령 〈표 V-10〉의 마지막

열<sup>62)</sup>에서 고등학교 졸업 가변수의 계수 값과 일용직 가변수의 계수 값은 추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제4절에서 비공식소득 발생 확률 및 규모 추정 시 이들 변수들의 계수 값을 불가피하게 0으로 설정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표 V-5〉 비공식소득의 발생 확률 추정 결과: 배달 및 퀵서비스

| 구분                         | 전체       | 보완 실질 공식소득 기준 |            |
|----------------------------|----------|---------------|------------|
|                            |          | 3,000만원 미만    | 3,000만원 이상 |
| 가구 특성                      |          |               |            |
| 가구유형: 2인 가구                | -0.145   | -0.150        | 0.738      |
| 가구유형: (2+n)인 가구            | 0.025    | 0.130         | 0.674      |
| 수도권 여부: 수도권                | -0.012   | 0.210         | -0.725     |
| 가구원 특성                     |          |               |            |
| 성별: 남성                     | 0.184    | 0.235         | 0.572      |
| 교육: 고등학교 졸업                | -0.023   | -0.142        | 0.173      |
| 교육: 대학(3년제 이하)             | 0.077    | -0.023        | -0.140     |
| 교육: 대학(4년제 이상)             | -0.207   | -0.098        | -1.072     |
| 교육: 대학원 이상                 | -0.133   | 0.120         | -1.047     |
| 종사상지위: 일용                  | 2.772*** | 2.718***      | 2.446***   |
| 종사상지위: 기타 <sup>1)</sup>    | 2.295*** | 2.135***      | 2.571***   |
|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sup>2)</sup>  | 1.820*** | 1.777***      | 1.577**    |
| 가구주와의 관계: 배우자              | 0.061    | -0.116        | 0.179      |
| 가구주와의 관계: 자녀 <sup>3)</sup> | -1.026*  | -1.401**      | 2.488**    |
| 나이(1차항)                    | -0.049   | -0.051        | -0.062     |
| 나이(2차항)                    | 0.001    | 0.001         | 0.001      |
| 보완 실질 공식소득(로그)             | -0.235** | -0.182*       | 0.260      |
| 상수항                        | -1.599   | -1.876        | -5.912     |
| Pseudo $R^2$               | 0.191    | 0.178         | 0.180      |
| 관측치 수                      | 3,496    | 1,791         | 1,705      |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1) 실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3) 그 배우자도 포함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62) 보완 실질 공식소득 3,000만원 이상 하위표본 추정 결과에 해당된다.

〈표 V-6〉 비공식소득의 규모 추정 결과: 배달 및 퀵서비스

| 구분                         | 전체       | 보완 실질 공식소득 기준 |            |
|----------------------------|----------|---------------|------------|
|                            |          | 3,000만원 미만    | 3,000만원 이상 |
| 가구 특성                      |          |               |            |
| 가구유형: 2인 가구                | 0.185    | 0.148         | 1.227      |
| 가구유형: (2+n)인 가구            | 0.086    | 0.163         | 0.617      |
| 수도권 여부: 수도권                | -0.204   | -0.042        | -0.988     |
| 가구원 특성                     |          |               |            |
| 성별: 남성                     | 0.351    | 0.643         | -0.094     |
| 교육: 고등학교 졸업                | -0.302   | -0.191        | 0.250      |
| 교육: 대학(3년제 이하)             | -0.129   | -0.392        | 0.526      |
| 교육: 대학(4년제 이상)             | -0.338   | -0.171        | 0.417      |
| 교육: 대학원 이상                 | -0.249   | -0.074        | 1.947      |
| 종사상지위: 일용                  | -0.102   | -0.235        | 0.282      |
| 종사상지위: 기타 <sup>1)</sup>    | -0.061   | -0.376        | 0.419      |
|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sup>2)</sup>  | 0.543    | -0.033        | 2.423      |
| 가구주와의 관계: 배우자              | 0.011    | 0.286         | -0.357     |
| 가구주와의 관계: 자녀 <sup>3)</sup> | 0.150    | -0.386        | 4.933      |
| 나이(1차항)                    | 0.033    | 0.032         | 0.659      |
| 나이(2차항)                    | -0.000   | -0.000        | -0.007     |
| 보완 실질 공식소득(로그)             | -0.165** | -0.182**      | 0.535      |
| 상수항                        | 5.574*** | 5.578***      | -15.929    |
| $R^2$                      | 0.115    | 0.163         | 0.851      |
| 관측치 수                      | 125      | 102           | 23         |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1) 실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3) 그 배우자도 포함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7〉 비공식소득의 발생 확률 추정 결과: 돌봄, 가사, 과외

| 구분                         | 전체        | 보완 실질 공식소득 기준 |            |
|----------------------------|-----------|---------------|------------|
|                            |           | 3,000만원 미만    | 3,000만원 이상 |
| 가구 특성                      |           |               |            |
| 가구유형: 2인 가구                | 0.052     | 0.114         | 0.026      |
| 가구유형: (2+n)인 가구            | 1.029***  | 1.267**       | 0.793      |
| 수도권 여부: 수도권                | -0.208    | -0.172        | -0.176     |
| 가구원 특성                     |           |               |            |
| 성별: 남성                     | -1.041*** | -0.985**      | -0.910*    |
| 교육: 고등학교 졸업                | 0.982     | 0.354         | -0.192     |
| 교육: 대학(3년제 이하)             | 0.585     | 0.174         | -1.199     |
| 교육: 대학(4년제 이상)             | 0.933     | 0.409         | -0.560     |
| 교육: 대학원 이상                 | 1.256     | 0.544         | -          |
| 종사상지위: 일용                  | 0.117     | 0.137         | 0.232      |
| 종사상지위: 기타 <sup>1)</sup>    | 1.142***  | 1.103**       | 1.403**    |
|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sup>2)</sup>  | 0.401     | 0.667         | -          |
| 가구주와의 관계: 배우자              | -0.995*** | -1.038**      | -0.966     |
| 가구주와의 관계: 자녀 <sup>3)</sup> | -1.030*   | -1.429        | 0.997      |
| 나이(1차항)                    | 0.001     | -0.044        | 0.115      |
| 나이(2차항)                    | 0.000     | 0.001         | -0.001     |
| 보완 실질 공식소득(로그)             | -0.670*** | -0.669***     | -1.839*    |
| 상수항                        | 0.291     | 1.630         | 8.767      |
| Pseudo $R^2$               | 0.133     | 0.155         | 0.072      |
| 관측치 수                      | 3,496     | 1,791         | 1,577      |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1) 실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3) 그 배우자도 포함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8〉 비공식소득의 규모 추정 결과: 돌봄, 가사, 과외

| 구분                         | 전체        | 보완 실질 공식소득 기준 |            |
|----------------------------|-----------|---------------|------------|
|                            |           | 3,000만원 미만    | 3,000만원 이상 |
| 가구 특성                      |           |               |            |
| 가구유형: 2인 가구                | 0.118     | 0.350         | -1.048     |
| 가구유형: (2+n)인 가구            | -0.013    | 0.202         | -0.402     |
| 수도권 여부: 수도권                | 0.279     | 0.147         | 0.391      |
| 가구원 특성                     |           |               |            |
| 성별: 남성                     | 0.159     | 0.094         | 0.574      |
| 교육: 고등학교 졸업                | -0.840**  | -0.580        | -          |
| 교육: 대학(3년제 이하)             | -0.162    | -0.199        | 0.919      |
| 교육: 대학(4년제 이상)             | -1.141*** | -0.860        | -0.239     |
| 교육: 대학원 이상                 | -0.638    | -0.708        | 0.715      |
| 종사상지위: 일용                  | 0.001     | -0.050        | 0.581      |
| 종사상지위: 기타 <sup>1)</sup>    | 0.562**   | 0.511         | 0.880      |
|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sup>2)</sup>  | 1.053**   | 0.912*        | -          |
| 가구주와의 관계: 배우자              | -0.181    | -0.175        | -0.196     |
| 가구주와의 관계: 자녀 <sup>3)</sup> | -0.493    | -0.679        | -1.501     |
| 나이(1차항)                    | -0.112    | -0.111        | -0.496     |
| 나이(2차항)                    | 0.001*    | 0.001         | 0.005      |
| 보완 실질 공식소득(로그)             | -0.044    | -0.055        | -0.100     |
| 상수항                        | 8,708***  | 8,557***      | 17,248     |
| $R^2$                      | 0.353     | 0.287         | 0.826      |
| 관측치 수                      | 73        | 51            | 22         |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1) 실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3) 그 배우자도 포함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9〉 비공식소득의 발생 확률 추정 결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

| 구분                         | 전체        | 보완 실질 공식소득 기준 |            |
|----------------------------|-----------|---------------|------------|
|                            |           | 3,000만원 미만    | 3,000만원 이상 |
| 가구 특성                      |           |               |            |
| 가구유형: 2인 가구                | 0.166     | -0.218        | 0.091      |
| 가구유형: (2+n)인 가구            | 0.026     | -0.574        | 0.027      |
| 수도권 여부: 수도권                | 0.486**   | 0.519*        | 0.475      |
| 가구원 특성                     |           |               |            |
| 성별: 남성                     | -0.589*** | -0.536*       | -1.063***  |
| 교육: 고등학교 졸업                | 0.879     | -0.008        | -0.306     |
| 교육: 대학(3년제 이하)             | 0.389     | -0.531        | -0.798     |
| 교육: 대학(4년제 이상)             | 1.098     | 0.556         | -0.731     |
| 교육: 대학원 이상                 | 1.244     | -             | -          |
| 종사상지위: 일용                  | 0.043     | 0.254         | -          |
| 종사상지위: 기타 <sup>1)</sup>    | 0.410     | 0.756*        | -0.297     |
|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sup>2)</sup>  | 0.271     | -0.272        | 0.998      |
| 가구주와의 관계: 배우자              | 0.306     | 1.095         | -0.073     |
| 가구주와의 관계: 자녀 <sup>3)</sup> | -0.488    | -0.146        | 0.628      |
| 나이(1차항)                    | -0.161**  | -0.209**      | -0.118     |
| 나이(2차항)                    | 0.001     | 0.002         | 0.001      |
| 보완 실질 공식소득(로그)             | -0.232*   | -0.327***     | 0.590      |
| 상수항                        | 1,215     | 3,444*        | -4,419     |
| Pseudo R <sup>2</sup>      | 0,074     | 0,114         | 0,062      |
| 관측치 수                      | 3,496     | 1,723         | 1,580      |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1) 실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3) 그 배우자도 포함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10〉 비공식소득의 규모 추정 결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

| 구분                         | 전체        | 보완 실질 공식소득 기준 |            |
|----------------------------|-----------|---------------|------------|
|                            |           | 3,000만원 미만    | 3,000만원 이상 |
| 가구 특성                      |           |               |            |
| 가구유형: 2인 가구                | 0.867*    | 1.155*        | 1.401      |
| 가구유형: (2+n)인 가구            | 0.112     | 0.183         | 1.301      |
| 수도권 여부: 수도권                | -0.228    | -0.391        | 0.124      |
| 가구원 특성                     |           |               |            |
| 성별: 남성                     | 0.483     | 1.195**       | -1.064     |
| 교육: 고등학교 졸업                | -4.701*** | -4.782***     | -          |
| 교육: 대학(3년제 이하)             | -4.322*** | -4.567***     | 0.182      |
| 교육: 대학(4년제 이상)             | -4.447*** | -4.529***     | 0.009      |
| 교육: 대학원 이상                 | -4.284*** | -             | -0.179     |
| 종사상지위: 일용                  | -1.274*** | -0.804        | -          |
| 종사상지위: 기타 <sup>1)</sup>    | 1.142**   | 1.554***      | 0.896      |
|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sup>2)</sup>  | 0.741     | 0.920         | 0.818      |
| 가구주와의 관계: 배우자              | -0.345    | -0.068        | -1.481     |
| 가구주와의 관계: 자녀 <sup>3)</sup> | 0.538     | 0.118         | -0.822     |
| 나이(1차항)                    | -0.042    | -0.002        | -0.461**   |
| 나이(2차항)                    | 0.000     | -0.000        | 0.005**    |
| 보완 실질 공식소득(로그)             | -0.264*** | -0.209**      | 0.639      |
| 상수항                        | 11,368*** | 10,066***     | 8,523      |
| $R^2$                      | 0.380     | 0.570         | 0.398      |
| 관측치 수                      | 105       | 63            | 42         |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1) 실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3) 그 배우자도 포함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3. 시뮬레이션 모형: 기준경제

본 절에서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하여 기준경제하에서의 사회보험료, 소득세의 분포, 개인 및 가구의 특질,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근로장려세제의 수급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V-11〉 개인의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유형 및 소득신고 유형(1/3): 기준경제

(단위: %)

| 구분       | 고용보험 가입유형 |       | 국민연금 가입유형 |       |       |       | 건강보험 가입유형 |       |       | 소득신고유형 |       |       |
|----------|-----------|-------|-----------|-------|-------|-------|-----------|-------|-------|--------|-------|-------|
|          | 미가입       | 직장가입  | 미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임의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피부양자  | 신고안함   | 연말정산  | 종합소득  |
| 총사상지위    | 미가입       | 직장가입  | 미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임의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피부양자  | 신고안함   | 연말정산  | 종합소득  |
| 무직무급     | 0.00      | 0.00  | 98.92     | 0.00  | 0.00  | 1.08  | 0.00      | 16.87 | 83.13 | 73.43  | 17.59 | 8.98  |
| 상용       | 7.94      | 92.06 | 23.01     | 75.38 | 0.00  | 1.62  | 95.33     | 0.22  | 4.45  | 0.89   | 86.30 | 12.80 |
| 임시일용     | 21.01     | 78.99 | 58.40     | 38.19 | 0.00  | 3.42  | 62.75     | 0.55  | 36.71 | 5.51   | 84.30 | 10.19 |
| 1인자영, 특고 | 0.00      | 0.00  | 60.60     | 0.00  | 35.94 | 3.46  | 0.00      | 59.36 | 40.64 | 8.67   | 4.76  | 86.56 |
| 연령대 구분   | 미가입       | 직장가입  | 미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임의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피부양자  | 신고안함   | 연말정산  | 종합소득  |
| 29세 이하   | 9.45      | 90.55 | 90.14     | 9.62  | 0.25  | 0.00  | 10.11     | 6.12  | 83.77 | 75.86  | 22.93 | 1.21  |
| 30~39    | 9.32      | 90.68 | 42.46     | 53.48 | 4.06  | 0.00  | 59.27     | 13.55 | 27.18 | 17.34  | 69.12 | 13.54 |
| 40~55    | 11.32     | 88.68 | 42.02     | 49.43 | 8.55  | 0.00  | 57.08     | 17.40 | 25.52 | 15.49  | 61.31 | 23.20 |
| 56~65    | 13.52     | 86.48 | 63.50     | 19.83 | 5.87  | 10.80 | 37.84     | 22.05 | 40.12 | 22.72  | 45.54 | 31.74 |
| 65세 이상   | 14.86     | 85.14 | 100.0     | 0.00  | 0.00  | 0.00  | 12.25     | 20.48 | 67.27 | 47.48  | 25.02 | 27.51 |
| 가구원 유형   | 미가입       | 직장가입  | 미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임의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피부양자  | 신고안함   | 연말정산  | 종합소득  |
| 가구주      | 12.08     | 87.92 | 57.76     | 33.89 | 6.24  | 2.12  | 49.05     | 21.02 | 29.93 | 16.60  | 52.11 | 31.28 |
| 배우자      | 10.54     | 89.47 | 70.93     | 23.05 | 2.99  | 3.03  | 28.09     | 15.42 | 56.49 | 40.66  | 43.35 | 15.99 |
| 자녀       | 10.74     | 89.26 | 87.15     | 12.33 | 0.52  | 0.00  | 13.14     | 6.71  | 80.15 | 71.90  | 26.19 | 1.91  |
| 가구유형     | 미가입       | 직장가입  | 미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임의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피부양자  | 신고안함   | 연말정산  | 종합소득  |
| 단독       | 12.06     | 87.94 | 73.09     | 21.64 | 3.71  | 1.56  | 34.91     | 20.78 | 44.31 | 33.37  | 46.60 | 20.03 |
| +배우자     | 13.66     | 86.34 | 83.32     | 10.35 | 2.31  | 4.01  | 22.96     | 20.02 | 57.02 | 36.00  | 33.43 | 30.56 |
| +배우자, 자녀 | 10.98     | 89.02 | 66.35     | 28.75 | 3.94  | 0.96  | 33.99     | 12.07 | 53.94 | 44.37  | 42.03 | 13.59 |
| 성별       | 미가입       | 직장가입  | 미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임의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피부양자  | 신고안함   | 연말정산  | 종합소득  |
| 남성       | 12.37     | 87.63 | 65.03     | 28.93 | 4.72  | 1.32  | 39.27     | 16.57 | 44.15 | 32.85  | 43.58 | 23.57 |
| 여성       | 10.37     | 89.63 | 75.96     | 19.57 | 2.43  | 2.04  | 25.06     | 13.42 | 61.52 | 48.11  | 39.52 | 12.37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12〉 개인의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유형 및 소득신고 유형(2/3): 기준경제

(단위: %)

| 구분          | 고용보험 가입유형 |        | 국민연금 가입유형 |       |       |      | 건강보험 가입유형 |       |       | 소득신고유형 |       |        |
|-------------|-----------|--------|-----------|-------|-------|------|-----------|-------|-------|--------|-------|--------|
|             | 미가입       | 직장가입   | 미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임의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피부양자  | 신고안함   | 연말정산  | 종합소득   |
| <b>근로소득</b> |           |        |           |       |       |      |           |       |       |        |       |        |
| 없음          | 0.00      | 100.00 | 92.97     | 0.52  | 5.08  | 1.44 | 0.58      | 15.47 | 83.95 | 77.95  | 0.00  | 22.05  |
| 1천만원 이하     | 0.00      | 100.00 | 80.93     | 14.46 | 3.01  | 1.60 | 21.16     | 27.23 | 51.62 | 0.26   | 86.03 | 13.72  |
| 3천만원 이하     | 13.62     | 86.38  | 40.96     | 53.79 | 2.28  | 2.97 | 71.65     | 15.94 | 12.41 | 0.00   | 87.72 | 12.28  |
| 6천만원 이하     | 9.74      | 90.26  | 22.41     | 75.01 | 0.73  | 1.85 | 93.04     | 4.28  | 2.68  | 0.00   | 89.20 | 10.80  |
| 6천만원 이상     | 23.23     | 79.77  | 30.86     | 68.55 | 0.19  | 0.40 | 96.93     | 1.44  | 1.63  | 0.00   | 82.84 | 17.16  |
| <b>사업소득</b> |           |        |           |       |       |      |           |       |       |        |       |        |
| 없음          | 11.55     | 88.45  | 72.77     | 25.50 | 0.24  | 1.49 | 34.28     | 9.74  | 55.98 | 46.77  | 45.63 | 7.60   |
| 1천만원 이하     | 12.50     | 87.50  | 68.11     | 25.14 | 4.77  | 1.97 | 30.25     | 21.50 | 48.25 | 25.53  | 40.37 | 34.10  |
| 3천만원 이하     | 5.61      | 94.39  | 60.07     | 8.57  | 27.75 | 3.61 | 10.19     | 51.62 | 38.19 | 0.00   | 0.00  | 100.00 |
| 6천만원 이하     | 4.80      | 95.20  | 42.91     | 7.10  | 46.54 | 3.45 | 8.56      | 70.60 | 20.84 | 0.00   | 0.00  | 100.00 |
| 6천만원 이상     | 0.00      | 100.00 | 42.16     | 3.01  | 52.75 | 2.09 | 5.76      | 74.84 | 19.40 | 0.00   | 0.00  | 100.00 |
| <b>종합소득</b> |           |        |           |       |       |      |           |       |       |        |       |        |
| 없음          | 0.00      | 100.00 | 99.63     | 0.12  | 0.00  | 0.25 | 0.16      | 2.59  | 97.25 | 99.76  | 0.00  | 0.24   |
| 1천만원 이하     | 0.00      | 100.00 | 92.36     | 5.04  | 0.97  | 1.63 | 6.97      | 16.28 | 76.75 | 56.92  | 32.53 | 10.56  |
| 3천만원 이하     | 12.78     | 87.23  | 50.92     | 40.43 | 5.70  | 2.96 | 53.84     | 23.95 | 22.21 | 0.00   | 69.48 | 30.52  |
| 6천만원 이하     | 9.49      | 90.51  | 30.53     | 57.33 | 9.44  | 2.70 | 72.18     | 19.41 | 8.41  | 0.00   | 67.08 | 32.92  |
| 6천만원 이상     | 19.97     | 80.03  | 31.85     | 60.60 | 6.86  | 0.70 | 85.03     | 10.95 | 4.02  | 0.00   | 67.81 | 32.19  |

주: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금을 제외한 재산소득의 합산액으로 정의되었음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13〉 개인의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유형 및 소득신고 유형(3/3): 기준경제

(단위: %)

| 구분      | 고용보험 가입유형 |        | 국민연금 가입유형 |       |       |      | 건강보험 가입유형 |       |       | 소득신고유형 |        |       |
|---------|-----------|--------|-----------|-------|-------|------|-----------|-------|-------|--------|--------|-------|
|         | 미가입       | 직장가입   | 미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임의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피부양자  | 신고안함   | 연말정산   | 종합소득  |
| 근로소득 비중 |           |        |           |       |       |      |           |       |       |        |        |       |
| 0%, 비관측 | 7.57      | 92.43  | 86.05     | 3.08  | 8.50  | 2.37 | 4.38      | 24.63 | 70.99 | 57.68  | 2.82   | 39.50 |
| 25% 이하  | 2.23      | 97.77  | 58.71     | 12.06 | 26.18 | 3.05 | 17.76     | 50.37 | 31.87 | 0.00   | 13.93  | 86.07 |
| 50% 이하  | 10.35     | 89.65  | 63.88     | 22.39 | 10.82 | 2.91 | 30.71     | 30.46 | 38.83 | 0.00   | 33.56  | 66.44 |
| 75% 이하  | 0.00      | 100.00 | 100.00    | 0.00  | 0.00  | 0.00 | 2.41      | 18.79 | 78.79 | 0.00   | 100.00 | 0.00  |
| 75% 이상  | 11.91     | 88.09  | 63.30     | 35.07 | 0.34  | 1.29 | 46.24     | 8.84  | 44.91 | 34.22  | 61.78  | 4.01  |
| 사업소득 비중 |           |        |           |       |       |      |           |       |       |        |        |       |
| 0%, 비관측 | 11.61     | 88.39  | 62.84     | 34.42 | 0.79  | 1.94 | 46.18     | 13.09 | 40.72 | 26.68  | 61.24  | 12.08 |
| 25% 이하  | 13.71     | 86.29  | 47.39     | 47.89 | 2.53  | 2.19 | 57.67     | 21.70 | 20.63 | 4.98   | 73.28  | 21.74 |
| 50% 이하  | 10.81     | 89.19  | 63.79     | 22.16 | 12.45 | 1.61 | 27.23     | 28.77 | 44.00 | 11.62  | 24.63  | 63.75 |
| 75% 이하  | 0.00      | 100.00 | 100.00    | 0.00  | 0.00  | 0.00 | 0.00      | 6.77  | 93.23 | 81.15  | 11.30  | 7.55  |
| 75% 이상  | 0.83      | 99.17  | 89.38     | 1.05  | 8.41  | 1.16 | 1.32      | 16.69 | 81.99 | 74.15  | 0.27   | 25.57 |

주: 근로소득 비중과 사업소득 비중은 종합소득 대비 비중을 의미하며, 이때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금을 제외한 재산소득의 합산액으로 정의되었음. '0%, 비관측'의 경우 종합소득 금액이 0이거나, 근로소득 금액이 0%인 것을 의미함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14〉 개인의 특성별 사회보험료 및 결정세액(1/2): 기준경제

(단위: 만원)

| 구분       | 준조세   |        |        |        | 결정세액   |
|----------|-------|--------|--------|--------|--------|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보험료 합산 |        |
| 종사상지위    |       |        |        |        |        |
| 무직무급     | 0.00  | 0.00   | 9.40   | 9.40   | 18.86  |
| 상용       | 33.78 | 124.57 | 147.17 | 305.75 | 331.64 |
| 임시일용     | 7.93  | 33.20  | 42.77  | 83.93  | 45.31  |
| 1인자영, 특고 | 0.00  | 104.39 | 55.06  | 157.80 | 236.68 |
| 연령대 구분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보험료 합산 | 결정세액   |
| 29세 이하   | 2.26  | 11.53  | 11.11  | 24.86  | 9.54   |
| 30~39    | 20.50 | 99.23  | 92.72  | 212.81 | 179.13 |
| 40~55    | 21.56 | 106.47 | 107.29 | 235.93 | 278.76 |
| 56~65    | 10.32 | 41.07  | 62.87  | 114.59 | 158.25 |
| 65세 이상   | 0.00  | 0.00   | 25.12  | 25.12  | 58.62  |
| 가구원 유형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보험료 합산 | 결정세액   |
| 가구주      | 17.16 | 80.61  | 95.69  | 193.61 | 252.92 |
| 배우자      | 6.79  | 32.64  | 37.68  | 76.58  | 69.29  |
| 자녀       | 3.15  | 16.35  | 15.39  | 34.77  | 14.84  |
| 가구유형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보험료 합산 | 결정세액   |
| 단독       | 7.53  | 40.57  | 44.70  | 92.94  | 80.08  |
| +배우자     | 4.70  | 21.16  | 42.86  | 68.68  | 112.82 |
| +배우자, 자녀 | 12.26 | 57.78  | 61.61  | 131.62 | 147.45 |
| 성별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보험료 합산 | 결정세액   |
| 남성       | 14.40 | 68.18  | 79.08  | 161.79 | 207.13 |
| 여성       | 5.67  | 27.48  | 31.31  | 64.11  | 52.76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15〉 개인의 특성별 사회보험료 및 결정세액(2/2): 기준경제

(단위: 만원)

| 구분             | 준조세   |        |        |        | 조세          |
|----------------|-------|--------|--------|--------|-------------|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보험료 합산 |             |
| <b>근로소득</b>    |       |        |        |        | <b>결정세액</b> |
| 없음             | 0.00  | 14.79  | 13.84  | 28.13  | 51.94       |
| 1천만원 이하        | 1.41  | 10.74  | 18.47  | 30.37  | 26.05       |
| 3천만원 이하        | 12.00 | 58.21  | 60.83  | 131.03 | 48.52       |
| 6천만원 이하        | 31.94 | 145.56 | 136.62 | 314.64 | 192.86      |
| 6천만원 이상        | 61.68 | 180.90 | 286.08 | 529.33 | 988.94      |
| <b>사업소득</b>    |       |        |        |        | <b>결정세액</b> |
| 없음             | 11.09 | 40.85  | 53.60  | 105.74 | 112.43      |
| 1천만원 이하        | 6.74  | 35.64  | 45.85  | 88.57  | 71.95       |
| 3천만원 이하        | 1.99  | 67.65  | 57.95  | 127.95 | 167.56      |
| 6천만원 이하        | 0.81  | 199.17 | 97.20  | 300.57 | 415.52      |
| 6천만원 이상        | 0.66  | 279.70 | 117.18 | 401.63 | 1604.36     |
| <b>종합소득</b>    |       |        |        |        | <b>결정세액</b> |
| 없음             | 0.00  | 0.02   | 0.78   | 0.80   | 0.36        |
| 1천만원 이하        | 0.45  | 1.86   | 10.02  | 12.33  | 9.70        |
| 3천만원 이하        | 8.62  | 45.90  | 52.69  | 107.46 | 38.95       |
| 6천만원 이하        | 23.39 | 137.20 | 118.12 | 279.69 | 203.41      |
| 6천만원 이상        | 51.63 | 190.28 | 261.47 | 504.53 | 999.68      |
| <b>근로소득 비중</b> |       |        |        |        | <b>결정세액</b> |
| 0%, 비관측        | 0.65  | 27.24  | 26.38  | 53.59  | 94.99       |
| 25% 이하         | 1.09  | 86.67  | 72.00  | 159.08 | 398.52      |
| 50% 이하         | 3.86  | 56.69  | 72.72  | 133.46 | 226.26      |
| 75% 이하         | 0.13  | 0.00   | 6.76   | 6.90   | 0.00        |
| 75% 이상         | 14.91 | 56.05  | 67.62  | 138.72 | 134.87      |
| <b>사업소득 비중</b> |       |        |        |        | <b>결정세액</b> |
| 0%, 비관측        | 14.88 | 56.19  | 73.12  | 144.54 | 155.29      |
| 25% 이하         | 14.60 | 69.36  | 82.57  | 167.44 | 150.83      |
| 50% 이하         | 3.90  | 50.74  | 42.75  | 96.82  | 145.65      |
| 75% 이하         | 0.00  | 0.00   | 1.50   | 1.50   | 10.32       |
| 75% 이상         | 0.03  | 26.29  | 15.27  | 40.66  | 69.31       |

주: 근로소득 비중과 사업소득 비중은 종합소득 대비 비중을 의미하며, 이때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금을 제외한 재산소득의 합산액으로 정의되었음. '0%, 비관측'의 경우 종합소득 금액이 0이거나, 근로소득 금액이 0%인 것을 의미함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16〉 가구특성별 사회보험 및 소득신고 유형(1/3): 기준경제

(단위: %)

| 구분         | 고용보험 가입유형 |       | 국민연금 가입유형 |       |       |      | 건강보험 가입유형 |       |       | 소득신고유형 |       |
|------------|-----------|-------|-----------|-------|-------|------|-----------|-------|-------|--------|-------|
|            | 미가입       | 직장가입  | 미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임의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피부양자  | 신고안함   | 연말정산  |
| 가구주 종사상지위  | 미가입       | 직장가입  | 미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임의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피부양자  | 신고안함   | 연말정산  |
| 무직무급       | 0.82      | 5.93  | 94.37     | 3.96  | 0.22  | 1.39 | 5.43      | 25.05 | 69.46 | 58.44  | 22.75 |
| 상용         | 4.57      | 53.23 | 56.47     | 41.26 | 0.98  | 1.26 | 53.95     | 5.84  | 40.17 | 32.36  | 56.93 |
| 임시일용       | 15.95     | 59.02 | 73.78     | 22.15 | 0.75  | 3.31 | 50.22     | 4.60  | 45.16 | 18.41  | 71.09 |
| 1인자영, 특고   | 0.91      | 9.11  | 74.75     | 6.58  | 15.08 | 3.51 | 7.96      | 38.44 | 53.53 | 35.26  | 16.21 |
| 가구주 연령대 구분 | 미가입       | 직장가입  | 미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임의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피부양자  | 신고안함   | 연말정산  |
| 29세 이하     | 4.24      | 70.57 | 36.63     | 59.88 | 3.49  | 0.00 | 68.78     | 10.12 | 21.10 | 9.07   | 78.75 |
| 30~39      | 3.92      | 46.74 | 54.83     | 42.01 | 3.16  | 0.00 | 47.48     | 8.56  | 43.96 | 38.58  | 50.55 |
| 40~55      | 5.18      | 36.96 | 61.57     | 32.57 | 5.82  | 0.00 | 37.99     | 13.66 | 48.30 | 39.14  | 45.87 |
| 56~65      | 6.18      | 41.31 | 62.68     | 25.15 | 4.93  | 7.13 | 40.74     | 21.93 | 37.22 | 21.74  | 52.05 |
| 65세 이상     | 2.67      | 17.94 | 96.36     | 2.19  | 0.20  | 1.23 | 13.45     | 19.71 | 66.82 | 48.66  | 27.98 |
| 가구유형       | 미가입       | 직장가입  | 미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임의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피부양자  | 신고안함   | 연말정산  |
| 단독         | 5.09      | 37.10 | 73.09     | 21.64 | 3.71  | 1.56 | 34.91     | 20.78 | 44.31 | 33.37  | 46.60 |
| +배우자       | 3.87      | 24.78 | 83.32     | 10.34 | 2.28  | 3.99 | 22.98     | 19.99 | 56.97 | 36.12  | 33.63 |
| +배우자, 자녀   | 4.30      | 35.26 | 65.12     | 29.66 | 4.02  | 1.12 | 35.27     | 12.43 | 52.23 | 42.49  | 43.41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17〉 가구특성별 사회보험 및 소득신고 유형(2/3): 기준경제

(단위: %)

| 구분      | 고용보험 가입유형 |       | 국민연금 가입유형 |       |       |      | 건강보험 가입유형 |       |       | 소득신고유형 |       |        |
|---------|-----------|-------|-----------|-------|-------|------|-----------|-------|-------|--------|-------|--------|
|         | 미가입       | 직장가입  | 미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임의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피부양자  | 신고안함   | 연말정산  | 종합소득   |
| 근로소득    |           |       |           |       |       |      |           |       |       |        |       |        |
| 없음      | 0.00      | 1.94  | 92.26     | 0.27  | 5.54  | 1.84 | 0.63      | 28.01 | 71.27 | 66.08  | 0.00  | 22.05  |
| 1천만원 이하 | 0.00      | 36.09 | 87.42     | 7.48  | 2.54  | 2.49 | 19.38     | 21.76 | 58.80 | 20.03  | 61.40 | 13.72  |
| 3천만원 이하 | 8.86      | 43.58 | 65.44     | 26.93 | 4.37  | 3.25 | 45.20     | 15.92 | 38.86 | 24.03  | 57.75 | 12.28  |
| 6천만원 이하 | 5.64      | 50.41 | 57.04     | 38.19 | 2.78  | 1.90 | 50.25     | 10.52 | 39.15 | 27.26  | 59.99 | 10.80  |
| 6천만원 이상 | 7.54      | 46.71 | 57.37     | 40.40 | 1.24  | 0.98 | 50.97     | 6.96  | 42.06 | 33.92  | 55.52 | 17.16  |
| 사업소득    |           |       |           |       |       |      |           |       |       |        |       |        |
| 없음      | 5.09      | 37.81 | 74.06     | 24.18 | 0.20  | 1.52 | 36.25     | 11.82 | 51.89 | 40.85  | 49.47 | 7.60   |
| 1천만원 이하 | 4.68      | 33.87 | 70.61     | 25.56 | 1.99  | 1.77 | 33.61     | 15.83 | 50.48 | 34.52  | 42.95 | 34.10  |
| 3천만원 이하 | 2.10      | 20.82 | 69.23     | 14.55 | 12.36 | 3.86 | 19.35     | 32.45 | 48.20 | 27.89  | 20.49 | 100.00 |
| 6천만원 이하 | 1.61      | 15.35 | 63.49     | 12.18 | 20.06 | 4.27 | 14.32     | 38.75 | 46.93 | 35.09  | 17.25 | 100.00 |
| 6천만원 이상 | 2.25      | 9.50  | 67.42     | 8.43  | 21.37 | 2.30 | 9.59      | 35.55 | 54.37 | 37.36  | 11.52 | 100.00 |
| 종합소득    |           |       |           |       |       |      |           |       |       |        |       |        |
| 없음      | 0.00      | 1.29  | 99.18     | 0.00  | 0.00  | 0.82 | 0.07      | 12.86 | 87.07 | 99.14  | 0.00  | 0.24   |
| 1천만원 이하 | 0.00      | 18.68 | 95.76     | 3.16  | 0.05  | 1.00 | 8.92      | 19.13 | 71.92 | 55.03  | 31.66 | 10.56  |
| 3천만원 이하 | 6.91      | 34.42 | 73.94     | 19.56 | 3.33  | 3.14 | 34.80     | 21.20 | 43.97 | 24.38  | 47.07 | 30.52  |
| 6천만원 이하 | 4.41      | 40.62 | 62.49     | 29.18 | 5.39  | 2.92 | 40.07     | 17.31 | 42.60 | 29.72  | 47.78 | 32.92  |
| 6천만원 이상 | 6.47      | 41.52 | 58.18     | 35.54 | 4.82  | 1.36 | 44.60     | 12.65 | 42.66 | 32.57  | 48.63 | 32.19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18〉 가구특성별 사회보험 및 소득신고 유형(3/3): 기준경제

(단위: %)

| 구분      | 고용보험 가입유형 |       | 국민연금 가입유형 |       |       |      | 건강보험 가입유형 |       |       | 소득신고유형 |       |       |
|---------|-----------|-------|-----------|-------|-------|------|-----------|-------|-------|--------|-------|-------|
|         | 미가입       | 직장가입  | 미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임의가입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피부양자  | 신고안함   | 연말정산  | 종합소득  |
| 근로소득 비중 |           |       |           |       |       |      |           |       |       |        |       |       |
| 0%, 비관측 | 0.00      | 2.06  | 90.95     | 0.33  | 6.59  | 2.03 | 0.74      | 30.88 | 68.28 | 59.82  | 0.00  | 39.50 |
| 25% 이하  | 0.81      | 15.19 | 77.18     | 7.22  | 12.00 | 3.60 | 11.66     | 36.17 | 52.17 | 28.38  | 21.47 | 86.07 |
| 50% 이하  | 2.90      | 25.54 | 68.69     | 15.89 | 11.82 | 3.61 | 22.19     | 29.43 | 48.38 | 25.43  | 32.72 | 66.44 |
| 75% 이하  | 4.43      | 40.41 | 67.64     | 23.65 | 5.98  | 2.73 | 38.23     | 19.44 | 42.33 | 18.78  | 41.97 | 0.00  |
| 75% 이상  | 6.46      | 46.10 | 65.47     | 32.16 | 0.67  | 1.65 | 45.37     | 8.96  | 45.63 | 33.49  | 60.67 | 4.01  |
| 사업소득 비중 |           |       |           |       |       |      |           |       |       |        |       |       |
| 0%, 비관측 | 5.48      | 40.60 | 72.15     | 26.02 | 0.21  | 1.58 | 39.00     | 11.74 | 49.21 | 36.41  | 53.24 | 12.08 |
| 25% 이하  | 6.09      | 41.95 | 62.31     | 32.87 | 2.55  | 2.19 | 42.30     | 12.50 | 45.12 | 29.93  | 52.42 | 21.74 |
| 50% 이하  | 3.22      | 30.98 | 65.92     | 22.02 | 9.29  | 2.62 | 30.13     | 23.83 | 45.88 | 24.82  | 32.71 | 63.75 |
| 75% 이하  | 1.94      | 16.50 | 71.99     | 12.62 | 11.79 | 3.59 | 15.14     | 32.31 | 52.56 | 33.59  | 21.37 | 7.55  |
| 75% 이상  | 0.14      | 4.33  | 84.44     | 1.80  | 11.19 | 2.57 | 2.70      | 32.47 | 64.83 | 57.34  | 3.36  | 25.57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19〉 가구의 특성별 사회보험료 및 결정세액(1/2): 기준경제

(단위: 만원)

| 구분       | 준조세   |        |        |        | 조세     |
|----------|-------|--------|--------|--------|--------|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보험료 합산 |        |
| 종사상지위    |       |        |        |        | 결정세액   |
| 무직무급     | 2.90  | 14.39  | 42.27  | 59.56  | 79.80  |
| 상용       | 49.24 | 185.18 | 221.46 | 454.08 | 510.19 |
| 임시일용     | 13.41 | 59.03  | 77.24  | 147.55 | 91.30  |
| 1인자영, 특고 | 5.42  | 135.32 | 93.74  | 234.48 | 320.21 |
| 연령대 구분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보험료 합산 | 결정세액   |
| 29세 이하   | 21.94 | 108.40 | 90.60  | 220.94 | 139.83 |
| 30~39    | 41.04 | 194.95 | 180.64 | 416.52 | 388.03 |
| 40~55    | 40.28 | 197.95 | 197.71 | 433.35 | 509.07 |
| 56~65    | 24.96 | 110.27 | 141.04 | 275.44 | 299.90 |
| 65세 이상   | 2.12  | 9.52   | 45.74  | 57.38  | 94.53  |
| 가구유형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보험료 합산 | 결정세액   |
| 단독       | 7.53  | 40.57  | 44.56  | 92.66  | 80.08  |
| +배우자     | 9.42  | 41.86  | 84.61  | 135.66 | 217.99 |
| +배우자, 자녀 | 45.54 | 214.23 | 226.26 | 483.62 | 544.61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20〉 가구의 특성별 사회보험료 및 결정세액(2/2): 기준경제

(단위: %)

| 구분             | 준조세   |        |        |        | 조세          |
|----------------|-------|--------|--------|--------|-------------|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보험료 합산 |             |
| <b>근로소득</b>    |       |        |        |        | <b>결정세액</b> |
| 없음             | 0.00  | 33.93  | 40.25  | 74.18  | 149.37      |
| 1천만원 이하        | 1.39  | 21.23  | 34.70  | 56.96  | 71.44       |
| 3천만원 이하        | 10.81 | 79.21  | 81.40  | 169.11 | 129.17      |
| 6천만원 이하        | 31.12 | 156.03 | 146.05 | 331.07 | 197.39      |
| 6천만원 이상        | 70.44 | 257.24 | 322.57 | 649.55 | 860.00      |
| <b>사업소득</b>    |       |        |        |        | <b>결정세액</b> |
| 없음             | 26.19 | 96.63  | 127.02 | 249.72 | 268.04      |
| 1천만원 이하        | 28.76 | 113.45 | 145.12 | 287.11 | 288.92      |
| 3천만원 이하        | 13.80 | 111.70 | 118.10 | 243.09 | 264.70      |
| 6천만원 이하        | 10.40 | 240.23 | 149.93 | 384.22 | 472.05      |
| 6천만원 이상        | 6.75  | 313.81 | 158.95 | 467.90 | 1448.01     |
| <b>종합소득</b>    |       |        |        |        | <b>결정세액</b> |
| 없음             | 0.00  | 0.00   | 3.35   | 3.35   | 0.62        |
| 1천만원 이하        | 0.55  | 1.19   | 16.80  | 18.53  | 22.85       |
| 3천만원 이하        | 6.51  | 33.35  | 60.25  | 100.09 | 54.50       |
| 6천만원 이하        | 21.60 | 123.30 | 121.12 | 265.31 | 173.87      |
| 6천만원 이상        | 57.63 | 257.17 | 285.10 | 597.06 | 821.51      |
| <b>근로소득 비중</b> |       |        |        |        | <b>결정세액</b> |
| 0%, 비관측        | 0.00  | 40.36  | 47.23  | 87.59  | 177.52      |
| 25% 이하         | 2.75  | 120.84 | 111.31 | 229.79 | 547.00      |
| 50% 이하         | 10.84 | 172.52 | 133.24 | 307.24 | 362.24      |
| 75% 이하         | 21.18 | 125.90 | 139.51 | 283.52 | 300.55      |
| 75% 이상         | 36.06 | 135.78 | 163.38 | 335.03 | 335.93      |
| <b>사업소득 비중</b> |       |        |        |        | <b>결정세액</b> |
| 0%, 비관측        | 28.18 | 103.98 | 136.44 | 268.48 | 288.40      |
| 25% 이하         | 40.10 | 158.95 | 195.43 | 394.12 | 436.12      |
| 50% 이하         | 17.12 | 139.50 | 122.86 | 274.19 | 242.37      |
| 75% 이하         | 7.78  | 160.92 | 113.48 | 274.43 | 310.25      |
| 75% 이상         | 0.34  | 82.03  | 54.90  | 136.01 | 258.57      |

주: 근로소득 비중과 사업소득 비중은 종합소득 대비 비중을 의미하며, 이때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금을 제외한 재산소득의 합산액으로 정의되었음. '0%, 비관측'의 경우 종합소득 금액이 0이거나, 근로소득 금액이 0%인 것을 의미함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11〉~〈표 V-13〉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유형과 소득신고 유형에 관한 기초통계량을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소득유형별 소득금액, 소득유형별 소득 비중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V-14〉~〈표 V-15〉에서는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결정세액에 관한 기초통계량을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소득유형별 소득금액, 소득유형별 소득 비중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V-16〉~〈표-20〉은 〈표 V-11〉~〈표 V-15〉와 유사한 기초통계량을 보여주되, 단, 개인이 아닌 가구 관점에서 기초통계량이 작성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한편, 표에서 건강보험제도상 ‘피부양자’는 ‘지역세대원’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무직, 무급의 가구원이 지역세대원인 경우, 지역세대주가 한꺼번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가구 단위 기초통계량에서 사회보험 가입 유형은 가구주의 가입 유형을 의미한다.

사회보험 가입 유형이나 소득신고 유형에 관한 변수는 앞서 설명한 일정한 기준하에 연구자가 정의한 것, 즉 추정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표에서 제시된 기초통계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 유형 및 소득신고 유형에 관한 연구자의 추정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표 V-11〉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는 무직 무급자가 83%에 이르고, 그다음으로 1인 자영자나 특고(40%), 임시일용직(36%) 순으로 나타나며, 상용직은 4.45%로 가장 낮다. 비상용직의 경우 소득수준이 실제로 낮거나, 과세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소득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직관적이라고 판단된다. 사회보험료나 결정세액 역시 그 결과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표 V-15〉를 살펴보자. 사회보험료의 경우, 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사회보험료가 같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조세의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원칙 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의 결정세액(51만원)이 근로소득 1천만원 이하 개인의 결정세액(26.05만원)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가구 단위의 경우, 가구 전체의 소득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표 V-20〉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의 결정세액(149만원)이 근로소득 1천만원 이

하 가구의 결정세액(71만원) 대비 2배가량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 비공식 취업소득 추정 결과

본 절에서는 제2절에서의 추정 결과를 활용하여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상 가구원들의 비공식소득 발생 확률 및 규모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표 V-21>은 비공식소득의 유형별 발생 확률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설문조사상 전체 표본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는 ‘전체’ 열에, 설문조사상 하위표본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는 ‘소득구간별’ 열에 제시되어 있다.

‘소득구간별’ 열에 제시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배달 및 퀵서비스, 돌봄·가사·과외,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된 비공식소득 발생 확률은 각각 4.4%, 9.4%, 5.7%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 결과(<표 V-4> 참조)와 비교하면, 배달 및 퀵서비스는 발생 확률이 다소 낮게, 돌봄·가사·과외는 발생 확률이 다소 높게 추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하 제5절에서 소개되는 분석 결과들을 이해할 때 독자들은 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비공식소득 발생 확률의 과소·과대 추정 가능성을 감안하는 가운데 가구 혹은 가구원 특성별 비공식소득 발생 확률을 살펴보면, 제2절에서의 추정 결과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배달 및 퀵서비스 관련 비공식소득 발생 확률은 상용직에 비해 일용직 혹은 자영업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표 V-5>에 제시된 추정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돌봄·가사·과외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해당 비공식소득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 역시 <표 V-7>에 보고된 추정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비공식소득 발생 확률에 이어 규모 역시 추정이 가능한데, 구체적인 추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우선 발생 확률 추정 시와 마찬가지로

제2절의 추정 결과를 적용함으로써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상 각 가구원들의 비공식소득 발생 규모를 그 유형별로 추정한다. 이후 추정된 비공식소득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표본에서 제외한다.<sup>63)</sup>, <sup>64)</sup> 한편 설문조사에서 비공식소득을 보유한 응답자 중 4% 미만(11명)만이 복수 유형의 비공식소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 가구원당 한 가지 유형의 비공식소득만을 보유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세 가지 비공식소득 유형들 중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유형을 해당 가구원이 보유하는 비공식소득 유형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이상의 절차를 걸쳐 추정한 비공식소득 규모는 <표 V-22>에 제시되어 있는데, 각 유형별 평균 추정금액은 설문조사상 금액과 유사한 편이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상 배달 및 퀵서비스 관련 연간 실질 비공식소득 금액은 306.9만원, 돌봄·가사·과외 관련은 474.0만원, 온라인 콘텐츠 제작 관련은 194.5만원으로 각각 집계되고 있는데, 배달 및 퀵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제작의 경우 양자 간 다소 차이가 목격되나 돌봄·가사·과외의 경우 그 수치가 매우 근접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전체 비공식소득 규모는 그 평균이 306.4만원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 역시 설문조사상 평균금액 319.8만원과 비교하여 매우 유사한 수준이다. 따라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상 가구원들을 대상으로 추정된 비공식소득의 규모는 어느 정도 현실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이하 제5절에서의 결과 및 논의 역시 현실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63) 구체적으로 배달 및 퀵서비스 관련 비공식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돌봄·가사·과외 관련 비공식소득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온라인 콘텐츠 제작 관련 비공식소득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표본에서 제외되었다. 이때 3,000만원 및 2,400만원의 기준은 설문조사에서 관측되는 최대치보다 큰 수치들 가운데 임의로 선택된 것임을 밝혀둔다.

64)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비공식소득 규모가 과대 추정된 표본을 제외한 후에는 총 26,990개의 관측치가 남게 된다.

〈표 V-21〉 비공식소득 발생 확률 추정 결과: 기초통계량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

| 구분     |            | 배달, 퀵서비스 |        | 돌봄, 가사, 과외 |        | 온라인 콘텐츠 |        |
|--------|------------|----------|--------|------------|--------|---------|--------|
|        |            | 전체       | 소득 구간별 | 전체         | 소득 구간별 | 전체      | 소득 구간별 |
| 전체     |            | .044     | .044   | .098       | .094   | .042    | .057   |
| 가구 유형  | 1인 가구      | .068     | .067   | .055       | .057   | .022    | .028   |
|        | 2인 가구      | .048     | .051   | .058       | .055   | .031    | .042   |
|        | (2+n)인 가구  | .037     | .037   | .132       | .129   | .051    | .065   |
| 지역     | 수도권        | .042     | .043   | .084       | .082   | .051    | .069   |
|        | 비수도권       | .045     | .045   | .106       | .101   | .036    | .049   |
| 성별     | 남성         | .040     | .044   | .053       | .050   | .025    | .036   |
|        | 여성         | .047     | .044   | .140       | .135   | .058    | .076   |
| 교육 수준  | 고졸 미만      | .085     | .092   | .013       | .025   | .008    | .031   |
|        | 고졸         | .049     | .049   | .136       | .127   | .053    | .067   |
|        | 대학(3년제 이하) | .042     | .041   | .074       | .075   | .024    | .031   |
|        | 대학(4년제 이상) | .027     | .026   | .079       | .076   | .042    | .060   |
|        | 대학원 이상     | .017     | .012   | .014       | .012   | .021    | .052   |
| 종사상 지위 | 상용         | .010     | .013   | .016       | .016   | .020    | .029   |
|        | 일용         | .173     | .176   | .031       | .033   | .023    | .029   |
|        | 기타         | .097     | .099   | .059       | .063   | .035    | .039   |
|        | 자영업자       | .067     | .068   | .024       | .026   | .017    | .038   |
| 가구주 여부 | 가구주        | .048     | .051   | .034       | .035   | .015    | .023   |
|        | 배우자        | .049     | .044   | .131       | .128   | .049    | .065   |
|        | 자녀         | .024     | .025   | .185       | .169   | .088    | .119   |
| 나이     | 35세 미만     | .028     | .029   | .173       | .162   | .090    | .121   |
|        | 35~49세     | .038     | .036   | .083       | .079   | .031    | .043   |
|        | 50세 이상     | .056     | .058   | .068       | .067   | .022    | .030   |
| 소득     | 3천만원 미만    | .053     | .051   | .148       | .141   | .057    | .069   |
|        | 3천만원 이상    | .028     | .031   | .010       | .011   | .015    | .035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22〉 비공식소득 규모 추정 결과: 기초통계량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

(단위: 만원)

| 구분     |            | 전체    | 비공식소득    |            |         |
|--------|------------|-------|----------|------------|---------|
|        |            |       | 배달, 킷서비스 | 돌봄, 가사, 과외 | 온라인 콘텐츠 |
| 전체     |            | 306.4 | 350.6    | 482.5      | 128.6   |
| 가구 유형  | 1인 가구      | 372.2 | 181.5    | 929.6      | 73.5    |
|        | 2인 가구      | 380.6 | 323.3    | 853.0      | 173.7   |
|        | (2+n)인 가구  | 279.1 | 476.6    | 329.3      | 99.1    |
| 지역     | 수도권        | 246.5 | 216.9    | 558.1      | 124.5   |
|        | 비수도권       | 340.0 | 400.9    | 455.2      | 132.7   |
| 성별     | 남성         | 327.9 | 445.4    | 462.8      | 130.5   |
|        | 여성         | 286.3 | 145.5    | 490.9      | 126.8   |
| 교육 수준  | 고졸 미만      | 572.3 | 241.8    | 1,319.3    | 561.7   |
|        | 고졸         | 327.3 | 341.4    | 466.7      | 110.2   |
|        | 대학(3년제 이하) | 320.4 | 378.1    | 476.6      | 82.9    |
|        | 대학(4년제 이상) | 205.1 | 441.8    | 312.8      | 101.6   |
|        | 대학원 이상     | 155.2 | 462.3    | 635.2      | 97.7    |
| 종사상 지위 | 상용         | 180.3 | 314.9    | 339.0      | 87.9    |
|        | 일용         | 154.0 | 154.6    | 418.6      | 47.0    |
|        | 기타         | 261.2 | 171.3    | 572.4      | 223.0   |
|        | 자영업자       | 586.4 | 732.3    | 797.4      | 188.9   |
| 가구주 여부 | 가구주        | 349.6 | 385.8    | 647.4      | 112.7   |
|        | 배우자        | 267.3 | 184.7    | 428.2      | 140.1   |
|        | 자녀         | 244.4 | 477.6    | 292.4      | 141.5   |
| 나이     | 35세 미만     | 232.4 | 413.5    | 319.4      | 133.7   |
|        | 35~49세     | 220.4 | 386.9    | 292.3      | 63.5    |
|        | 50세 이상     | 408.1 | 322.5    | 708.6      | 193.5   |
| 소득     | 3천만원 미만    | 313.7 | 175.3    | 491.0      | 160.3   |
|        | 3천만원 이상    | 293.4 | 640.2    | 392.4      | 104.7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5. 비공식 취업소득 반영 이후 과세 및 지원의 변화 양상

〈표 V-23〉에서는 비공식 취업소득을 반영했을 때의 사회보험료 및 조세 수입, 근로장려세제와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정부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단위는 %로, 만약 어떤 항목의 값이 0.3이라면 이는 해당 시나리오하에서 해당 항목의 정부 수입 혹은 지원 금액이 기준경제 대비 0.3%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총 8가지의 시나리오를 고려한다. 첫 번째 행에서는 배달 및 퀵서비스(B), 돌봄 및 레슨(C), 콘텐츠 제작자(D) 등 3개 분야의 비공식 취업소득을 모두 반영한 결과를 보여준다. 두 번째는 그렇게 추정된 소득의 50%만 제도상으로 반영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그다음 3개 행에서는 B, C, D 유형 각각의 독립적인 제도 및 정책에의 영향을 보여준다. 마지막 3개 행에서는 2개 유형만을 고려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해당 표에서의 열(column)의 경우, 순서대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의 총합, 소득세, 근로장려금 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항목별 변화율을 보여준다.

결과를 해석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통해 시뮬레이션 분석의 한계점을 몇 가지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변화율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의 비공식소득을 과도하게 추정했거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제도의 수급자격과 수금액의 결정 과정에 제도 자체를 반영하기보다는 추정식으로 도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비공식소득의 금액이 0원으로 추정된 경우도 있지만, 상위 임금근로자에 해당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는 비공식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본 시뮬레이션 모형에서는 제도 안의 소득 관련 임계치를 제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선형모형을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측면에서의 변화율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건강보험료 금액 자체가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과정에서 변화율을 계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자, 제도 간 차이 때문으로 보

인다. 이 부분은 좀 더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영향을 상호 비교하기보다는 각 제도하에서의 시나리오별 변화 양상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제 시나리오별로 결과를 해석해보자. 첫 번째 시나리오(B+C+D)의 경우 국민연금의 금액은 65% 증가, 건강보험은 1.60% 증가, 소득세는 7.31% 증가하되 근로장려금은 28%, 기초생활보장급여는 100%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장려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관찰되지 않아서 자격대상자에서 탈락되었던 가구가 새롭게 대상자로 포함되었기 때문이거나, 기존 점증 구간에 있었던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여 평탄구간 혹은 (정 수준 이하의) 점감구간에 속하는 것으로 구간별 소득수준이 이동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편, 고용보험상의 영향은 없는데, 본 모형에서는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이전의 2020년 귀속연도 소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있는 데다가, 현행 고용보험 제도하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비근로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여 고용보험상의 재정변화는 발견되지 않게 된다.

만약 비공식소득이 어떠한 이유에서 50% 정도만 반영되는 경우는 어떠할까? 이 경우 국민연금은 59.1%, 건강보험 1.23% 증가, 소득세 1.13% 증가, 근로장려금은 39.97% 증가, 기초생활보장급여는 10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의 비공식소득은 기여금을 낮추되 근로장려금 금액은 다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유형별 제도 및 정책에의 기여도는 어떻게 다른가? 먼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살펴보면, 돌봄 및 레슨(C)에서는 100% 삭감되고, 나머지의 경우 3~10%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급여자들이 돌봄이나 레슨 분야에 상대적으로 종사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콘텐츠 제작자의 소득을 추가로 고려했을 때, 소득세는 음(-)의 값이 나오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산출과정의 추정 결과가 비단조성(non-monotonicity)을 띠

는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배달 및 퀵서비스, 콘텐츠 제작자 분야만 고려하는 경우(B+D) 소득세는 4.55% 증가하고, 근로장려금은 4% 감소, 기초생활보장급여는 14.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것은 기존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에 새로운 소득이 포착되면서 수급대상 소득범위 밖으로 이탈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V-23〉 과세 및 지원의 변화 양상(기준경제 대비)

(단위: %)

| 시나리오 유형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금액총합 | 소득세   | 근로장려금 | 기초생활보장급여 |
|-----------|------|-------|------|-----------|-------|-------|----------|
| B+C+D     | 0.00 | 65.98 | 1.60 | 32.77     | 7.31  | 28.37 | -100.00  |
| (B+C+D)/2 | 0.00 | 59.01 | 1.23 | 29.28     | 1.13  | 39.97 | -100.00  |
| B         | 0.00 | 20.77 | 0.60 | 10.30     | 5.87  | 1.59  | -3.54    |
| C         | 0.00 | 14.94 | 0.51 | 7.49      | 2.79  | 31.80 | -100.00  |
| D         | 0.00 | 30.27 | 0.49 | 14.97     | -1.25 | -0.78 | -10.67   |
| B+C       | 0.00 | 35.71 | 1.11 | 17.80     | 8.63  | 29.79 | -100.00  |
| B+D       | 0.00 | 51.04 | 1.09 | 25.27     | 4.55  | -0.04 | -14.37   |
| C+D       | 0.00 | 45.21 | 1.00 | 22.46     | 1.48  | 31.23 | -100.00  |

주: 1) 여기에서 B는 배달 및 퀵서비스, C는 돌봄, 레슨 등 서비스, D는 콘텐츠 제작 분야의 비공식 추정소득임. 기준경제 대비 상대적인 변화율(%)을 보여주고 있음. 순서대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여금의 총합, 소득세, 근로장려금 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제시됨

2) (B+C+D)/2는 전체 파악된 비공식소득의 50%만 실제 제도에 반영되는 경우를 고려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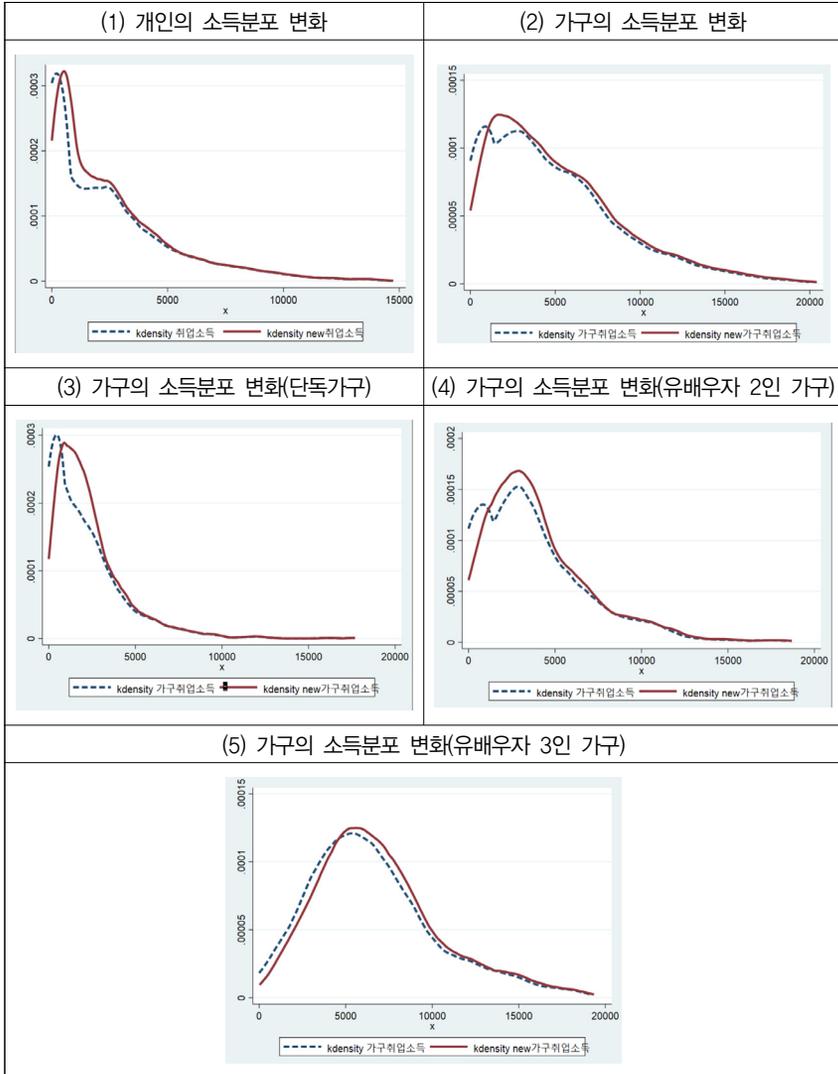
3) B, C, D, B+C, B+D, C+D는 각각 특정한 비공식소득만 고려한 경우를 의미함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그림 V-1]에서는 비공식소득의 취업소득 분포에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각 그래프에서 점선은 기준경제에서의 소득분포를 나타내고, 굵은 실선은 비공식소득이 파악된 이후의 소득분포를 나타낸다. 또한 여기에서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편의상 '취업소득'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그래프에서는 개인단위 소득변화와 가구단위 소득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단위는 1억 5,000만원까지로, 가구단위는 2억원까지로 그래프 구간을 한정하였다.

[그림 V-1] 비공식소득의 취업소득 분포에의 영향

(단위: 만원)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V-1](1)에서는 개인단위의 소득분포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저소득 구간에서 비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대략적으로 1,000만원에서 2,500만원 구간에서 양(+)의 소득변화가 두드러진다. 한편, 기준경제에서 소득이 저소득수준에 상대적으로 분포가 비정상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것은 여러 이유 중에, 소득기반의 복지혜택 제도하에서 의도적으로 취업소득을 늘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V-1]의 (1)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변화폭은 적으나 3,000만원에서 5,000만원 구간까지도 개인의 소득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분포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콘텐츠 제작자 등의 비공식소득이 최저 수준이 아닌 중위 수준의 소득계층에서도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V-1]의 (2)~[그림 V-1]의 (5)의 경우, 가구단위의 소득분포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V-1]의 (2)에서는 전체 가구 대상으로 소득변화를 보여주고, [그림 V-1]의 (3)에서는 단독가구, [그림 V-1]의 (4)에서는 유배우자 2인 가구, [그림 V-1]의 (5)는 유배우자 3인 가구의 경우를 보여준다. 이러한 그래프를 검토해본 결과, [그림 V-1]의 (2)에서 제시되는 불연속점(kink)이 2인의 유배우자 가구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연속은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 보유 여부 및 배우자의 비공식 취업활동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V-1]에서 비공식소득의 반영으로 7,000만원 수준의 가구소득 구간까지도 영향을 주되, 대부분의 변화는 5,000만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화한 가구소득 분포는 극점이 2,000만원 미만과, 2,000만~5,000만원 구간에 2개의 극점이 나타난다. 소득수준이 낮은 유배우자 2인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소득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패턴이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해서 단조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 Ⅵ. 논의 및 정책함의

---

### 1. 요약 및 논의

본고에서 저자들은 다음의 질문을 던진다. 만약, 포착되지 않았던 소득이 새롭게 과세당국에 의해 파악된다면, 정부 관점의 수입과 지출, 개인·가구 관점의 지원금 혜택 및 조세와 사회보험 부담금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하여 저자들은 ① 배달 및 퀵서비스, ② 돌봄, 레슨 등의 서비스, ③ 온라인 콘텐츠 제작 서비스 등 세 개의 비정형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분야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달 및 퀵서비스 부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1) 및 김빛마로·김문정(2021)에 따르면, 배달 및 퀵서비스 분야 인적용역 종사자들 중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들이 상당수 포함되고, 특히 폐쇄형 플랫폼으로 인적용역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당국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원을 플랫폼을 통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배달 퀵 서비스 부문의 비공식 취업소득이 파악되는 경우 근로장려세제나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의 정책함의가 클 수 있다.

두 번째로 연구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비공식 취업소득 분야는 돌봄 및 가사서비스 분야이다. 이 분야는 전통적으로 개인 간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분야로서 비공식 취업소득 소득의 분석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sup>65)</sup>

---

65) 가사서비스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가사서비스 제공자는 오랫동안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가사서비스의 대가 역시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져 가사서비스 제공자들은 오랜 기간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어, 공식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이 사용자로서 서비스 제공자들과 근로계약을 맺는다. 이 경우, 가사서비스 사용자는 가사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서비스 제

마지막 분석대상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서비스 분야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서비스와 관련된 국세청의 업종코드가 최근에는야 포함된 사례(2019년 9월 이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종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과세당국이 온라인 콘텐츠 활동에 대한 이해가 아직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만약 온라인 콘텐츠 제작 수입을 암호화폐로 지급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해외계좌에 수입을 예치하면 과세당국이 해당 소득을 포착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자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일반적인 국민 대상으로 해당 소득 활동 수행 여부, 국세청 소득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인과 가구의 특징에서 비정형 취업소득으로의 매핑을 추정하였고, 이렇게 추정된 매핑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투영하여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였다.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약, 새롭게 발굴한 비정형소득이 공식적인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는 경우, 소득세 수입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수입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은 줄어드는 반면, 근로장려세제 지출은 늘어날 수 있다. 만약, 새롭게 발굴한 비정형소득이 공식적인 소득이 높은 계층에 집중되는 경우,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수입이 모두 늘어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변화는 크지 않은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일부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새로운 유형의 취업소득활동이 활발해지는 경우에, 정부는 과세형평성 제고 및 소득재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일 제도가 아닌 여러 제도 간의 연계성과 상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학술적·정책적 기여도가 있다. 먼저, 플랫폼 근로자 등 비정형소득자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나 과제는 존재했지만, 소득신고 등의 측면에서 ‘비공식’소득을 추정하려는 노력은 본 연구

---

공기관에 이용요금을 지불하게 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자: 2022. 11. 15.).

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또한, 이렇게 추정된 비공식 비정형소득의 발생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기초생활보장급여, 근로장려세제 등의 여러 측면에 미치는 효과를 단일한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검토한 연구라는 점도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개별응답에만 기반한 설문조사에서 주로 포착되는 ‘소득 과소보고’와 연관된 측정오차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에 기반한) 보완자료 간의 간극을 활용하였다는 점도 기여점 중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기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시뮬레이션의 여러 단계에서 사용된 제도들을 추정할 때 OLS, Probit 모형을 가정하였는데, 이러한 가정이 실제 제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둘째, 자료의 시점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각 자료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 자료를 결합하여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였다. 독자들은 두 가지 문제로 인한 오류가 시뮬레이션 수행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20년 귀속연도 소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기 때문에, 2021년 7월 이후부터 도입된 특고·예수인 고용보험 제도와 이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제도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특히 이러한 마지막 한계점 때문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견되어도 고용보험의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도 큰 변동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므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의 급여혜택을 정부지출로 파악하지 못한 점도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분석 연도를 2021년 이후로 하고, 분석기법 고도화, 최근의 과세자료 및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활용 등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 2. 정책함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수 일자리 취업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세법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동시 발생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소득기반 사회보험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의 종합소득신고

를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용소득의 경우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 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없다. 인적용역 사업자 중에서도 음료배달, 방문판매, 보험설계사 등 특례 3개 업종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분리과세나 연말정산제도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비정형 취업소득이 확대되고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이 상당히 개선된 이 시점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보다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수입금액 등이 이미 전자 형태로 사전에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의 과정이 과거만큼 번거롭거나 복잡하지 않다. 또한, 전통적인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잠재적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말정산신고의 경험만 존재하는 임금근로자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신고 의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둘째,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세 및 사회보험료의 과세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공단과 과세당국 간의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상호 교류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사회보험 제도의 개별적 특성 및 관행에 따라 과세당국에 의해 협조받는 자료가 상이하다. 이러한 이질성은 물론 사회보험 제도 각각의 이질성에 기인한 면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제도의 사회보험 간 불필요한 이질성을 없애고, 그 이후에 과세당국에 의해 협조받는 자료에 일관성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복지세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 역시 사회보험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저자가 파악하기로는 과세당국은 소득신고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고 있지 않다. 단, 사회보험 가입 내역을 과세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소득신고자가 소득세 공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회보험료 납부이력을 과세당국에 신

고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금액을 낮추기 위하여 사회보험 납부 이력을 모두 신고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파악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보험 가입형태(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지역세대원 등)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가입현황 정보를 과세당국이 입수한 후, 사각지대에 속한 이들에 대한 정보를 다시 사회보험 공단에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사회보험공단과 과세당국 간의 행정자료 교환으로 인한 강압적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게 높아지는 집단의 상당한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 만약 그것이 집단 간 사회보험료 및 조세의 과세형평성에 기여하는 일이라면 제도적으로 그러한 과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소득(공식소득 및 추가로 파악된 비공식 취업활동 소득의 합계) 수준이 낮은 저소득 가구의 경우, 사회보험료와 조세의 추가적인 부담이 생계를 위협하거나, 이들 취약계층이 과세당국의 접근이 어려운 (현금거래 중심의) 비공식 영역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 및 조세 지출 차원의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비정형 취업소득 발생자 중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재정 정책 차원의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데, 이 경우 대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비정형 경제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근로장려세제나 고용장려금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단, 근로장려세제의 경우는 (사회보험 가입자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사이에 놓인) 차상위 계층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기 전까지는 근로장려세제를 전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국내 문헌〉

- 강문수·노기성·임영주·강인재·권선주·배득중·성명재·전병목,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방법과 추정치의 국제비교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5.
- 국세청, 『국세청 50년사』, 2016.
- \_\_\_\_\_, 『한 권으로 보는(All in One) 실시간 소득파악 해설』, 2021.
- 국세청 보도자료,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 2021. 10. 21.
- 김규철, 『새로운 데이터로 추정한 북한의 소득과 후생의 장기 추세: 1인당 GDP 추정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20.
- 김문정·김빛마로, 「플랫폼노무제공자의 현황 및 조세·재정 정책함의」, 조세재정브리프, 제130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김빛마로·김문정, 『플랫폼 공급자 소득정보 관련 실태조사 및 적시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기획재정부 연구용역), 2021.
- 김준영·권혜자·최기성·연보라·박비곤,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기본연구 2018-89, 2018.
- 김준영·장재호·김강호·박상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한국고용정보원 기본연구 2021-08, 2021.
- 김재진·김학수, 『증세 없는 세수확보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3.
- 김중희,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재정 정책논집』, 18(2), 2016, pp. 93~129.
- 노기성·김동준,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과 정책과제」, 『경제사회 여건변화

- 와 재정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2001, pp. 199~245.
- 노기성·윤여필,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과세기반 확충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7.
- 박수현, 「소득함수 추정법을 활용한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탈루율 분석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1, pp. 163~172.
- 배민근, 「우리나라 지하경제 비중 줄고 있다」, 『LG주간경제』, 864, LG경제연구원, 2005, pp. 34~38.
- 신상화, 「신종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른 과세상 쟁점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탁 자문원고, 2022.
- 신영임·강민지,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연구보고서 제18호, 국회예산정책처, 2014.
- 안종석·강성훈·오종현, 「소득세 Tax Gap 규모와 지하경제 규모 추정」, 「조세재정Brief」, 제41호, 2017.
- 안종석·김학수·박명호·강성훈·신상화·이동규, 『세목별 Tax Gap 추정과 조세 관련 지하경제 규모 추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안종석·성명재·전병목·정재호·박명호·우석진·빈기범,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10.
- 유일호, 「우리나라의 탈세규모 추정: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조세행정과 정책과제』, 1998, pp. 39~68.
- 장지연, 「플랫폼노동자의 규모와 특징」, 고용·노동브리프 제104호, 한국노동연구원, 2020.
- 장혜영 의원실 보도자료, 「프리랜서·특고 등 비임금 노동자 700만 명 넘었다」, 2022. 2. 8.
- 정홍준, 「호출형 플랫폼 기업의 고용관계: 음식배달업을 중심으로」, 『노동리뷰』 2021년 4월호(통권 제 193호), 한국노동연구원, 2021.
- 최영순, 「개인소득세의 탈세규모: 추정방법의 검토와 실증」, 『공공경제』, 한국재정학회, 제2권 제1호, 1997, pp. 226~254.
- 최인혁·정훈,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전환』, 국

- 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이용시 주의사항(공공용)」, 202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플랫폼 공급자 설문조사」, 2021.
- \_\_\_\_\_, 「비정형 취업소득 설문조사」, 2022.

## 〈외국 문헌〉

- Jenkins, Stephen P. and Fernando Rios-Avila, “Measurement error in earnings data: Replication of Meijer, Rohwedder, and Wansbeek’s mixture model approach to combining survey and register data,”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36(4), 2021, pp. 474~483.
- Onnis, L. and P. Tirelli, “Challenging the Popular Wisdom: New Estimates of the Unobserved Economy,” University of Milan - Bicocca Working Paper Series No. 184, 2010.
- Poniatowski, G., M. Bonch-Osmolovskiy, J. M. Duran, A. Esteller-More, and A. Smietanka, “Study and reports on the VAT gap in the EU-28 member states: 2019 final report,” *CASE Reports*, No. 500, 2019.
- Schneider, F., “Shadow Economies around the World: What do We Really Know?,”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1, 2005, pp. 598~642.
- Schneider, F., and A. Buehn, “Shadow Economies in Highly Developed OECD Countries: What are the Driving Forces?,” *Johannes Kepler University of Linz Working Paper*, No. 1317, 2013.
- Schneider, F., and A. Buehn, “Shadow Economy: Estimation Methods, Problems, Results and Open questions,” *Open Economics*, 1, 2018, pp. 1~29.
- Schneider, F., A. Buehn, and C. E. Montenegro, “Shadow Economies All over the World: New Estimates for 162 countries from 1999 to 2007,”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5356, 2010.

##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0%80%EC%82%AC%EC%84%9C%EB%B9%84%EC%8A%A4%EB%B2%95#undefined>, 검색일자: 2022. 11. 15.

\_\_\_\_\_,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0%80%EC%82%AC%EC%84%9C%EB%B9%84%EC%8A%A4%EB%B2%95#undefined>, 검색일자: 2022. 11. 15.

\_\_\_\_\_, 「소득세법」 제86조(소액부징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86%EC%A1%B0>, 검색일자: 2022. 11. 15.

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검색일자: 2022. 6. 26.

\_\_\_\_\_, 「1인 미디어 창작자 자주 묻는 질문·답변」,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5595&bbsId=30632#none>, 검색일자: 2022. 6. 26.

\_\_\_\_\_, 「신종업종 세무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 검색일자: 2022. 6. 24.

\_\_\_\_\_, 「세액계산 흐름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검색일자: 2022. 10. 8.

전자정부 누리집,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3&PAGE=3&opTitle=](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3&PAGE=3&opTitle=), 검색일자: 2022. 3. 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kostat.go.kr.](http://www.kostat.go.kr), 최종 검색일자: 2022. 11. 15.

---

## 부 록

---

### 1.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자료와 보완자료의 비교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조사자료와 보완자료의 차이를 보다 다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부그림 1]에서 양자의 분포를 비교하였다. 조사자료와 보완자료의 분포는 대체로 유사한 편인데, 조사자료에서 0으로 보고된 관측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그림 2]는 조사자료와 보완자료 간 차이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령 가. 근로소득 항목의 경우 조사자료상 근로소득에서 보완자료상 근로소득을 차감한 후 그 값들의 분포를 도해하고 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 공적 이전소득, 세금, 공적연금·사회보험료의 경우 그 분포가 대체로 대칭적인 반면, 재산소득의 경우 조사자료 값이 보완자료 값보다 작은 관측치가 다수임을 관찰할 수 있다.

[부그림 3]은 조사자료를 가로축으로, 보완자료를 세로축으로 하는 산포도이다.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세금, 공적연금·사회보험료의 경우 앞서 살펴본 그림들의 특징과 부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경우 앞서 살펴본 그림들의 특징과 부합되면서도 그것들에서는 포착되지 않았던 특징을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설문조사에서 확보된 조사자료의 보완 절차가 소득별로 차이가 있음과 관련이 있다. 가령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로 확보된 조사자료가 행정자료로 대체·보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외적으로 “행정자료 기준으로 과세 미신고 금액 이하인 경우,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중 큰 금액”(〈부표 1〉 참조)이 사용되는 것으로 공지되고 있다. 따라서 [부그림 3]의 가. 근로소득은 이러한 행정자료 보완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업소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조사자료를 사용하되 무응답의 경우 행정자료로 보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가구원 간 사업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구단위에서 보완”(〈부표 1〉 참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지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자료를 살펴보면, 조사자료상 양의 사업소득을 가진 가구원의 사업소득 대신 그 외 가구원의 사업소득이 보완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추후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소득과 보완소득 간 관계를 추정할 때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을 합한 ‘총소득’을 정의하고 이를 추정에 사용하도록 한다.

〈부표 1〉 「가계금융복지조사」 항목별 행정자료 보완 기준

| 항목           | 항목별 보완기준   |
|--------------|--|
| 근로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방향) 행정자료로 조사자료 대체 보완</li> <li>◦ (예외사항) 행정자료 기준으로 과세미신고 금액 이하인 경우,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중 큰 금액을 사용함으로써 국제청 미신고 소득에 대한 정확성 확보</li> <li>–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 분류 차이에 따른 중복으로 추정되는 경우(행정자료에는 근로소득은 없고 사업소득이 있는데, 조사자료에는 반대인 경우는) 조사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가구단위 소득의 정확성 확보</li> </ul> |
| 사업소득<br>임대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방향) 기본적으로 조사자료를 사용하나, 무응답한 경우는 행정자료로 보완</li> <li>◦ (고려사항) 가구원 간 사업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구단위에서 보완</li> </ul>   |
| 금융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방향) 행정자료로 조사자료 전면 대체 보완</li> <li>◦ (예외사항) 소수의 빌려준 돈이 있는 경우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중 큰 금액 사용</li> </ul>  |
| 공적<br>이전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방향) 행정자료로 조사자료 전면 대체 보완</li> <li>◦ (해당항목) 공적연금, 기초연금,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자녀 장려금, 양육수당(출산장려금 포함)</li> <li>◦ (예외사항) 양육수당은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미입수로 두 자료 중 큰 금액을 사용(다만, 조사자료에서 출산장려금 미포함 시에는 행정자료로 보완)</li> </ul>   |
| 비소비<br>지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방향) 행정자료로 조사자료 전면 대체 보완</li> <li>◦ (해당항목) 소득세, 공적연금기여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5개 연금), 건강보험료</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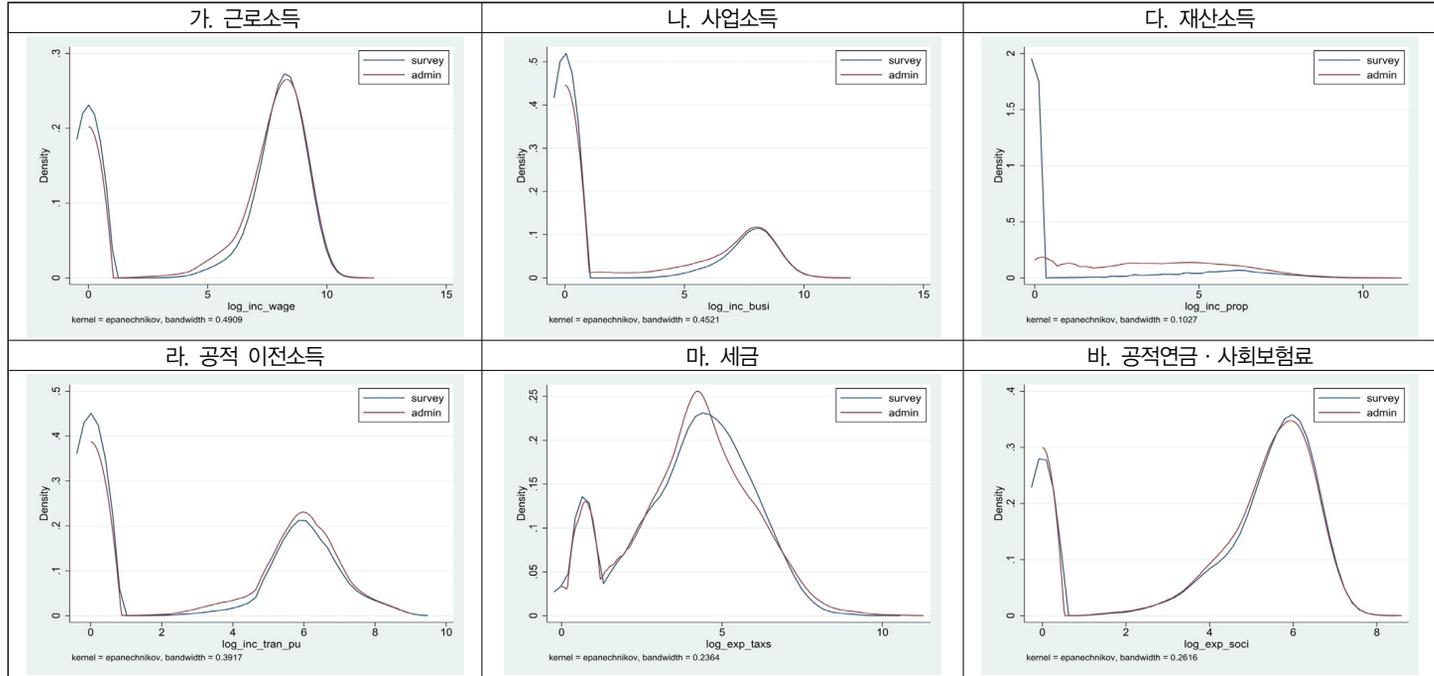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이용시 주의사항(공공용)」, 2020.

[부그림 4]와 [부그림 5]는 종사상지위별, 소득분위별 과대·과소 보고 양상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sup>66)</sup> 종사상지위별 그림에서는 뚜렷한 방향성을 관찰하기 어려우나, 소득분위별 그림에서는 상당히 뚜렷한 방향성이 관찰된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과소보고 양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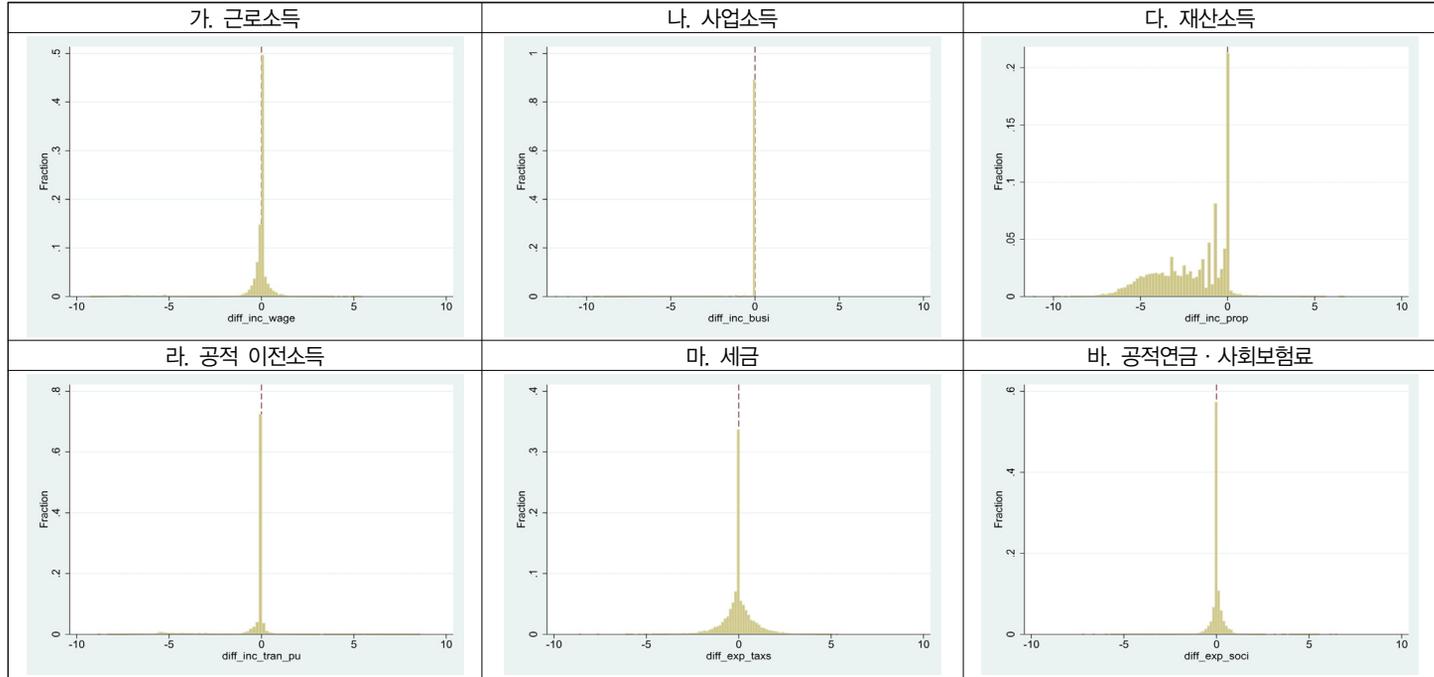
66) 과대보고는 '조사자료 > 보완자료'인 경우, 과소보고는 '조사자료 < 보완자료'인 경우를 각각 의미한다.

[부그림 1] 조사자료와 보완자료의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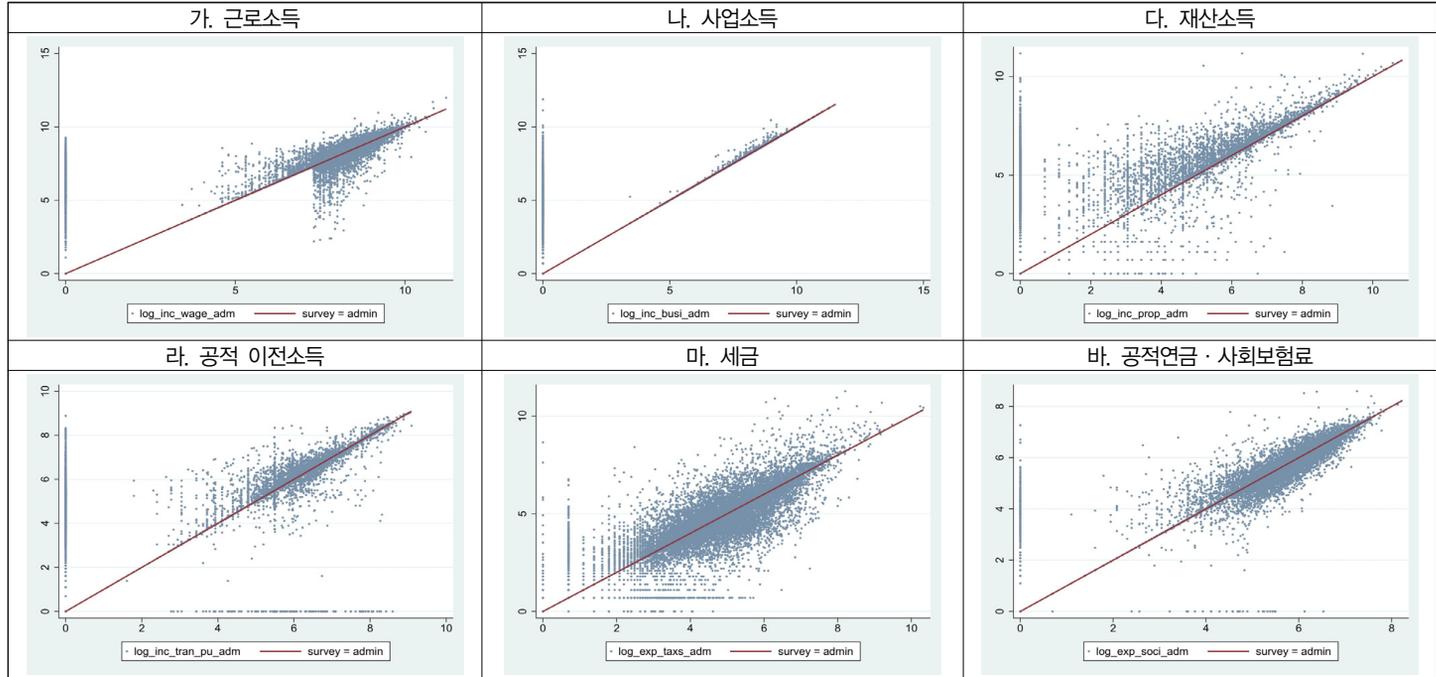
주: (로그를 취한) 조사자료 값에서 (로그를 취한) 보완자료 값을 차감함  
 자료: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마스터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그림 2] 조사자료와 보완자료 간 차이의 분포



주: (로그를 취한) 조사자료 값에서 (로그를 취한) 보완자료 값을 차감함  
 자료: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마스터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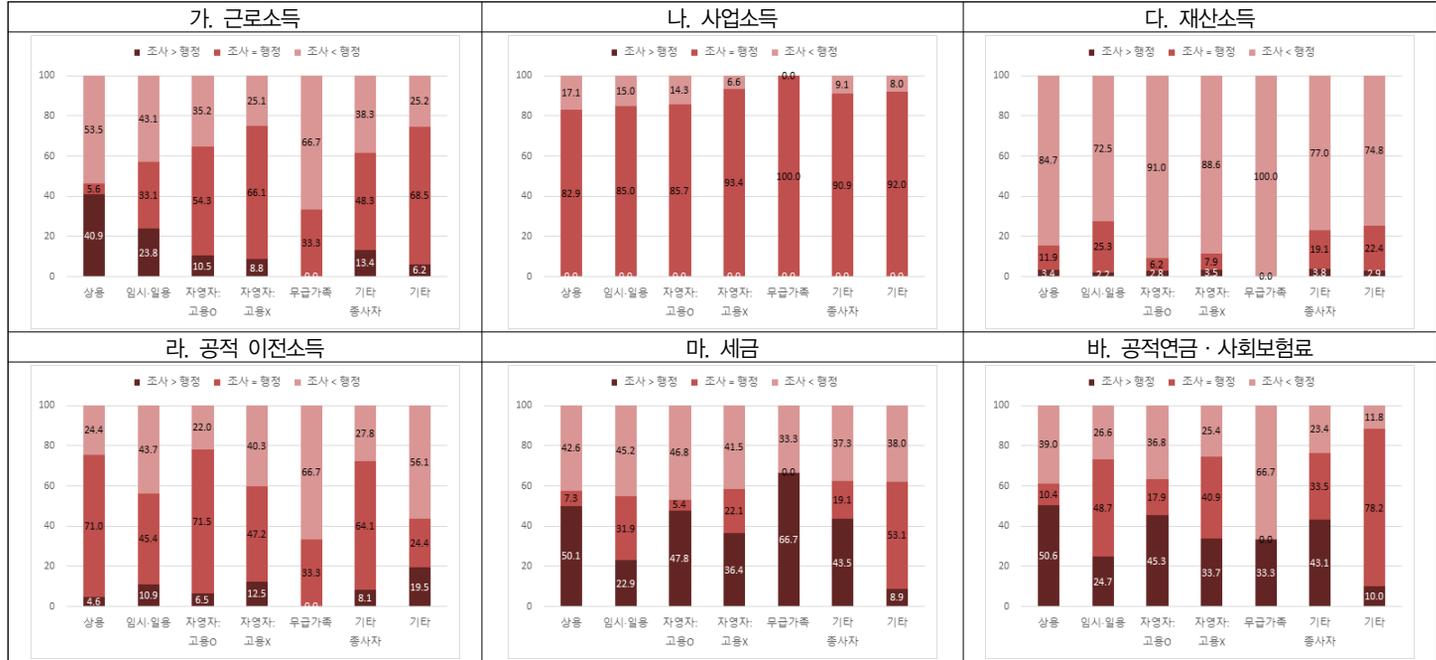
[부그림 3] 조사자료(가로축)와 보완자료(세로축)의 관계



주: 붉은색 실선은 (로그를 취한) 조사자료 값과 (로그를 취한) 보완자료 값이 일치하는 지점들에 해당  
 자료: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마스터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그림 4] 종사상지위별 과대·과소 보고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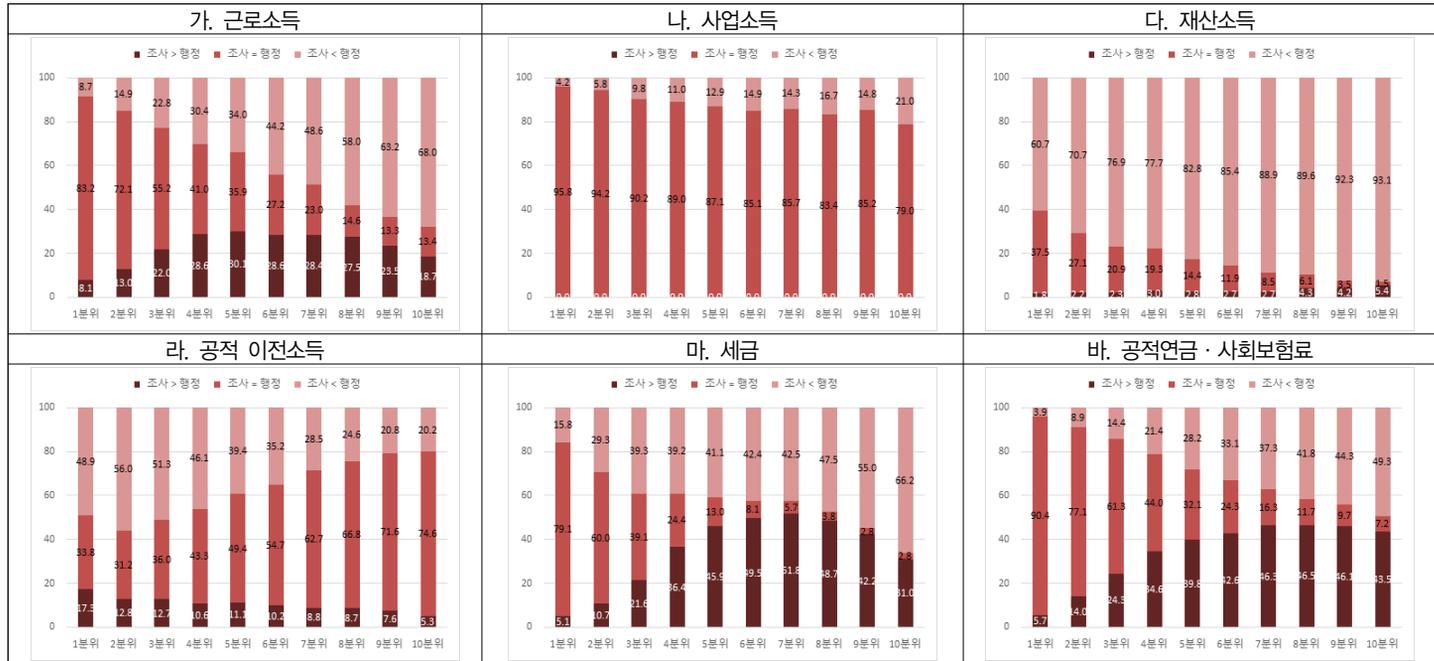
(단위: %)



주: 기타 종사자는 실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을 의미하며, 기타는 무직자, 가사, 학생 등을 의미  
 자료: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마스터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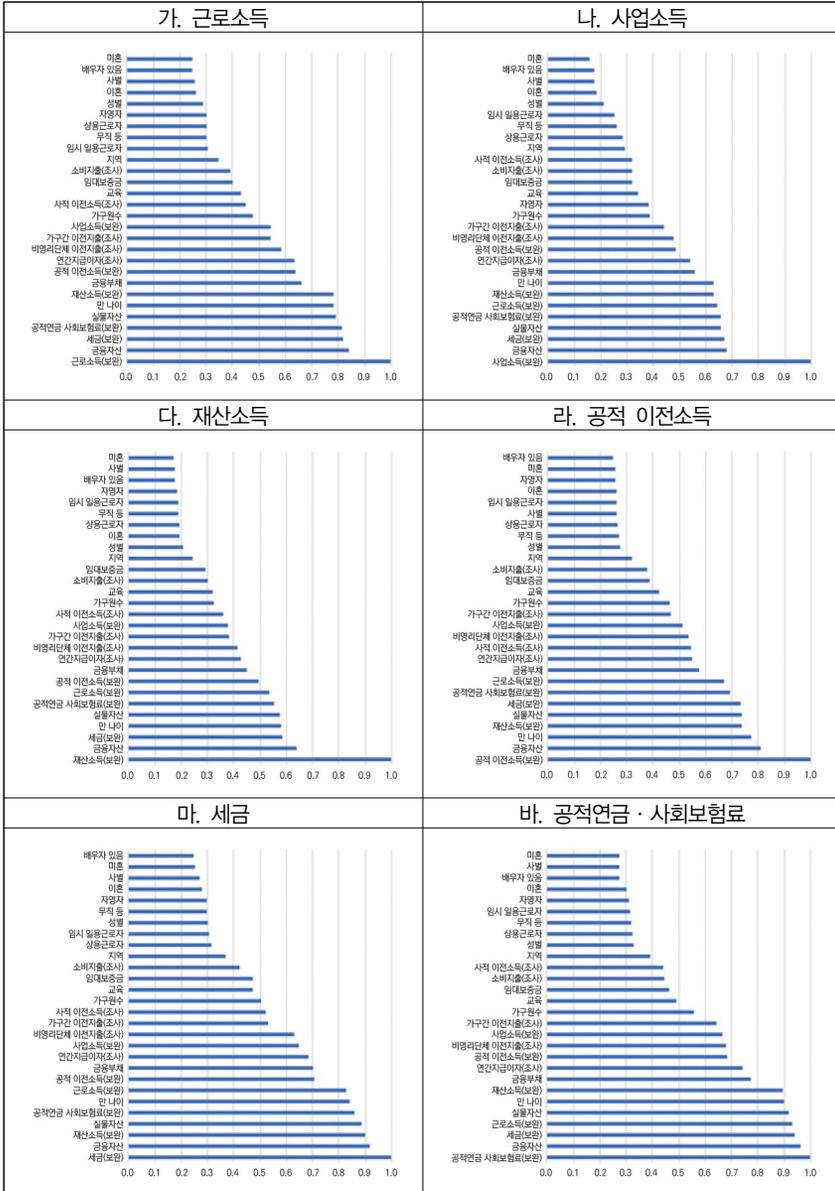
[부그림 5] 소득분위별 과대·과소 보고 양상

(단위: %)



주: 소득분위는 근로소득(보완), 사업소득(보완), 재산소득(보완), 공적 이전소득(보완), 사적 이전소득(조사)의 합을 기준으로 구분  
 자료: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마스터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그림 6] 과소보고(조사 < 보완) 예측을 위한 변수별 중요도 점수



주: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random forest algorithm)을 활용하여 계산  
 자료: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마스터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정책 및 제도 세부사항

〈부표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산정방식

| 보험료 산정식  |         | 보수월액보험료 = ㉔보수월액 × ㉕건강보험료율  |
|----------|---------|--|
| ㉔ 보수월액   |         |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br>상·하한(월별 보험료 상·하한액(각각 7,047,900원, 19,140원)을 역산)<br>- 각각 102,739,068원, 279,300원   |
| 보수의 범위   | 포함      |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여,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br>·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제외)<br>·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 중<br>- 차목: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br>- 파목: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br>- 거목: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 |
|          | 불포함     | · 퇴직금<br>·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br>·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  |
| ㉕ 건강보험료율 |         | 6.86%  |
| 부담       | 근로자     | 가입자 3.43%, 사용자 3.43%   |
|          | 공무원     | 가입자 3.43%, 국가 3.43%  |
|          | 사립학교 교원 | 가입자 3.43%, 사용자 2.058%, 국가 1.372%(각각 50:30:20)  |

자료: 최인혁·정훈(2021), p. 16 〈표 III-7〉

〈부표 3〉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식

| 보험료 산정식  |  | 소득월액보험료 = (㉔소득월액 × ㉕소득평가율) × ㉖건강보험료율    |
|----------|--|---|
| ㉔ 소득월액   |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 12      |
| 보수외소득    |  | 사업·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 소득                    |
| ㉕ 소득평가율  |  |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100%<br>· 근로·연금소득: 30% |
| ㉖ 건강보험료율 |  | 6.86%(본인 전액 부담)                         |

자료: 최인혁·정훈(2021), p. 17 〈표 III-8〉

〈부표 4〉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            |              |   |
|------------|--------------|---|
| 보험료 산정식    | 연소득 100만원 이하 | 건강보험료 = ㉔ 소득최저보험료 + ㉕ 보험료 부과점수 × ㉖ 부과점수당 금액   |
|            | 연소득 100만원 초과 | 건강보험료 = ㉕ 보험료 부과점수 × ㉖ 부과점수당 금액   |
| ㉔ 소득최저보험료  |              | 14,380원(하한 보험료)<br>상한 보험료: 3,523,950원   |
| ㉕ 보험료 부과점수 |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점수   |
|            | 연소득 100만원 초과 |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  |
|            | 부과요소         | · 소득: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 소득<br>·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br>· 자동차: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 |
|            | 소득 적용 방법     |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100%<br>· 근로·연금소득: 30%   |
| ㉖ 부과점수당 금액 |              | 201.5원  |

자료: 최인혁·정훈(2021), p. 17 〈표 Ⅲ-9〉

〈부표 5〉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방식

| 구분            | 직장(사업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
| 보험료 산정식       | 연금보험료 = 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㉕ 연금보험료율  |  |
| ㉔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상·하한(2021. 7. 1.~2022. 6. 30. 적용): 각각 524만원과 33만원]  |  |
| 기준소득월액 계산(결정) | 전년도 소득총액<br>전년도 근무일수 × 30   | 과세자료에서 다음을 조사·확인하여 결정<br>① 종사업종 변경 여부<br>② 적용종인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 여부   |
| 소득의 범위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br><br>*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의 첫 번째 항목으로서 중간정산 퇴직금, 연봉제 시행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상당액<br><br>*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의 두 번째 항목으로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 ① 농업 소득: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족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br>② 임업 소득: 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 조수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br>③ 어업 소득: 어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br>④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제외)<br>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사용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 |
| ㉕ 연금보험료율      | 9.0%<br>(부담: 근로자 4.5%, 사용자 4.5%)  | 9.0%<br>(본인 전액 부담)   |

자료: 최인혁·정훈(2021), p. 14 〈표 III-6〉

〈부표 7〉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산정방식

|                                |   |
|--------------------------------|---|
| 보험료 산정식                        | 고용보험료 = ㉔보수총액(월평균보수) × ㉖고용보험료율 ÷ 1,000  |
|                                | 산재보험료 = ㉔보수총액(월평균보수) × ㉗산재보험료율 ÷ 1,000  |
| ㉔ 보수총액<br>(월평균보수)              | · 전년도 10월전(9월말 이전) 근로개시의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br>· 그 밖의 근로자인 경우 근로개시일부터 1년간(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 지급예정인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  |
| 보수의 정의                         |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근로소득금액의 개념과는 상이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br>·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들을 말함 |
| 근로소득 범위                        |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br>·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br>·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br>·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 ㉖ 고용보험료율<br>(단위: 천분율)          | 실업급여 보험료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
| 실업급여<br>보험료율                   | 근로자 8, 사업자 8  |
| 고용안정·<br>직업능력<br>개발사업의<br>보험료율 | 기업 구분에 따라 상이하며, 사업자만 부담<br>· 150인 미만 기업: 2.5<br>· 150인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4.5<br>·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6.5<br>·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8.5  |
| ㉗ 산재보험료율<br>(단위: 천분율)          | 업종요율 + 출퇴근재해요율 + 임금채권부담금비율 + 석면피해구제부담금(사용자 전액 부담)   |
| 업종요율                           | 사업종류에 따라 상이(업종별 요율:<br><a href="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insu/chek_bohum.jsp">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insu/chek_bohum.jsp</a> )  |
| 출퇴근<br>재해요율                    | 1.0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   |
| 임금채권<br>부담금비율                  | 0.6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총당하기 위해 징수하며, 기준에 따라 경감 가능)  |
| 석면피해<br>구제부담금                  | 0.03 (석면피해구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총당하기 위해 징수하며, 기준에 따라 경감 가능)  |

자료: 최인혁·정훈(2021), p. 19 〈표 III-10〉

[부그림 7] 세액결정 흐름도



자료: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lcd=7666>, 검색일자: 2022. 10. 8.

### 3. 비정형 경제활동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원에서는 일반적인 경제활동과 비정형적인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 자료로 이용되오니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연구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기관 : (주)엠브레인퍼블릭

#### [응답자 선정]

**SQ1. 귀하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_\_\_\_\_ (18세 미만, 65세 이상 → 설문종료)

**S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남성                      ② 여성

**SQ3.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지도형, 시군구까지 확인]

[참고: 데이터 전달 시, 1. 시도와 시군구와 관련된 행안부 제공 코드, 2. 시도 코드, 3. 시군구 코드, 4. 시도 명 string, 5. 시군구 명 string 전달 필요]

**SQ4. 귀하의 가구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개 선택]

※ 본 설문조사에서 '가구원' 범주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만 포함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자녀는 동거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Q6-2. (SQ4=3 & SQ5=3) 본인을 제외한, 귀하의 가구에 속하는 형제자매는 몇 명입니까? 해당하는 형제자매의 연령대를 선택하고 인원을 작성해 주십시오.**

- ① 만 8세 미만: \_\_\_\_명
  - ② 만 8세 이상~만 18세 이하: \_\_\_\_명
  - ③ 만 19세~만 29세: \_\_\_\_명
  - ④ 본인 이외 형제자매 없음 [단일 응답만 가능]
- [→ 형제자매의 수 합계가 3명 이상인 경우 설문종료]

**SQ7. 본인을 포함하여 귀댁에 속한 가구 안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존재합니까? [1개 선택]**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① 네 [→설문종료]
- ② 아니오

**SQ8. 귀하는 22년 8월 기준,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으셨습니까? [1개 선택]**

- ① 네
- ② 아니오 [→설문종료]

-----응답자 선정 완료-----

**[A. 개인특징과 소득활동]**

**A1. 귀하의 최종 학력과 수학 여부에 대해 다음의 보기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각 1개 선택]**

| [학력 보기]        | [수학 여부 보기]                           |
|----------------|--------------------------------------|
| ① 안 받음(미취학 포함) | ① 졸업<br>② 재학<br>③ 휴학<br>④ 중퇴<br>⑤ 수료 |
| ② 초등학교         |                                      |
| ③ 중학교          |                                      |
| ④ 고등학교         |                                      |
| ⑤ 대학교(3년제 이하)  |                                      |
| ⑥ 대학교(4년제 이상)  |                                      |
| ⑦ 대학원석사        |                                      |
| ⑧ 대학원박사 이상     |                                      |

**A2. 22년 8월 기준, 귀하의 소득과 관련된 귀하의 종사상지위는 무엇입니까? 여러 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 소득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_, 2순위\_, 3순위\_, 4순위\_, 5순위\_ [최소 1개, 최대 5개]**

|                     |   |
|---------------------|---|
| ① 상용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개인, 가구, 사업체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 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
| ② 임시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사람   |
| ③ 일용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1개월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일단위로 고용되어 근로 대가를 일급이나 일당제로 받고 있는 사람   |
| ④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 ⑤ 특수형태근로자<br>· 프리랜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형태근로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 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li> <li>프리랜서: 일정한 기업 또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이 개개의 계약에 응할 수 있는 사람</li> </ul> |

**[참고] ※ 특수형태근로자 범위(예시)**

- |   |                      |
|---|----------------------|
| ① 보험설계사   | ② 건설기계운전자            |
| ③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 ④ 골프장캐디              |
| ⑤ 택배기사  | ⑥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 물품운송) |
| ⑦ 대출모집인   |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 ⑨ 대리운전기사  | ⑩ 방문판매원              |
| ⑪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⑫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
| 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특수장비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운송기사, 시멘트 운송기사, 철강재 운송기사, 위험물질 운송기사) |                      |
| ⑭ 소프트웨어기술자  | ⑮ 방과후 강사             |

**A3. 귀하께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종사상지위 [A2 응답값 제시]에서 귀하가 일하고 계신 주요 업종은 무엇입니까? 대분류와 중분류에서 해당하는 업종을 각각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대분류]**

| 연번 | 코드 | 항목명                               |
|----|----|-----------------------------------|
| 1  | A  | 농업, 임업 및 어업                       |
| 2  | B  | 광업                                |
| 3  | C  | 제조업                               |
| 4  | D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 5  | E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6  | F  | 건설업                               |
| 7  | G  | 도매 및 소매업                          |
| 8  | H  | 운수 및 창고업                          |
| 9  | I  | 숙박 및 음식점업                         |
| 10 | J  | 정보통신업                             |
| 11 | K  | 금융 및 보험업                          |
| 12 | L  | 부동산업                              |
| 13 | M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14 | N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15 | O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16 | P  | 교육 서비스업                           |
| 17 | Q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18 | R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19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20 | T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
| 21 | U  | 국제 및 외국기관                         |

**[중분류]** (대분류 기준에 맞춰 해당 중분류만 보기 제시)

| 연번 | 코드  | 항목명                           | 연번 | 코드  | 항목명                         |
|----|-----|-------------------------------|----|-----|-----------------------------|
| 1  | A01 | 농업                            | 40 | G4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 2  | A02 | 임업                            | 41 | G46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 3  | A03 | 어업                            | 42 | G47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 4  | B05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43 | H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5  | B06 | 금속 광업                         | 44 | H50 | 수상 운송업                      |
| 6  | B07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45 | H51 | 항공 운송업                      |
| 7  | B08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46 | H52 |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
| 8  | C10 | 식품품 제조업                       | 47 | I55 | 숙박업                         |
| 9  | C11 | 음료 제조업                        | 48 | I56 | 음식점 및 주점업                   |
| 10 | C12 | 담배 제조업                        | 49 | J58 | 출판업                         |
| 11 | C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50 | J59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12 | C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51 | J60 | 방송업                         |
| 13 |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52 | J61 | 우편 및 통신업                    |
| 14 | C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53 | J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15 | C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54 | J63 | 정보서비스업                      |
| 16 | C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55 | K64 | 금융업                         |
| 17 | C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56 | K65 | 보험 및 연금업                    |
| 18 | C2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57 | K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 19 |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58 | L68 | 부동산업                        |
| 20 | C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59 | M70 | 연구개발업                       |
| 21 |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60 | M71 | 전문 서비스업                     |
| 22 | C24 | 1차 금속 제조업                     | 61 | M72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23 | C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62 | M73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24 | C26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63 | N74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25 | C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64 | N75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26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65 | N76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27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66 | O84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28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67 | P85 | 교육 서비스업                     |
| 29 | C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68 | Q86 | 보건업                         |
| 30 | C32 | 가구 제조업                        | 69 | Q87 | 사회복지 서비스업                   |



**A5-1. 여러 일자리를 갖고 계신 경우, 월소득 100%를 기준으로 각각의 비중을 작성해 주십시오.**

| [A2 응답한 보기만 제시]    | 종사상지위별 월소득 비중(%)                               |
|--------------------|--|
| 1) 상용 근로자          | ___% [위의 ___만원 × 왼쪽 ___% 계산하여 한글로 금액 표시 ___만원] |
| 2) 임시 근로자          | ___% [위의 ___만원 × 왼쪽 ___% 계산하여 한글로 금액 표시 ___만원] |
| 3) 일용 근로자          | ___% [위의 ___만원 × 왼쪽 ___% 계산하여 한글로 금액 표시 ___만원] |
| 4) 1인 자영업자         | ___% [위의 ___만원 × 왼쪽 ___% 계산하여 한글로 금액 표시 ___만원] |
| 5) 특수형태근로자<br>프리랜서 | ___% [위의 ___만원 × 왼쪽 ___% 계산하여 한글로 금액 표시 ___만원] |
| 합계                 | 100%   |

**A6. 2022년 8월 기준, 월소득을 위해 귀하께서는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일하셨습니까? \_\_\_\_\_시간 [응답 범위 : 최소 1시간~140시간]**

**A6-1. 여러 일자리를 갖고 계신 경우,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100%를 기준으로 각각의 비중을 작성해 주십시오. [종사상지위를 복수로 선택한 경우는 지위별로 근로시간 비중 확인]**

| [A2 응답한 보기만 제시]    | 종사상지위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비중(%)                       |
|--------------------|--|
| 1) 상용 근로자          | ___% [위의 ___시간 × 왼쪽 ___% 계산하여 한글로 금액 시간 ___시간] |
| 2) 임시 근로자          | ___% [위의 ___시간 × 왼쪽 ___% 계산하여 한글로 금액 시간 ___시간] |
| 3) 일용 근로자          | ___% [위의 ___시간 × 왼쪽 ___% 계산하여 한글로 금액 시간 ___시간] |
| 4) 1인 자영업자         | ___% [위의 ___시간 × 왼쪽 ___% 계산하여 한글로 금액 시간 ___시간] |
| 5) 특수형태근로자<br>프리랜서 | ___% [위의 ___시간 × 왼쪽 ___% 계산하여 한글로 금액 시간 ___시간] |
| 합계                 | 100%   |

**A7. (A2= ① 상용, ② 임시, ③ 일용근로자 응답자) 2022년 8월 기준, 귀하께서 근무한 일자리의 1) 최저임금 준수 여부, 2) 퇴직연금 제공 여부는 어떠합니까?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           | 1) 최저임금 준수 여부 | 2) 퇴직연금 제공 여부 |
|-----------|---------------|---------------|
| 1. 상용 근로자 | ① 예    ② 아니오  | ① 예    ② 아니오  |

|           |           |           |
|-----------|-----------|-----------|
| 2. 임시 근로자 | ① 예 ② 아니오 | ① 예 ② 아니오 |
| 3. 일용 근로자 | ① 예 ② 아니오 | ① 예 ② 아니오 |

**A8. 귀하의 4대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 가. (인지 여부) 귀하는 **사회보험에 대해 인지**하고 계십니까?  
 나. (가입 상태) 귀하는 **사회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까?  
 다. (가입 유형) 귀하의 **사회보험 가입 유형**은 무엇입니까?

| 구분      | 가. 인지 여부     | (인지한 경우에만)<br>나. 가입 상태 | (가입한 경우에만)<br>다. 가입 유형                       |
|---------|--------------|------------------------|--|
| 1) 고용보험 | ① 예<br>② 아니오 | ① 예<br>② 아니오           | ① 근로자<br>② 자영업자<br>③ 예술인·특고                  |
| 2) 산재보험 | ① 예<br>② 아니오 | ① 예<br>② 아니오           | ① 근로자<br>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3) 국민연금 | ① 예<br>② 아니오 | ① 예<br>② 아니오           | ① 직장가입자<br>② 지역가입자<br>③ 임의(계속) 가입자           |
| 4) 건강보험 | ① 예<br>② 아니오 | X                      | ① 직장가입자<br>② 피부양자<br>③ 지역가입자<br>④ 임의(계속) 가입자 |

**※ 사회보험 설명**

|      |  |
|------|--|
| 고용보험 |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 <1995년 시행>                                      |
| 산재보험 |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 <1964년 시행> |
| 국민연금 |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노령·장애·사망 등 일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 <1988년 시행>  |
| 건강보험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상해·부상 등으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비가 소  |

|  |  |
|--|--|
|  | 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보험금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1977년 시행> |
|--|--|

**A9. 귀하의 직역연금 가입 현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노후생활보장, 재해보상 및 퇴직금의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에 속함

- 가. (인지 여부) 귀하는 **직역연금에 대해 인지**하고 계십니까?
- 나. (가입 상태) 귀하는 **직역연금에 가입한 상태**입니까?
- 다. (가입 유형) 귀하의 **직역연금 가입 유형**은 무엇입니까?

| 구분   | 가. 인지 여부     | (인지한 경우에만)<br>나. 가입 상태 | (가입한 경우에만)<br>다. 가입 유형                     |
|------|--------------|------------------------|--|
| 직역연금 | ① 예<br>② 아니오 | ① 예<br>② 아니오           | ① 공무원 연금<br>② 사학 연금<br>③ 군인 연금<br>④ 별정직 연금 |

**B. 비정형 소득**

-----<유형 1>-----

**B1. 귀하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배달이나 퀵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① 예                      ② 아니오

**B1-1. (B1=2) 귀하는 향후 배달이나 퀵서비스를 제공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            |            |           |
|-----------|------------|------------|-----------|
| 전혀 의향이 없다 | 의향이 없는 편이다 | 의향이 있는 편이다 | 매우 의향이 있다 |
| ①         | ②          | ③          | ④         |

(B1=2 응답자는 B1-1 응답 후 C1로 이동)

**B2. (B1=1) 그렇다면 귀하께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제공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배달                      ② 퀵서비스                      ③ 배달 및 퀵서비스 모두

**B3. 귀하께서 배달이나 퀵서비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신 방식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웹사이트나 휴대폰 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  
 ② 오프라인 중개업소, 에이전트 등  
 ③ 기타(\_\_\_\_\_)

**B4. 귀하께서 배달이나 퀵서비스 일자리를 구하신 방식과 상관없이, 배달이나 퀵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인 월 평균 소득은 총 얼마입니까? \_\_\_\_\_만원**

**B4-1. (B3=1 플랫폼 이용자) 그렇다면, 귀하께서 벌어들인 월 소득 [B4 금액 제시] 만원 기준으로, 1)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2) 기타 방식별로 월 소득 비중은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 [B3 선택한 보기만 제시]               | 월소득 비중(%)                                  |
|-------------------------------|--|
| 1) 웹사이트나 휴대폰 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 | ___% [B4 __만원 × 왼쪽 ___ 계산하여 한글로 금액 표시__만원] |
| 2) 오프라인 중개업소, 에이전트 등          | ___% [B4 __만원 × 왼쪽 ___ 계산하여 한글로 금액 표시__만원] |
| 3) 기타 [B3 ③ 응답값 제시]           | ___% [B4 __만원 × 왼쪽 ___ 계산하여 한글로 금액 표시__만원] |
| 합계                            | 100%                                       |

**B5-1. (B3=1 & B1-1과 B2-1=1,3) 귀하께서 배달 서비스 제공 시 이용하는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주로 이용하는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보기 가나다 순) 1순위\_\_\_\_, 2순위\_\_\_\_, 3순위 [최소1개, 최대 3개]**

- 1) 공유다  
 2) 국민라이더스  
 3) 김집사

- 4) 나눔콜
- 5) 남남박스
- 6) 달리고
- 7) 도보60
- 8) 딜버
- 9) 따봉콜
- 10) 락동
- 11) 런투유
- 12) 리드콜
- 13) 만나플러스(런, 이어드림 공유다, 날라가, 로드파일럿, 제트콜, 윈윈파트너)
- 14) 모아콜
- 15) 바로고
- 16) 배달시대
- 17) 배달캠프
- 18) 배달히어로
- 19) 배민라이더스
- 20) 배민커넥트
- 21) 베테랑
- 22) 부릉(메쉬코리아)
- 23) 비온드딜리버리
- 24) 생각대로(로지울)
- 25) 영웅배송스파이더
- 26) 오늘의픽업
- 27) 요기요
- 28) 우리동네딜리버리우친
- 29) 우버잇츠
- 30) 제트콜
- 31) 쿠팡이츠
- 32) 쿠팡이츠
- 33) 한국배달대행연합(슈퍼히어로, 예스런, 배달의전설, 런투유, 딜리온, 순간이동, 푸드딜리버리코리아)
- 34) 기타 (\_\_\_\_\_)

**B5-2. (B3=1 & B1-1과 B2-1=2,3) 귀하께서 퀵서비스 서비스 제공 시 이용하는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주로 이용하는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보기 가나다 순) 1순위\_\_\_\_, 2순위\_\_\_\_, 3순위 [최소1개, 최대 3개]**

- 1) 고고엑스
- 2) 로지
- 3) 리드콜
- 4) 바로고
- 5) 베스트콜
- 6) 보르조
- 7) 빠름
- 8) 생각대로
- 9) 손자
- 10) 알고퀵
- 11) 인성1
- 12) 인성2
- 13) 인성데이터
- 14) 카카오
- 15) 카카오T픽커
- 16) 퀵커스
- 17) 퀵톡
- 18) 토스퀵
- 19) 통합콜
- 20) 티맵
- 21) 핑퐁
- 22) 기타 (\_\_\_\_\_)

**B6-1. 귀하께서는 과거에 배달이나 퀵서비스 관련하여 소득 신고를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① 연말정산 신고 경험 있음
- ②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 있음
- ③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 경험 있음
- ④ 신고 경험 없음

⑤ 잘 모르겠음

**B6-2. 귀하께서는 올해 배달이나 퀵서비스 관련한 소득에 대해 소득 신고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1개 선택]**

- ① 연말정산 예정
- ② 종합소득세 신고 예정
- ③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 예정
- ④ 신고하지 않을 예정
- ⑤ 이미 신고함
- ⑥ 잘 모르겠음

**B7. 귀하는 향후 배달이나 퀵서비스 관련하여 계속 일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            |            |           |
|-----------|------------|------------|-----------|
| 전혀 의향이 없다 | 의향이 없는 편이다 | 의향이 있는 편이다 | 매우 의향이 있다 |
| ①         | ②          | ③          | ④         |

-----〈유형 2〉-----

**C1. 귀하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돌봄 혹은 가사, 과외 서비스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① 예
- ② 아니오

**C1-1. (C1=2) 귀하는 향후 돌봄 혹은 가사, 과외 서비스 제공 관련하여 일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            |            |           |
|-----------|------------|------------|-----------|
| 전혀 의향이 없다 | 의향이 없는 편이다 | 의향이 있는 편이다 | 매우 의향이 있다 |
| ①         | ②          | ③          | ④         |

(C1=2 응답자는 C1-1 응답 후 D1로 이동)

**C2. (C1=1) 그렇다면 귀하께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제공한 서비스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제공하신 순서대로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_\_, 2순위\_\_, 3순위\_\_.**



가나다 순) 1순위\_\_\_\_, 2순위\_\_\_\_, 3순위 [최소1개, 최대 3개] [육아 또는 요양 각각 3순위까지 선택]

| <b>돌봄(육아)</b> [C1-1 or C2-1=①]<br>돌봄(육아)   | <b>돌봄(요양)</b> [C1-1 or C2-1=②]<br>돌봄(요양)  |
|--|---|
| 1) 놀담<br>2) 단디헬퍼<br>3) 맘시터<br>4) 세이프시터<br>5) 시터넷<br>6) 애니맨<br>7) 요격<br>8) 우리동네돌봄히어로<br>9) 이모넷<br>10) 자란다<br>11) 째깍악어<br>12) 기타 ( _____ ) | 1) 단디헬퍼<br>2) 시니어시터<br>3) 시터넷<br>4) 애니맨<br>5) 이모넷<br>6) 좋은케어<br>7) 케어닥<br>8) 기타 ( _____ ) |

**C3-2.** (C3=1 & C1-1과 C2-1=3) 귀하께서 가사 서비스 제공 시 이용하는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주로 이용하는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보기 가나다 순) 1순위\_\_\_\_, 2순위\_\_\_\_, 3순위 [최소1개, 최대 3개]

- 1) 김집사
- 2) 단디헬퍼
- 3) 당신의집사
- 4) 대리주부
- 5) 미소
- 6) 시터넷
- 7) 애니맨
- 8) 이모넷
- 9) 청소연구소
- 10) 홈마스터
- 11) 홈스토리
- 12) 기타 ( \_\_\_\_\_ )

**C3-3.** (C3=1 & C1-1과 C2-1=4) 귀하께서 과외 서비스 제공 시 이용하는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주로 이용하는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보기 가나다 순) 1순위\_\_\_\_, 2순위\_\_\_\_, 3순위 [최소1개, 최대 3개]

- 1) 강사닷컴
- 2) 과외바다
- 3) 과외팡팡
- 4) 과외하자
- 5) 김과외
- 6) 맑은소리샘
- 7) 모두의음악
- 8) 숨고
- 9) 올바른과외
- 10) 위시티쳐
- 11) 자란다
- 12) 재능마켓
- 13) 크몽
- 14) 클레슨
- 15) 탈잉
- 16) 티쳐스
- 17) 티칭티칭
- 18) 파인드강사
- 19) 휴넷
- 20) T3과외
- 21) 기타 (\_\_\_\_\_)

**C5.** 귀하께서는 과거에 돌봄 혹은 가사, 과외 서비스 제공 관련하여 소득 신고를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① 연말정산 신고 경험 있음
- ②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 있음
- ③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 경험 있음
- ④ 신고 경험 없음
- ⑤ 잘 모르겠음

**C6. 귀하께서는 올해 돌봄 혹은 가사, 과외 서비스 제공 관련한 소득에 대해 소득 신고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1개 선택]**

- ① 연말정산 예정
- ② 종합소득세 신고 예정
- ③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 예정
- ④ 신고하지 않을 예정
- ⑤ 이미 신고함
- ⑥ 잘 모르겠음

**C7. 귀하는 향후 돌봄 혹은 가사, 과외 서비스 제공 관련하여 계속 일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            |            |           |
|-----------|------------|------------|-----------|
| 전혀 의향이 없다 | 의향이 없는 편이다 | 의향이 있는 편이다 | 매우 의향이 있다 |
| ①         | ②          | ③          | ④         |

-----<유형 3>-----

D1. 귀하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 글, 그림, 캐릭터, 동영상 등을 제작 및 납품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① 예                      ② 아니오

D1-1. 귀하는 지난 일년 동안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 글, 그림, 캐릭터, 동영상 등을 제작 및 납품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① 예                      ② 아니오 (1:1 인터뷰 참석 의향 확인 후 조사 종료)

D1-2. (D1=2) 귀하는 향후 글, 그림, 캐릭터, 동영상 등을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제작 및 납품 관련하여 일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            |            |           |
|-----------|------------|------------|-----------|
| 전혀 의향이 없다 | 의향이 없는 편이다 | 의향이 있는 편이다 | 매우 의향이 있다 |
| ①         | ②          | ③          | ④         |

(D1-1=2 응답자는 D1-2 응답 후 1:1 인터뷰 참석 의향 확인 후 조사 종료)

D1-3. (D1-1=1) 귀하께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 제작 및 납품한 콘텐츠는 무엇 입니까? 주요 콘텐츠를 순서대로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_\_, 2순위\_\_, 3순위\_\_, 4순위\_\_, 5순위\_\_ [최소1개, 최대5개]

- ① 글 콘텐츠  
② 그림 콘텐츠  
③ 캐릭터 콘텐츠  
④ 동영상 콘텐츠  
⑤ 기타 콘텐츠(\_\_\_\_\_)

D2. 귀하께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 글, 그림, 캐릭터, 동영상 등을 제작 및 납품하여 벌어들인 월 평균 소득은 총 얼마입니까? \_\_\_\_만원

D2-1. (D1-2에서 2개 이상 선택한 경우만) 그렇다면, 귀하께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 글, 그림, 캐릭터, 동영상 등을 제작 및 납품하여 벌어들인 월 소득 [D2 금액 제시] 만원 기준으로, 귀하께서 제작 및 납품하는 콘텐츠별로 월 소득 비중은

###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 [D1-2 선택한 보기만 제시]             | 월소득 비중(%)                                      |
|-------------------------------|--|
| 1) 글 콘텐츠                      | ___% [D2 ___만원 × 왼쪽 ___% 계산하여 한글로 금액 표시 ___만원] |
| 2) 그림 콘텐츠                     | ___% [D2 ___만원 × 왼쪽 ___% 계산하여 한글로 금액 표시 ___만원] |
| 3) 캐릭터 콘텐츠                    | ___% [D2 ___만원 × 왼쪽 ___% 계산하여 한글로 금액 표시 ___만원] |
| 4) 동영상 콘텐츠                    | ___% [D2 ___만원 × 왼쪽 ___% 계산하여 한글로 금액 표시 ___만원] |
| 5) 기타 콘텐츠<br>[D1-2의 ⑤ 응답값 제시] | ___% [D2 ___만원 × 왼쪽 ___% 계산하여 한글로 금액 표시 ___만원] |
| 합계                            | 100%   |

**D4-1. 귀하께서 글, 그림, 캐릭터, 동영상 등을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제작 및 납품할 때 이용하는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주로 이용하는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보기 가나다 순) 1순위\_\_\_\_, 2순위\_\_\_\_, 3순위 [최소1개, 최대 3개]

- 1) 각몬
- 2) 네이버
- 3) 다음
- 4) 두툼
- 5) 라우드소싱
- 6) 레진코믹스
- 7) 브런치
- 8) 사람인 깃
- 9) 숨고
- 10) 아프리카TV
- 11) 애니맨
- 12) 오투잡
- 13) 위시켓
- 14) 유튜브

- 15) 재능넷
- 16) 재능아지트
- 17) 카카오투
- 18) 크라우드픽
- 19) 크몽
- 20) 탐툰
- 21) 트위치
- 22) 티스토리
- 23) 포스타입
- 24) 프리모아
- 25) 피움마켓
- 26) 기타 (\_\_\_\_\_)

**D5. 귀하께서는 과거에 글, 그림, 캐릭터, 동영상 등을 제작 및 납품 관련하여 소득 신고를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① 연말정산 신고 경험 있음
- ②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 있음
- ③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 경험 있음
- ④ 신고 경험 없음
- ⑤ 잘 모르겠음

**D6. 귀하께서는 올해 글, 그림, 캐릭터, 동영상 등을 제작 및 납품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 신고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1개 선택]**

- ① 연말정산 예정
- ② 종합소득세 신고 예정
- ③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 예정
- ④ 신고하지 않을 예정
- ⑤ 이미 신고함
- ⑥ 잘 모르겠음

**D7. 귀하는 향후 글, 그림, 캐릭터, 동영상 등을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제작 및 납품 관련하여 계속 일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            |            |           |
|-----------|------------|------------|-----------|
| 전혀 의향이 없다 | 의향이 없는 편이다 | 의향이 있는 편이다 | 매우 의향이 있다 |
| ①         | ②          | ③          | ④         |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 이 설문 내용과 관련된 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 강남구 소재 엠브레인 회의실
- 1:1 개별 인터뷰, 30분 소요

후속 조사 참여에 대해서는 소정의 답례가 있을 예정입니다.

귀하는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1) 참여 의사 있음
- 2) 참여 의사 없음

## 비공식 취업소득의 추정과 조세·재정 정책함의

---

김문정·최인혁

소득파악 인프라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형의 경제 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려운 소득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추가적인 소득파악은 조세, 사회보험 및 각종 재정 정책 측면에서 적지 않은 함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질문을 던진다. 만약, 포착되지 않았던 소득이 과세당국에 의해 새롭게 파악된다면, 정부 관점의 수입 및 지출, 개인·가구 관점의 지원금 혜택 및 조세와 사회보험 부담금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하여 저자들은 배달 및 쿠팡서비스, 노인 및 영유아 돌봄, 레슨 등의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제작 서비스 등 세 개의 비정형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들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일반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소득활동 수행 여부, 국세청 소득신고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인과 가구의 특징과 비정형 취업소득과의 관계를 추정하였고, 이렇게 추정된 관계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투영하여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였다.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약, 새롭게 발굴한 비정형소득이 공식적인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는 경우, 소득세 수입은 크게 올라가지 않은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수입금액은 상승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은 줄어드는 반면, 근로장려세제 지출은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새롭게 발굴한 비정형소

득이 공식적인 소득이 높은 계층에 집중되는 경우,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수입은 모두 늘어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크게 줄지 않는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새로운 유형의 취업소득활동이 활발해지는 경우에, 정부가 과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일 제도가 아닌 여러 제도 간의 연계성과 상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Unveiling Informal Income of Non-Standard Economic Activities: An Estim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

Moon Jung Kim and Inhyuk Choi

Despite improved tax administration of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there are still incomes that are difficult for NTS to capture in the context of increasing non-standard economic activities. Disclosure of hidden income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axation, social insurance and fiscal policies. We pos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How will income and expenditure (from a government perspective) and subsidies and payments (from an individual or household perspective) change when hidden income is revealed? To answer this question, we focus on three types of non-standard works: ① delivery services or quick services, ② elder caregiver, tutor, and babysitter services, and ③ services related to online content creation. We conduct a survey where a respondent is asked whether he or she is engaged in such types of non-standard works, and, if so whether they recognize that they have to report such incomes to NTS as business incomes, and whether they have ever experienced reporting such incomes in the previous years. From the survey, we estimate the probability of each individual with some characteristics being engaging in the aforementioned types of economic activities and the

expected income they could earn when they were engaged in the activities. Through the survey, we estimate the probability that individuals with certain characteristics will engage in the aforementioned types of non-standard economic activity and the expected income they will receive from the activities. Estimated mapping from individual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to hidden income for non-standard economic activity is projected into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SHFLC). In the simulation, we consider two possibilities. Government revenues from social insurance certainly increase when hidden incomes of low-income individuals are uncovered, but government income tax revenues may not necessarily increase because the range of tax-exempt incomes is expansive. In addition, while government expenditures related to basic livelihood benefits may decrease, expenditures related to earned income tax credits may increase. On the other hand, if the disclosed incomes were mainly the incomes of those with relatively high level of formal-sector incomes, it could boost government revenues in terms of both social insurance and income tax. Note that, in contrast to the case of low-income individuals, the income tax will increase significantly due to the progressive tax system of the current income tax system. The policy implications convey the message that, when new types of economic activity increase, the government must consider linkages and ripple effects between institutions rather than single institutions in order to achieve existing tax equity and redistribution.

## 저자약력

### 김문정

고려대학교 영문학, 경제학 학사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최인혁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석사  
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자료 수집 및 정리

이희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2-11

## 비공식 취업소득의 추정과 조세·재정 정책함의

---

|         |   |                        |
|---------|---|------------------------|
| 발행      | 행 | 2022년 12월 30일          |
| 저자      | 자 | 김문정 · 최인혁              |
| 발행인     | 인 | 김재진                    |
| 발행처     | 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주소      |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 전화      | 화 | (044)414-2114(대)       |
| 홈페이지    | 지 | www.kjpt.re.kr         |
| 등록      | 록 | 1993. 7. 15. 제2014-24호 |
| 정가      | 가 | 15,000원                |
| 조판 및 인쇄 | 쇄 | 고려씨엔피                  |
| I S B N |   | 979-11-6655-191-8      |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본 보고서는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여 인쇄되었습니다.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9 791166 551918 93320  
ISBN 979-11-6655-191-8